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100013-10



사업공고는 기업마당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부 | 금융 지원

제 1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1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6
1-2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17
1-3 • 신성장기반자금(용자)	22
1-4 • 재도약지원자금	27
1-5 •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31
1-6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35
1-7 • 밸류체인안정화자금(용자)	38
1-8 •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40

제 2 장

신용보증 지원

2-1 • 신용보증기금	44
2-2 • 기술보증기금	49
2-3 • 지역신용보증재단	53
2-4 • 매출채권보험	57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제 3 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3-1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64
3-2 • 창업성장기술개발(R&D)	68
3-3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72
3-4 •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77
3-5 • 산학연 Collabo R&D	81

제 4 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4-1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86
4-2 • 혁신제품 지정 사업	89
4-3 •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93

제 5 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5-1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98
5-2 •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102
5-3 •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106
5-4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109
5-5 • 2026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114
5-6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118
5-7 • 공급기업 역량진단	120
5-8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123
5-9 •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125
5-10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127
5-11 •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130
5-12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134
5-13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154

제3부 | 인력 지원

제 6 장

인력 양성

6-1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164
6-2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168
6-3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171
6-4 •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174
6-5 • 연수사업	180
6-6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제도	183

제 7 장

인력유입 촉진

7-1 • 내일채움공제	190
7-2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93
7-3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196
7-4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198
7-5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202
7-6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06
7-7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209
7-8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212
7-9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14

제4부 | 판로 지원

제 8 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8-1 ·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20
8-2 · 직접생산확인제도	224
8-3 · 계약이행능력심사	227
8-4 · 적격조합 확인제도	230
8-5 · 조합추천 수의계약	232
8-6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234

제 9 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9-1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38
9-2 · 성능인증제도	243
9-3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246

제 10 장

마케팅, 홍보 지원

10-1 · 판로진출지원	252
10-2 · MRO 납품 중소기업 지원	257
10-3 · 동행축제	260

제5부 | 수출 지원

제 11 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1-1 • 수출바우처	266
11-2 • 수출컨소시엄	273
11-3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277
11-4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279
11-5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284
11-6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288
11-7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92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탄소중립 지원

제 12 장

여성기업 지원

12-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300
12-2 •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304
12-3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사업	309
12-4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312
12-5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316
12-6 •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 운영	319
12-7 • 여성기업 경영애로 해소	321
12-8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324
12-9 • 미래여성경제인육성	326
12-10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328
12-11 • 펌테크 산업 육성	330

제 13 장

장애인기업 육성

13-1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334
13-2 ·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337
13-3 · 가치키움 창업스타 발굴전	340
13-4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343
13-5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346
13-6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349
13-7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53
13-8 ·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357
13-9 ·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361
13-10 · MAS 컨설팅 및 등록	364
13-11 · 업무지원인 서비스	367
13-12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370
13-13 · 공공구매제도 운영	374
13-14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377

제 14 장

지역기업 지원

14-1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382
14-2 ·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386
14-3 ·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389
14-4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392
14-5 · 지역특화산업육성	396
14-6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400
14-7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404
14-8 ·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408

제 15 장

탄소중립 지원

15-1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412
15-2 · 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415
15-3 · 중소기업 기후공시·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	418
15-4 ·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421
15-5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	424

제2편 |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1 • 예비창업패키지	434
1-2 • 초기창업패키지	438
1-3 • 창업도약패키지	442
1-4 • 재도전성공패키지	446
1-5 • 창업중심대학	449
1-6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453
1-7 • 팁스(TIPS)	457
1-8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462
1-9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466
1-10 • 유니콘브릿지 사업	469
1-11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472
1-12 •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474
1-13 •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Around X)	478
1-14 • 청년창업사관학교	481
1-15 • 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이어드림 스쿨)	486
1-16 •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490

제 2 장

창업저변 확대

2-1 • 청소년 비즈쿨	494
2-2 • 창업에듀	497
2-3 • 도전! K-스타트업	499
2-4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502
2-5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505
2-6 • 창업지원포털(K-Startup)	507
2-7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509

제 3 장

창업지원 인프라

3-1 • 창조경제혁신센터	512
3-2 • 창업존 운영	515
3-3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518
3-4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521
3-5 • 메이커 스페이스	524
3-6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526
3-7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529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제 4 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 진로제시 컨설팅	534
4-2 • 회생 컨설팅	537
4-3 • 선제적 자률구조개선 프로그램	540
4-4 • 구조혁신지원사업	544

제3편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 | 소상공인

제1장

교육,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1-1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554
1-2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558
1-3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561
1-4 • 로컬브랜드 창출	564
1-5 • 우리동네 클라우드펀딩	567
1-6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570
1-7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573
1-8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575

제2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2-1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578
2-2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581
2-3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584
2-4 • 지역소공인육성(舊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587
2-5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591

2-6 •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	594
2-7 • 지역상권 육성(글로벌 상권)	597
2-8 • 지역상권 육성(로컬거점 상권)	599
2-9 • 지역상권 육성(유망 골목상권)	601
2-10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603
2-11 •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606
2-12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지원 (TOPS)	610
2-13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614
2-14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619

제 3 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3-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624
3-2 • 희망리턴패키지	629
3-3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舊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633

제 4 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1 • 일반경영안정자금	638
4-2 • 특별경영안정자금	640
4-3 • 성장기반자금	643
4-4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647

제2부 | 전통시장

제 5 장

전통시장 지원

5-1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54
5-2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658
5-3 • 시장경영지원(舊 시장경영패키지)	661
5-4 • 온누리상품권 발행	665
5-5 • 전통시장 육성	668
5-6 • 전통시장 화재공제	673
5-7 •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676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 6 장

보증지원 제도

6-1 •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682
6-2 •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685
6-3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688
6-4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691
6-5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694
6-6 •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697
6-7 •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700
6-8 •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703
6-9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706
6-10 •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709
6-11 •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협약보증 ..	712
6-12 •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715
6-13 • 폐업 분할상환 특례보증(폐업 특례 브릿지보증) ..	718
6-14 •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721
6-15 • 소상공인 성장추진 보증대출	724
6-16 •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727
6-17 •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730

제4편 | 공통사항



제1부 | 기 타

제 1 장

규제애로 개선·해결

1-1 • 중소기업 옴부즈만	740
-----------------------	-----

제 2 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2-1 •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744
--------------------------	-----

제 3 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3-1 • 거래 공정화	748
3-2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752
3-3 • 성과공유제 확산(성과공유 확인제)	755
3-4 •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757
3-5 • 상생결제제도	760
3-6 •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공급망 ESG)	762
3-7 •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	765
3-8 •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768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제 4 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4-1 •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774
4-2 • 이노비즈 확인제도	777
4-3 • 메인비즈 확인제도	780
4-4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783
4-5 • 벤처기업 확인제도	787
4-6 •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791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794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소 및 연락처	797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 편



제1편

중소기업

- 제1부 ▶ 금융 지원
-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 제3부 ▶ 인력 지원
- 제4부 ▶ 판로 지원
- 제5부 ▶ 수출 지원
-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탄소중립 지원

제2편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중소기업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 제1부 > 소상공인
- 제2부 > 전통시장
-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4편

공통사항

- 제1부 > 기타
-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 부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소 및 연락처

제 1 부



금융 지원



제 1 장 ▶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제 2 장 ▶ 신용보증 지원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 1-3 신성장기반자금(용자)
- 1-4 재도약지원자금
- 1-5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 1-6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 1-7 밸류체인안정화자금(용자)
- 1-8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사업개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 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 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 중점지원분야 참고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공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기타 정책자금 용자공고 내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한도

-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서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 공지
- 금리 인하는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허용
- 아래의 유망기업 등에 금리우대를 통해 정책지원 목적성 제고
 - (유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등 0.1%p
 - (정책연계)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지원 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함) 0.1%p
 - (포용금융)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0.1%p
 - (시설자금) 시설자금 대출기업 0.3%p
 - (성실경영)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 자금에 한함) 0.3%p
 - (성과창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창출 실적 보유 기업에 대출시 각 성과별 0.1%p,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 인하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 (수출증가)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증가한 기업

* (적용제외)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경영(재해) 등)

용자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 대리대출 취급은행(14개사) :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 이차보전 취급 은행(13개사) :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성장공유형 대출) 용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투자조건부 용자)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예정)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용자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으로 대출금 조기 상환

용자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용자 절차 운영

① 정책자금 공지 :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 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마일스톤자금, 용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업력 15년 초과 및 상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의 대출거절로 용자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수시 접수 가능

② 용자신청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업력, 수출실적 및 자금용도 등 기업 기초정보를 입력 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적합자금을 추천·안내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 디지털지점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로그인)

신청 프로세스 중 적합자금 선택							
구분	공통	탐색	제한 요건 검토	적합자금 선택			
트랙 I	*신청기업은 기업현황 등 입력, 정보 제공동의	•기업이 용자공고를 직접 확인·검토	•기업이 직접 제한 요건 상세 확인	•기업이 적합자금을 최종 선택			
트랙 II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정책자금 내비게이션</th> </tr> </thead> <tbody> <tr> <td>•기업이 기초정보 입력(업력, 폐업 등)</td> <td>•기초정보를 토대로 적합자금 자동추천</td> </tr> </tbody> </table>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기업이 기초정보 입력(업력, 폐업 등)	•기초정보를 토대로 적합자금 자동추천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기업이 기초정보 입력(업력, 폐업 등)	•기초정보를 토대로 적합자금 자동추천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 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창진원 추천 기후테크 우수 스타트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서류작성 :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평가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용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수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⑥ 용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 K-뷰티론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2개월 이내 발주(추천)서 또는 발주 증빙서류에 명시된 제품의 생산여부 등 진행 상황 점검
 - * 운전자금 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선제적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시스템 수수료(대출 금액의 0.06% 수준, 부가가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

용자제한기업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
-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 * 단,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⑩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용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예외 >

- (누적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간급자금, 마일스톤자금은 운전자금 지원 실적에 미포함
- (지원 제외 예외기업)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 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K-뷰티론, 통상리스크 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 마일스톤자금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 시설자금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限

- ※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용자 4조 6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 6,058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794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2,851억원), 재도약지원자금(6,1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별류체인안정화자금(1,985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정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문
 - (경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홈페이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에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용자 1조 6,358억원, 이차보전 1,526억원 - (창업기반지원) 용자 1조 3,358억원 - (개발기술사업화) 용자 3000억원 이차보전 1,526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용자 1조 6,058억원 - (창업기반지원) 용자 1조 3,058억원 - (개발기술사업화) 용자 3000억원
지원 방식	<창업기반지원자금> ■ (추가)	<창업기반지원자금>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추가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 창업자 포함) 혹은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단,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충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단, 제품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분야 기술은 5년)

-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용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용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직접대출로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직접대출, 투자조건부 용자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 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투자조건부)자금별 대출금리에서 0.3%p 차감

대출기간

- (직접·대리 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직접·대리 대출)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①, ②, ③, ④, ⑤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는 2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용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처리절차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16,058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신성장기반자금(용자)

사업개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신성장기반자금 : 용자 1조 3,111억원 이차보전 2,501억원 - (혁신성장지원) 용자 6,908억원 이차보전 1,400억원 - (제조현장스마트화) 용자 4,666억원 이차보전 900억원 - (Net-Zero 유망기업) 용자 937억원 이차보전 201억원 - (스케일업) 용자 6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 용자 1조 811억원 이차보전 2,040억원 - (혁신성장지원) 용자 5,108억원 이차보전 1,160억원 - (제조현장스마트화) 용자 4,166억원 이차보전 720억원 - (Net-Zero 유망기업) 용자 937억원 이차보전 160억원 - (스케일업) 용자 600억원
지원 방식	<혁신성장지원자금> ■ (추가) ■ (추가)	<혁신성장지원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추가 * 'AX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 금융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 (이차보전)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협동화' 자금 별도 운용

〈협동화자금〉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 업력 제한 없음
- * '용자제의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 '용자제한기업' ◎항(소상공인), ◎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 국내 복귀기업은 '용자제한기업' ◎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

용자방식

- 혁신성장지원자금,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스케일업금융의 세부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 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협동화, 제조현장스마트화,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용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처리절차

● 직접·대리대출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용자 10,811억원, 이차보전 2,04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재도약지원자금

사업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구조개선전용자금 • (추가) 재창업자금 • 대출조건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추 가 〉	구조개선전용자금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재창업자금 • 대출조건 추가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내용	사업전환자금 : 3,500억원 구조개선전용자금 : 2,001억원 재창업자금 : 2,000억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추 가 〉	사업전환자금 : 3,125억원 구조개선전용자금 ; 2,000억원 재창업자금 : 1,000억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통상환경변화 대응(구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아래의 유형(① ~ 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모든 지원유형 진로제시컨설팅 필수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③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절차 : 신청 → 상담 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div>
재창업 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에 한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제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 - 2% 고정금리 • 지원규모 : 3,125억원
구조 개선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금리, 운전자금 3년간 15억원 이내이며, 연간 최대 10억원 한도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대출기간 10년, 거치 4년 이내) • 지원규모 : 2,000억원
재창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 지원규모 : 1,000억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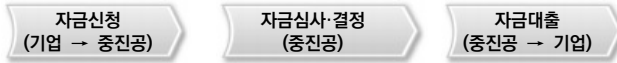
- 공고시기 : 2025년 12월 22일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 추진절차 :

- 사업전환자금



- 구조개선자금



- * 지원대상 ①번 유형은 자금신청 전에 진로제시 컨설팅을 거쳐야하며, ③번 유형(선제적 자율구조개선)은 자금신청 전에 은행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 재창업자금



-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사업전환 : (전화) 044-204-7482, (메일) 22mrj@korea.kr
 - 구조개선 : (전화) 044-204-7481, (메일) mashall98@korea.kr
- 중소기업부 창업정책과
 - 재창업 : (전화) 044-204-7628, (메일) pchyeok@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 사업전환 : (전화) 055-751-9703, (메일) wms2494@kosmes.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구조개선 : (전화) 055-751-9922~7, (메일) zero@kosmes.or.kr
 - 재창업 : (전화) 055-751-9622, (메일) dracon128@kosmes.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개요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우대 사항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추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 용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 용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① 경영애로 사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피해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용자방식

- 직접대출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용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처리절차

- 직접대출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2,50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사업개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용자 3,825억원 이차보전 2000억원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용자 2,000억원 - (수출기업글로벌화) 용자 1,825억원 이차보전 2,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용자 3,164억원 이차보전 1,630억원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용자 1,000억원 - (수출기업글로벌화) 용자 2,164억원 이차보전 1,630억원
우대 사항	〈해외법인지원자금〉 ■ (추가)	〈해외법인지원자금〉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용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대출 한도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연간 5억원 이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해외법인지원자금)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1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
 - *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해외법인지원자금) 포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 포함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용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우대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지원내용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용자 3,164억원, 이차보전 1,630억원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운전자금만 가능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용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처리절차

- 직접·대리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밸류체인안정화자금(용자)

사업개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 강화

지원대상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증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 기업이 용자 추천하는 중소기업(수주기업)
 -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매출채권팩토링)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 기업과 1년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판매기업)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추후 공고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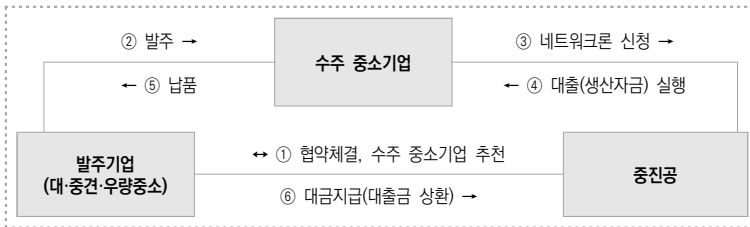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395억원
- (매출채권 팩토링) 590억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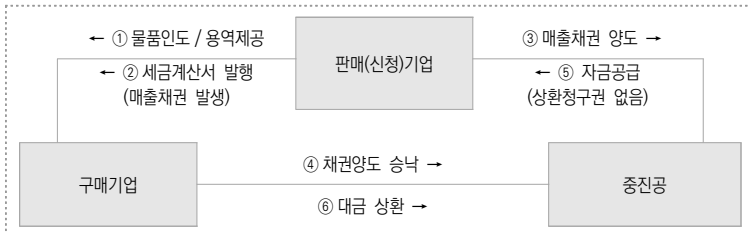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처리절차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매출채권팩토링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개요

고용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이차보전 지원 : 6,027억원(공급규모)	이차보전 지원 : 3,670억원(공급규모)

지원대상

-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및 스마트공장, 그린기술 등 미래·신사업 추진 기업

용자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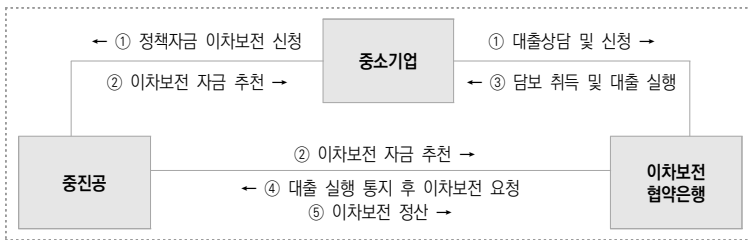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방식

-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13개) :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대출금리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율

- (3%) 중점지원분야,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 상환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각 용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중소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 장

신용보증 지원

- 2-1 신용보증기금
- 2-2 기술보증기금
- 2-3 지역신용보증재단
- 2-4 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기금

사업개요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용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등은 보증금지

보증지원 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과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계속 기업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추가 제한

- ▶ (업종)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관련 업종 등
- ▶ (신용상태)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제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20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200억원
•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15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50억원

-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 시설자금 보증한도 : 소요자금을 바탕으로 별도 산정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처리절차

단계별	처리내용
신청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공급 63.9조원으로 운용 예정
* '25년 지원현황 (11월말 기준) : 63.4조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유형별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보증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보증프로그램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등 지원
시설자금특례보증	•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공동 프로젝트 보증	• 혁신성, 경쟁력이 우수한 공동 프로젝트(공동 제조, 생산, 구매, 납품,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업단위 보증 지원
문화산업 영위기업 보증프로그램	• 문화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혁신리딩기업 선정제도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중소-중견 스케일업 프로그램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유니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 타	•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지식재산 보증 등

Q 보증료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을률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사업개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25년 총 보증잔액 29.3조원으로 운용 예정 (유동화회사보증 1.2조원 포함)	'26년 총 보증잔액 29.5조원으로 운용 예정 (유동화회사보증 1.4조원 포함)
신청접수	공고(예정) 시기 : '25.1.1.~'25.12.31. 상시 신청·접수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Q&A	수출중소기업	수출기업
Q&A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기술선도 산업지원 프로그램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 중인 기업
- ▶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 ▶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에 대하여 기술 보증 지원
- 지원금액 : '26년 총 보증잔액 29.5조원으로 운용 예정 (유동화회사보증 1.4조원 포함)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branch)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거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등 (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표준재무제표(최근 3개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59, (이메일) 2760@kibo.or.kr



Q&A

Q

기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술선도 산업지원 프로그램	•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AI첨단네트워크, 바이오·뷰티, 문화콘텐츠·서비스, 방산, 에너지·환경, 첨단제조) 관련 기업에 대하여 금융·비금융 종합 지원
수출기업보증	• 수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보증지원(수출기업보증)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Kibo-Star밸리)	• 기술성 및 기술사업성장성이 우수한 혁신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Scale-up을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	•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업종 영위기업을 발굴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대지원
스마트제조·서비스보증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도입·공급기업 및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창업기업보증	•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우대 지원 및 신규 고용(예정)인원 직접 채용 소요자금 지원
기 타	• 금융기관 협약보증, R&D보증, 지식재산(IP)평가보증, 기후환경보증, 문화산업 완성보증, 경영개선 지원보증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

〈 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안전부) • 국세청 홈텍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지원규모

- 26조원 보증공급 계획(보증잔액 43.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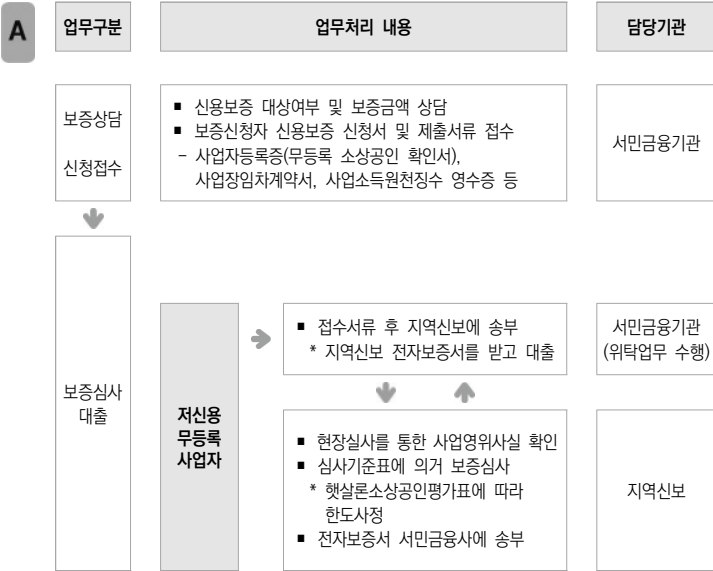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Q&A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매출채권보험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
-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지원대상

-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구 모	업 력	업 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1년 이상 (일부 상품은 업력 1년 미만 가입 가능)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신청제외 대상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폐업 기업 등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보험계약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해외소재 기업, 현금거래기업, 청약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지원내용

- 구매자의 폐업 또는 해산, 부도사유 발생, '회생절차 등'의 신청,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 회수가 어려운 경우 가입한 보험금액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가입 매출채권, 어음보험은 보험금액에 대하여 0.1% ~ 5.0%(일부 보험상품은 보험금액에 대하여 0.2% ~ 2.0% 적용)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 험 대 상
매출채권 보험	다사량보험	15일	다수 구매처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한사량보험	8일 실시간	개별 구매처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온라인보험		
어음보험	포괄어음보험	15일	다수 구매처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어음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온라인보험은 홈페이지 내 매출채권보험 플랫폼에서 신청·가입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인수금액, 구매자 인수 가능 여부 등 심사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온라인보험의 경우 관할점 방문·서면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받을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26년 보험인수 21.7조원으로 운용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 053-430-43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홈페이지 : www.bizinfo.go.kr)



Q&A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는?

A 구매자에게 아래의 네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보험금 지급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관련 서류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인수증,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제내역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 받을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 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제 2 부

기술개발 지원



제 3 장 ▶ 기술개발자금 지원

제 4 장 ▶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제 5 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3 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3-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3-2 창업성장기술개발(R&D)

3-3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3-4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3-5 산학연 Collabo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 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사업구조 개편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 중소기업유망기술
지원규모	신규과제 435개 / 617억원		신규과제 451개 / 1,012억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글로벌선도 기술개발	수출지향형	최대 2년, 10억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글로벌협력형	최대 5년, 25억 이내	75% 이내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최대 3년, 100억 이내	75% 이내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2~5년, 5억~100억원 이내 지원
 - 글로벌선도기술개발(540억원) :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472억원) :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분야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신규과제 451개 내외
- 지원금액 : 신규과제 1,012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6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532~0538, 0541~0548
(이메일) 311@tipa.or.kr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IRIS-사업정보-사업공고-마감-‘기술혁신개발사업’ 검색
 - (홈페이지)





Q&A

Q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자격 중에서 '졸업제'란 무엇인가요?

A

졸업제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사업 공고 참조

Q

협약체결 이후 연구개발비 집행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자유공모 :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하는 과제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구조 개편	(디딤돌) 도약 트랙 내 여성참여활성화 R&D 지원 (TIPS) 일반, 딥테크, 글로벌 TIPS 지원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R&D를 첫걸음 트랙으로 이동 및 도약 트랙 내 전략기술 R&D 신설 (TIPS) '딥테크 트랙'을 '일반형 트랙' 후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편
지원단가 상황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5억원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8억원
공고시기	(디딤돌) 25년 4월	(디딤돌) 25년 12월, 26년 3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신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은 10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등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5년, 2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TIPS	일반			최대 2년, 8억원
딤테크	최대 3년, 15억원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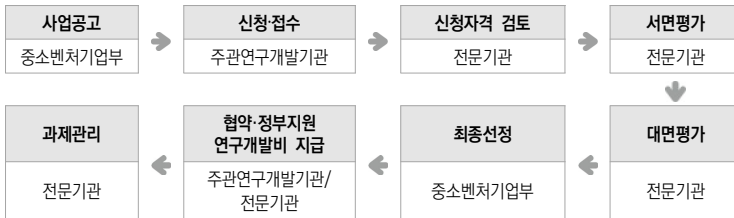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1.5~3년, 2~15억원 지원
 - 디딤돌(711억원) :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고도화 기술 등 성과 창출이 가능한 도약기술을 단계별로 지원
 - TIPS(1,624억원)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자금을 매칭하여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과제 총 1,668개 지원
 - (디딤돌) 868개, (TIPS) 800개
- 지원금액 : 신규 과제 총 2,335억원
(디딤돌 : 711억원 , TIPS : 1,624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디딤돌) (1차) '25년 12월, (2차) '26년 3월 (TIPS) 상시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세부추진절차는 각 공고에서 확인)

① 디딤돌



② TIPS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신청 창업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사) 창업기획자, 초기 전문VC, 선도·벤처기업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 (디딤돌)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3, (이메일) cookie27@korea.kr
 - (TIPS) 신산업기술창업과
(전화) 044-204-7645, (이메일) psh0912@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디딤돌) 창업성장사업실
(전화) 044-300-0552, 0558, (이메일) 331@tipa.or.kr
 - (TIPS) 스타트업팁스실
(전화) 02-2280-0461, (이메일) tips@tipa.or.kr
- 사업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	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민관공동 기술사업화(R&D)	기술이전사업화 (신설) TRL점프업 구매연계·상생협력
지원 조건	(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년, 8억원 이내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TRL점프업)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내용	(기술이전사업화) R&D 지원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단계별(PoC·PoM → R&D) 지원 * '26년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 2단계 지원 예정	
가점	신설		(구매연계·상생협력)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우대가점 부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내역사업	지 원 대 상
기술이전 사업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필요 시)

내역사업	지 원 대 상
TRL 점프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 * 1단계는 필요 시, 2단계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구매연계· 상생협력	(구매연계) 수요처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TRL점프업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지정공모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자유, 지정공모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6년 1단계 과제만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이전사업화(200억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 TRL점프업(100억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 개발 지원

- 구매연계·상생협력(303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지원내용 〉

기술이전사업화 · TRL점프업	1단계('26년 지원)	2단계('27년 지원)
	PoC·PoM 9개월, 1억원	사업화R&D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 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26년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내역사업은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경쟁방식(2:1))·2단계(사업화 R&D) 지원 예정

- 지원규모 : 총 500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603억원(신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3월(TRL점프업), 5월(구매연계·상생협력)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전화) 044-204-7763, (이메일) cookie27@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전화) 044-300-0655, 0671, 0673, (이메일) 711@tipa.or.kr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이전사업화)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사업개요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VC 등),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정부 R&D 지원 및 매칭투자를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 촉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25년			'26년			
구분	지원기업(개)	지원규모(최대)	구분	지원기업(개)	지원규모(최대)	
스케일업 팁스	572	3년, 15억	일반형	681	3년, 20억	
			특화형	100	3년, 30억	
글로벌 팁스	-	-	일반형	114	4년, 50억	
			특화형	10	4년, 60억	
DCP	30	3년, 36억	기술 도전형	59	3년, 50억	
			생태계 혁신형	5	4년, 200억	
융자 '연계형	90	2년, 5억	융자 연계형	-	90	2년, 5억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	최대 3년 20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특화형	최대 3년 30억 원		
글로벌 팁스	일반형	최대 4년 50억 원		
	특화형	최대 4년 60억 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기술도전형	최대 3년 50억 원		
	생태계혁신형	최대 4년 200억 원		
융자연계형		최대 2년 5억 원		

- 우대사항 :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등

※ 가·감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신청제외 대상

-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등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스케일업 팁스	•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케일업 단계(Series A) 중소벤처기업에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지원
글로벌 팁스	• 해외투자 유치 등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에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R&D 지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 도전·혁신적 R&D에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를 출제, 민간투자 연계방식으로 선정·지원
융자연계형	• 기술·기업가치에 기반한 보증(기보)을 통해 은행융자를 유치한 기업에 R&D와 후속 자금확보(융자)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전주기로 지원

● 지원규모 : 총 540개 과제, 2,667억 원 지원

구분	지원기업 수	지원규모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	300
	특화형	100
글로벌 팁스	일반형	90
	특화형	10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기술도전형	35
	생태계혁신형	5
융자연계형	-*	

* '26년 기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2026년 2월 이후)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연구개발 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내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공고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과 : (전화) 044-204-774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팁스실 : (전화) 02-2280-0420~0429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 (경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산학연 Collabo R&D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R&D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형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이내) 컨소시엄형 예비연구 (8개월, 2억원 이내) 일반형 사업화 R&D (최대 24개월, 2.6억원 이내) 	※ 사업계획에 따라 예비연구 지원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형 사업화 R&D (최대 24개월, 2.6억원 이내) 컨소시엄형 사업화 R&D (최대 24개월, 10.4억원 이내)
가점항목 (기타사항)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가점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가점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가점 1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 2단계(사업화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 단계별 지원(1단계 연구과제 완료 후 2단계 수행)

지원유형	단 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일반형 (산학협력, 산연협력)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 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원 이내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1단계(예비연구)*	8개월, 2억원 이내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10.4억원 이내		분야 지정

* 1단계(예비연구) : '26년부터 예비연구 신규과제 미선정

** 2단계(사업화R&D)는 '25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 과제 유형

구분	일반형 과제	컨소시엄형 과제
과제 유형	개별과제(1:1 협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과제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과제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과제N</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 (기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 (기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 (기업)</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 (대학)</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 (연구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 (대학)</div> </div>	
분야	개별과제의 묶음 과제(多:多 협력)	
	컨소시엄형 과제 A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세부과제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세부과제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세부과제N</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기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기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관(기업)</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대학)</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연구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동(연구소)</div> </div>		
분야	제한 없음	지역전략분야(레전드50+ 등), 국가전략기술

- 지원규모 : 394억원(신규 238.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 * (기타사항) 레전드 50+ 선정기업(2점), 산학협력 마일리지(1~2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점),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 체결 기업(1점),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1점), 벤처기업 가점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가점 1점
- 선정평가 : 신청자격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이의신청 평가 → 선정·협약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7, (이메일) ziantinha@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전화) 044-300-0654, 0658, 0675
(이메일) sch@tipa.or.kr, yjsng@tipa.or.kr, iyeazin@tipa.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사업화R&D)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



Q&A

Q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나요?

A 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필수로 제출

Q 1단계 예비연구를 수행한 기업만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은 단계형 사업으로 1단계 예비연구 수행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

제 4 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 4-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4-2 혁신제품 지정 사업
- 4-3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여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사업(서비스) 창출 등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1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 통합솔루션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억원(총사업비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www.smb-servic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에 따른 온라인 신청 방법 변경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서비스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공급기업 없이 단독 참여 불가)

신청제외 대상

- (1)~(4) 도입기업만 해당, (5)~(8) 도입·공급 기업 모두 해당
- (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규과제 참여 불가
(고도화 과제만 참여가능하며, 도입기업 기준 고도화 과제는 1회만 참여가능)
 -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3) 스마트공방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4)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5)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유희·향락업, 주점업
 - (6)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8)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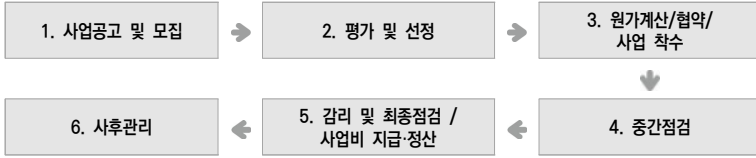
지원내용

- (신규 구축) BM 창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구축 지원(총예산 75억원)
 -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솔루션 신규 도입 후 매출·고용·고객만족도 등 높은 성과 달성 등 우수기업에 솔루션 고도화 지원(총예산 25억원)
 - 2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3~4월(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원가계산을 통한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후 최종 협약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추진 의지 및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목표·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파급효과 등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전화) 044-204-7272, (이메일) antyx@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77, (이메일) smartservice@tipa.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나요?

A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도입기업과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공급기업이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혁신 우수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연계 활성화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자격	최근 5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신청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신청서 제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신청접수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구매상담회	1회	2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최근 5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 신청 전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신청제외 대상

※ 모집공고 확인 필수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
- ▶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
 -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 ▶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여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 ▶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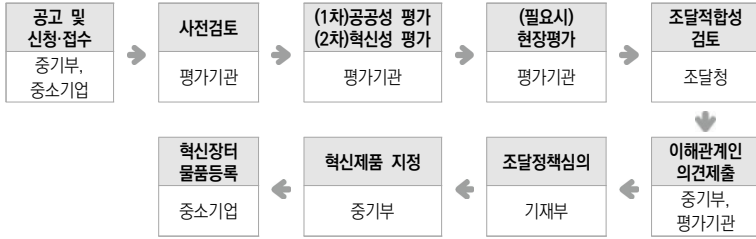
지원내용

-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행사, 홍보 등 판로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7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증빙서류 등
- 평가·심사 주요 내용 : 제품의 공공성, 기술혁신성, 시장성 등

● 선정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7, (이메일) ziantinha@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전화) 044-300-0712, 0715, (이메일) innopro@tipa.or.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하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홈페이지)



용어 설명

물품분류번호(8자리) : 물품의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번호를 매긴 것

세부품명번호(10자리) : 물품분류번호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번호를 추가(2자리)로 매긴 것

물품식별번호(8자리) : 상기한 물품 분류 내 고유 모델(제품)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을 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사업 신설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술수요발굴·매칭 지원사업 - 기술보유기업(국내)·기술수요기업(해외) 간 매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 해외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신타기술, 일반기술의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신타기술, 파산기술의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삭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거래 시장 참여자인 중소기업·기술보유기관·민간 기술거래기관 등
- 지원조건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우대사항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신청제외 대상

- ▶ 기업 부도
- ▶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중인 기업
-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으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해외진출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기술거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 사업명	지 원 내 용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10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150건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월
- 신청방법 :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온라인 신청·접수,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신청 기본서류,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보호과 : 044-204-7784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전화) 051-606-7640, (이메일) infra@kibo.or.kr
-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참조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소통과 공유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홈페이지)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5 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 5-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5-2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 5-3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 5-4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5-5 2026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 5-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 5-7 공급기업 역량진단
- 5-8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 5-9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 5-10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5-11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 5-1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5-13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개요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 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기간	(고도화) 최대 9개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9개월
지원한도	(고도화) 최대 2억원, (동일수준) 최대 0.5억원	최대 2억원 이내 (단, 목표수준별 2회, 2.5억원 한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고도화	기업당 최대 2억원(단 수준별 2.5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사업별 상이)
고도화(동일수준)	

- 우대사항 : 지원 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유형	지 원 내 용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1 이상 또는 동일수준'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고도화(동일수준)	

● 지원규모

사 업 명	지원 과제 수	지원 기간(개월)	지원 한도(억원)	지원비율(%)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선도형 제조혁신)	정부형	265	9	2	50	
	부처협업형	150	9	2	50	
		지역특화형	미정	9	2	50
	레전드50+	50	9	5	50	
	도약(Jump-Up)	10	9	5	50	
	제조시특화	400	9	2	50	
		대중소상생형	250	9	1.2	30
		상생형시트랙	20	9	5	50
	R&D성과확산	20	12	5	50	

● 지원금액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5. 11월 ~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세부사업별 상이)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57, (이메일) ljh0129@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통합공고 : (제2025-574호) 2026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25.10.31.)
- 개발사업 : (제2025-587호)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25.11.12.)
 - (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사업개요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컨소시엄,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0억)

구분	분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 협업 스마트시스템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 우대사항 : 대표기업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부여

구분	항 목	세 부 내 용	제출서류
1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내)
2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개별기업 지원
- 지원규모 :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금액 : 60억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5. 12. 8.(월) ~ '26. 1. 7.(수), 17시까지
- 공 고 명 : 2026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61, (이메일) keun7100@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공고명 : (제2025-593호) 2026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25.11.24.)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Q&A

Q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A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사업 신청시 조건사항이 있나요?

A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최소 5개이상 참여하고, 공급기업과,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대상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공고 내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등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도입기업 :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 사업관리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기획기관 : 디지털협업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수립 및 컨소시엄 관리 등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컨소시엄 : "디지털협업공장"의 수행하기 위해 기획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협업단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AS)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제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사업개요

- (자율형공장)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자율형공장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기획기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AI-DT 관련 컨설팅 실적 10건 이상 보유 • (인력) AI-DT 관련 컨설팅 경험 상근 컨설턴트 5명 이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AI-DT 관련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실적 10건 이상 보유 • (인력) AI-DT 관련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상근 컨설턴트 5명 이상 보유
기획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통과 기관에 대해 기획기관 Pool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검토 및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기획기관 선정 및 기획기관 Pool 구성 * 지역TP 기본 지정
기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기획 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지원 후 최종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차등 지급
성능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혁신지표) 6개 중 2개 이상 • (자율형지표) AI-DT 반영 1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혁신지표) 8개 중 2개 이상 • (자율형지표) AI-DT 반영 2개 이상

지원대상

- (자율형공장)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의 구축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게 '참여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기획지원)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기획지원 등
- (구축지원) AI·DT 적용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등

지원조건

- (자율형공장) : 총 사업비 50%(6억원) 이내(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지원)

구분	지 원 조 건	정부지원금 (최대)
자율형공장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AI(인공지능), DT(디지털트윈), AAS(제조데이터표준) 적용 필수	6억원(2년)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5년 12월 8일 ~ '26년 1월 7일 17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획지원 → 기술성(현장심층)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현장심층)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자율형공장)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59, (이메일) sanga0315@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공고명 : (제2025-601호) 2026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25.11.24일)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도입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SI기업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 우대사항 : (각 2점, 최대 6점)

구분	항 목	세 부 내 용
1	부리기업	·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부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글로벌강소기업 1,0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3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기업	·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상공정에 대한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4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
5	특별재난 산불 피해 기업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산불 피해기업
6	지능형 공정모델 활용	· 既 개발된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공정모델을 도입하는 경우
7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입주기업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되는 경우
-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지원내용	상세내용
로봇자동화 시스템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조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제조공정의 디지털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 ② 현재 제조공정에 활용 중인 로봇이 노후(내용연수 10년 이상)화 되어 신규로봇으로 교체하는 경우 - AI 기술 활용 :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등의 제조혁신이 가능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구축을 위한 기술 컨설팅 지원
로봇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18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450억원(기업당 최대 2.5억원 지원)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5년 12월 ~ '26년 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로봇 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 우대가점 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심사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사업비 심의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 역량 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조로봇본부 중소제조보급팀
(전화) 053-210-9532~9, (이메일) (factory@kiria.org)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참고사항

① 2026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공고
- (경로)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 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org)의 '알림마당-사업공고' 참고
- (홈페이지)





Q&A

Q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제조 관련 기업이라면 중소·중견 기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Q 한 곳의 로봇공급기업이 다수 수요기업과 함께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공급기업은 복수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도입기업은 하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Q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내 타사업과 동시에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을 수행 중인 도입 기업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은 공고문 붙임 1(동시선정 / 신청제한) 참고

Q ‘AI 기술활용’ 유형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A ‘AI 기술활용’ 유형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등의 제조혁신이 가능한 로봇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Q ‘일반’ 유형과 ‘AI 기술활용’ 유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일반’ 유형과 선정절차는 동일하나, ‘일반’ 유형에서 인정되는 6개 사업비 비목 외 ‘AI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추가적으로 인정되고 개발비 검증을 위해 ‘AI SW 개발 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Q 시소프트웨어는 공급기업이 직접 개발해야 하나요?

A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되나, SW개발을 위한 투입 인력별 세부과업, 투입기간 등 요구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Q 시기술활용을 통해 구축된 로봇시스템의 운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사업결과물은 ‘일반’ 유형과 동일하게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변경·이전을 포함해 중도 처분이 불가합니다.

용어 설명

로봇공급기업 : 로봇을 공정별로 설치하는 기술을 보유한 SI (System Integration)기업이 해당되며, 도입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보유기업



2026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핵심 공정과 노동 부하가 높은 수작업 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제조 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도입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제조현장 공정효율화 및 자동화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 우대사항

구분	항 목	세 부 내 용
1	부리기업	•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17조의2와 관련하여 부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글로벌강소기업 1,0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3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
4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기업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산불 피해기업
5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되는 경우
- ▶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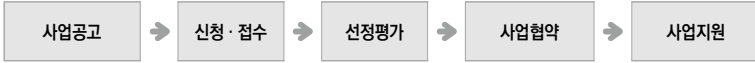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핵심공정과 노동부하가 높은 수작업 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또는 기존설비 업그레이드 지원
*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규모 : 127개사 내외
- 지원금액 : 120억원(기업당 최대 95백만원 지원)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5년 12월 ~ '26년 1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pms.kpic.r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심사 → 대면(발표)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사업비심의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도입기업의 공정자동화 구축계획에 대한 설비 적정성, 사업 추진 및 계획의 구체성, 보급·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추진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전화) 02-2183-1623~5, (이메일) ppurisc@kitech.re.kr
- 사업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PMS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pms.kpic.re.kr)

참고사항

- ① 2026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년 자동화공정 구축 지원사업 공고
 - (경로)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사업신청 홈페이지 ‘공정자동화 > 사업소개 > 공고’
 - (홈페이지) | 



Q&A

Q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은 중견기업이 지원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제조기반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Q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공정 및 라인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자동화공정을 구축하려는 도입기업과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개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지원대상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국내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55, (이메일) kim13779@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2026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개요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업의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분야	기본진단 / 심화진단	기본-심화진단 통합 제조시 역량진단 시행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지원조건 : 역량진단 진단비용 80%

구분	공급기업 역량진단	AI 역량진단
지원조건	역량진단 진단비용 80%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최근 3년 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확정 후, 6개월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공급기업의 역량진단 지원
 - (공급기업 역량진단)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역량을 진단하고, 분야별 개선방향 컨설팅 제공
 - (AI 역량진단) 역량진단 참여기업의 제조AI 솔루션 개발역량 평가 및 등급 산정을 통해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지원규모 : 공급기업 775개
- 지원금액 : 8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예정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역량진단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 등 공고문 확인 요망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역량
- 추진절차



* 관련 내용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참고사항 :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선정평가 항목에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 반영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전문기업육성팀
(전화) 044-300-0972,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전년도 사업공고 : 2025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업개요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사업 추가	3개 내역사업 (사전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4개 내역사업 (사전기획, AX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 비중	지원 규모
사전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을 포함한 제조DX 전략 수립,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85%	500개사
AX기획	공장 내 문제를 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별 최적 AI 솔루션 탐색 및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200개사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등		400개사
사후관리	부품수리 교체, H/W S/W 업그레이드 등 솔루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등	50% (최대 19백만원)	210개사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2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61, (이메일) keun7100@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2026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지역별 세부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사업개요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형태의 솔루션 전환 및 종합솔루션 개발·출시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사업분야 명칭 변경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단독형 클라우드화) (통합형 클라우드화)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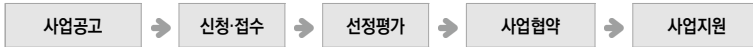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최근 3년 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지원내용

사업분야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과제당 지원규모
단독형 클라우드화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 사업화 중인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개발 지원(SW → SaaS 전환)	7	2.5억원 이내
통합형 클라우드화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 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 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1	8억원 이내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6년 1월 5일 ~ '26년 2월 13일 17시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45, (이메일) hmj@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26년도 사업공고 : (제2025-640호) 2026년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사업개요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우대사항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 (3) 제조데이터 표준 (5)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 (3) (신설) '25년 제조데이터 컨설팅(수시모집) 완료 기업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데이터를 수집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우대사항 : 아래항목 해당 시 선정평가 가점 반영(최대 6점*까지 인정)
 - *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3점), '25년 제조데이터 컨설팅(수시모집) 완료 기업(3점)
 - ※ 우대사항은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기업의 부도, 휴 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제재처분 조치 기간 중인 기업의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지원규모 : 25개 개업 내외(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12.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2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선정절차 : ①요건검토 → ②선정평가 → ③현장확인 → ④최종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안, 수행 결과물 및 상품화,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데이터전략실
(전화) 044-300-0941, 0946, (이메일) kosmo1@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home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제조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업에 AX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 제조AI 기술기업, 지역혁신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 우대사항 : 정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I 솔루션 적용 과제, 고용노동부 주관 S- OJT 사업 참여 제조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테마지정 공고
 - * (테마분류) 지원목표와 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안전·공정혁신·경영혁신·소비자체감형 등 4대 분류로 구분하고, 사업 공고문과 함께 테마 공개(예정)
- 지원규모 : 36개 과제 내외(1년과제 21개 내외, 2년과제 15개 내외)
- 지원금액 : 총 645억원
(자부담 30% 별도, 1년과제 최대 20억원 이하, 2년과제 최대 30억원 이하)
- 지원 세부내용 : 산업안전 혁신(중대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인력문제 완화(단순·반복업무 자동화), 기업 경쟁력 강화(원가절감, 생산 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중소제조 현장문제 해결 및 지역주력산업 기반의 확산가능한 AX 선도모델 창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대면평가(2배수) → 현장평가 →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①단기간내 성과창출 가능성, ②향후 보급 확산 용이성, ③AI 기술을 활용한 중소제조현장 핵심 애로 해결 기여도 중심
 - 수요기업(제조기업)의 준비도 및 DX 수준(50%), 제조AI 기술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 이력(50%) 균형 반영
 - 지역 주력산업 선도형에 지원하는 과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 중심으로 성공모델 창출 후 관련 기업군으로 단계적 확산 가능성 중점 평가

● 추진절차



* 평가의견 및 최종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이나 기간, 과업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AX전략팀
(전화) 044-300-0903/0904/0907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테마고시
 - 고시기간 : '26.1월초 (예정)
 - 고시대상 : 15개 테마정의서
 - 고시내용 : 테마품질 진단 및 보완의견 수렴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의견 제시
- ②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6.1월말 ~ 2월말 (예정)
 - 공고명 :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공고명 상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검색
- (홈페이지) |



용어 설명

지역혁신기관 : 지역의 산업·기술·인재·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준공공·민간 조직

지역주력산업 : 비수도권 지역의 보유한 산업적·기술적·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중점 육성하는 핵심 산업

S-OJT 사업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등을 지원하고 있음

1.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사업개요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술보호 보안·법률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및 맞춤형 자문지원

- 사전예방 : 기술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진단·자문·교육 등 진행
- 사후구제 :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스타트업 : 설립일자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기술보호 밀착지원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기본 3일, 단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심화 4일 추가 지원
 - * 선도바우처 협약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등 중기부 협력재단이 심화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일 지원 가능

신청·접수

-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687, (이메일) yun1218@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전화) 02-368-8918, (이메일) support@win-win.or.kr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전화) 02-368-8787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기술보호올타리(<https://www.ultari.go.kr/>) → 통합기술 보호지원반

- (홈페이지)



Q&A

Q

며칠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본 3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기부·협력재단에서 심화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4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술유출피해기업 등)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은 연1회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 지원분야(사전예방, 사후구제, 스타트업) 및 희망 전문가(보안,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를 모두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 접수완료 후 전문가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접수완료 이후 기업은 기술보호올타리에서 원하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약력을 확인 후 희망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선택이 어려운 경우 재단에 문의해주시면 사업 담당자가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2. 법무지원단

사업개요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법률 자문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기간 및 시간	최대 3개월, 60시간 이내	최대 6개월, 80시간 이내(사후대응 한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외국 자본으로 설립·운영된 기업
-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기술침해 사후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
 - (사전예방) 영업비밀 및 지재권 관련 계약서, 기술보호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등
 - (사후대응) 기술유출, 분쟁대응 방향설정 및 소송·행정조사 준비 서면작성 지원 등

●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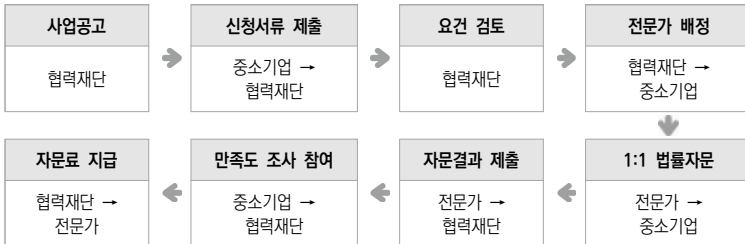
- (사전예방) 기업별 최대 3개월, 60시간 이내(1,500만원 상당)
- (사후대응) 기업별 최대 6개월, 80시간 이내(2,000만원 상당)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aw@win-win.or.kr)
- 제출서류

공통 (사전예방, 사후대응)	① 법무지원단 자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개인(법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전예방' 신청 시 추가 제출	⑤ 창업기업확인서 or 벤처기업확인서 o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or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중 해당 서류 1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 02-368-8706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경로) 기술보호올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② 기타사항

- 사업안내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소개
 - (경로) 기술보호올타리 >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
 - (홈페이지) | 



Q&A

Q 법무와 관련한 모든내용을 지원하나요?

A 아니요. 해당 지원사업은 소송대리를 제외한 법률사항을 지원합니다. 기술탈취 예방 측면에서는 계약서 검토, 보안 규정수립 등이 해당되며 기술탈취 대응 측면에서는 대응 상담 및 컨설팅, 유관부처 신고를 위한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술탈취 예방은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을 선행하여야 하며, 현장자문 사업의 결과에 법무지원단을 통한 추가 기술 유출 사전예방 자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침해구제팀'을 통한 법률소송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침해구제팀'은 기술분쟁 관련 소송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피해 기업의 소송을 진행하며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침해구제팀' 소송지원 대상의 선정을 위해서는 ①행정조사를 통한 기술탈취 피해 입증, ②행정조사 종료 6개월 이내 신청, ③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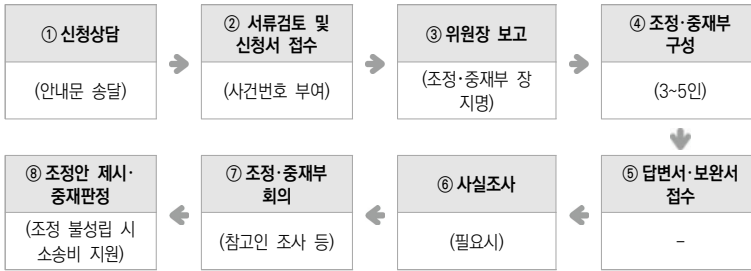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 단,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며 조정이 최종 성립된 경우에 한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로 신청(상시)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전화) 02-368-8768, 8769, (이메일) solomon@win-win.or.kr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4. 디지털포렌식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 및 사후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소유권이 불분명한 대상물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증거 보존·분석을 위한 지원기업 소유의 디지털 기기(PC, 태블릿 등)의 ①디지털 포렌식, ②디지털 이미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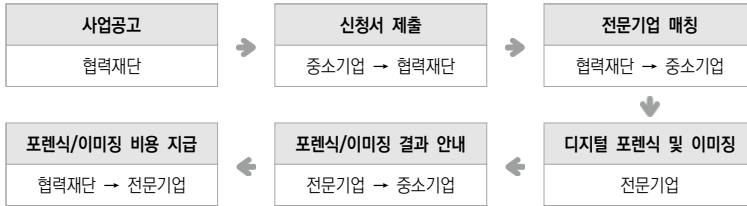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디지털 이미징(증거 보존)
기술유출 피해 인지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유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증거화 지원	기술유출 피해 인지 전, 기술유출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디지털 기기 증거 보존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한도
- 지원금액은 포렌식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forensic@win-win.or.kr)

-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디지털 포렌식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④의뢰물 소유권 증빙, ⑤사업자등록증, ⑥중소기업확인서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보호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 02-368-8714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② 기타사항

- 사업안내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소개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피해구제 >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 (홈페이지) |



5. 기술자료 입치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이용방법	이용기업 직접이용	임치대행 서비스 신규도입 * 임치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술임치 대행' 서비스 도입

지원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내용

-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 탈취·유용 방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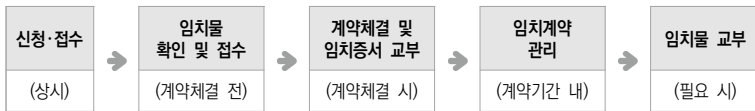
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차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차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차수수료 1/2 감면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신청·접수

- 온 라 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사업개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대상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 ~ '26.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4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394 / www.kibo.or.kr)



Q&A

Q TTRS는 어떨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1년간 약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 제안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인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7.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유형	① 일반형 ② 상생형 ③ 바우처연계	① 상생형 ② 바우처형
과제속성	① 일반과제 ② 해외연계과제 ③ 고도화과제 ④ S/W 라이선스 등 지원과제	① 자체관리형(온프레미스형) ② 위탁관리형(SECaaS형/클라우드형)
공급기업 관리	등록 희망하는 공급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에 등록 요청	공급기업의 별도 선정·등록 절차를 마련, 기술보호 울타리에 공개하여 공급기업 POOL 관리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상생형(상생협력기금 연계) :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 ** 바우처연계형(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 :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된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창업기업 및 신규 참여기업 우대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구분 \ 과제속성	자체관리형 (온프레미스형)	위탁관리형 (SECaaS형 or 클라우드형)
지원대상	기업 내부에 보안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업	보안 전담 인력 부족,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이유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보안 장비 도입 및 구매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1회성/기간제) 온프레미스 구축형 보안 서비스 도입 및 구매 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구축비 * SECaaS(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제외	SECaaS 복합 패키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이용료(연 단위) 24/7 보안관제 서비스, 보안 컨설팅, 기술지원 포함 * 온프레미스 장비·라이선스는 제외

- 지원규모 : 지원유형별 00개사
- 지원금액 : 참여 기업별 총 사업비의 최대 5천만원(위탁관리형은 최대 3천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도 상반기
- 신청방법 :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인력 청렴·보안 서약서 등
 - * 지원유형별 상이하여 신청공고 내 상세 안내
- 선정평가 : 신청 기업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진행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의 기술 보호 추진의지 평가
 - 기술보호 인식 및 노력 현황,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추진절차

지원유형	과제유형별 절차
상생협력기금 연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p>< 공통 > 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 모집 → 협력기업 추천 및 통합공고(수준진단 필수) → 추천 협력기업 사업 신청(공급기업 Pool 제공) → WINFIS 과제신청 및 출연</p> <p>① 자체관리형 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협약 체결 → 과제수행 및 사업비 지급</p> <p>② 위탁관리형 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SECaaS형 보안 서비스 구매 → 서비스 제공 및 사업비 지급</p>
선도기업 육성 연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p>< 공통 >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 모집·선정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희망 기업 대상 수준진단 및 관련 컨설팅 →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 사업 신청</p> <p>① 자체관리형 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협약 체결 → 과제수행 및 사업비 지급</p> <p>② 위탁관리형 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SECaaS형 보안 서비스 구매 → 서비스 제공 및 사업비 지급</p>

문의처

- 중소기업기법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24, 8704, 876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모집공고(일반형)

- (경로) 기술보호올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350번 게시글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접수 공고(바우처형)

- (경로) 기술보호올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349번 게시글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

- 제목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소개

- (경로) 기술보호올타리 > 사전예방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홈페이지)



8. 기술지킴서비스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기간	3년간 무상지원	방산기업(협력사 포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에 5년간 무상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우대사항 : 방산기업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에 지원기간 확대(3→5년)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 및 웹페이지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웹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장비 미보유 시 임대료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기업당 30Copy)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 예방(기업당 PC용 30Copy 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내 중요 자료의 암호화로 인한 불법 유출 및 피해 방지 지원(기업당 PC용 30Copy 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 전송
(monitor@kaits-info.or.kr)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전화) 02-3489-7050, (이메일) monitor@kaits-info.or.kr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www.kaits.or.kr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기술보호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확산하고, 기술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진단*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 기술보호 수준진단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보호 인프라에 대해 세부지표에 따라 정량평가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접수	연 1회	수시
바우처 연계 지원사업	8개	10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지방소재 기업, 창업기업, 방산(물자)업체, 국가핵심 기술보유 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해당 기업
-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매칭

수준별 점수 및 단계			추천 프로그램		
단계	점수	기술보호 단계	분야	필수패키지	바우처 연계 지원사업 매칭(안)
I 우수	75점 이상	선도기업 (3단계)	약점보완	수준진단 + 현장컨설팅 (최대3회)	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II 양호	60점~75점 미만	유망기업 (2단계)	보안강화		
III 보통	45점~60점 미만				
IV 취약	30점~45점 미만	초보기업 (1단계)	인프라 구축	수준확인 (추가가능)	통합지원반, 정책보험, 손해액 산정
V 위험	30점 미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 추진절차 : 신청 → 자격검토 → 수준진단(적정성 평가) → 연계 지원 → 수준확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기술보호올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임치기술·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해외(북미, 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특허를 등록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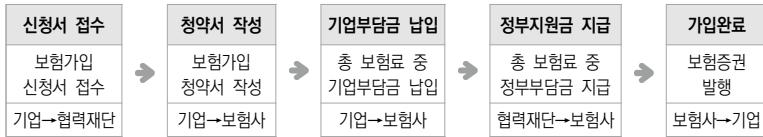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보험 목적물(특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 피소상황에 대비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 정부 지원
- 지원금액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내용 〉

구분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 선택)
내용	보험가입자 보험 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보험가입자 보험 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기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보험효력	가입 즉시	(1년) 3개월 이후, (3년) 6개월 이후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 해외보험 최대 1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insurance@win-win.or.kr)
-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지원동의서, ③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⑤사업자등록증, ⑥중소기업확인서, ⑦매출액 증빙자료, ⑧보험료 추가할인 증빙자료 (해당 시)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 02-368-8714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기술보호 소송보험(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기술보호올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3.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개요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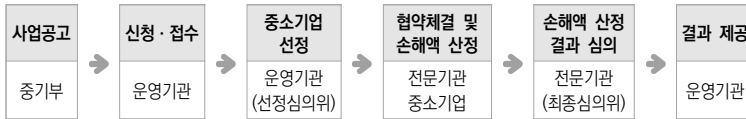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 ▶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
 - ②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 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cod@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대증빙서류 각 1부
- 선정평가 :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 판단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02-2155-3772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제 3 부

인력 지원



제 6 장 ▶ 인력 양성

제 7 장 ▶ 인력유입 촉진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6 장

인력 양성

- 6-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6-2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 6-3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 6-4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 6-5 연수사업
- 6-6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사업개요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변동없음
지원내용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등 지원	변동없음
지원규모	특성화고 158개교	특성화고 150개교
지원예산	27,675백만원	27,637백만원
특화교육	신산업·신기술+스마트공장+지역특화산업(신규)	변동없음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변동없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특성화고 (특성화고 재학생 및 중소기업 참여)
- 지원조건 :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우대사항 : 지역특화산업, 신산업·신기술, 스마트공장 관련 맞춤형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

신청제외 대상

- ▶ 대기업, 중견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주점업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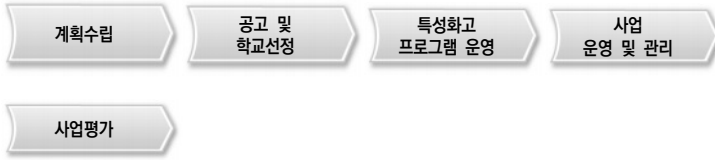
모듈	프로그램	주요내용
①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1. 맞춤형(취업/산학)	기업, 협단체와 채용협약 후 맞춤형 교육
	2. 1팀 1기업 프로젝트	기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팀프로젝트
	3.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②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 현장학습 프로그램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활동
	2.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취업중심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3. 외부전문가 활용	산학협력교사 등 취업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③ 특성화 마인드제고	1. 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진로지도
	2. 중소기업 이해연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진로선택폭 확대
	3. 교원 직무연수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특성화 마인드 제고

- 지원규모 : 특성화고 150개교
- 지원금액 : 한 학교당 평균 1.37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s://www.smes.go.kr/sanhakin>)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 성과평가(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특성화 목표 및 계획, 사업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연계 역량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인력정책과 : 044-204-7448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62, 9863, 9865, 9867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경로) 중소기업인력정책과 홈페이지 > 알림소식(새소식) > 사업공고 >
(검색) 특성화고
- (홈페이지) |





Q&A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기업 참여 방법은?

A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경로)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업 신청] → [기업회원 로그인]
③ [신청 관리] → [사업참여기업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 신청 매뉴얼 게시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경로)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업 안내]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사업개요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
 - (전문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전체 협약기업 10%내 중견기업 가능)

신청제외 대상

- ▶ (대학)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 등
-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학생) 직업계고 2~3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전문대까지 연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대체 가능(협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인 경우)
- (중소기업)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 등)에 참여 가능,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등

대 상	지 원 내 용
참여학생	• 직업교육,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연계대학 진학 등
협약기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 지원규모 : 19개 사업단 / 연간 참여기업 800개사 내외

신청·접수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앙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 신규 전문대(사업단) 모집 : 1월 공고 예정, 신청 희망 대학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추진전략,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생·교원 역량강화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신청접수)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8
-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학교 현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기술사관’
 - (홈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개요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참여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 지원조건(학생)
 - (재교육형 일반)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신청제외 대상

- ▶ (대학)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 등
-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학생) 최대 2년간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일반) : 전문학사· 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
 - 재교육형(동시채용) : 기준등록금 100% 지원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이내 지원
-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지원 및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지원규모 : 92개 학과 / 연간 참여기업 1,500개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학생) 봄학기 11~2월, 가을학기 6~8월(학과별 학사일정 상이)
 - (대학) 1월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학생)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 신청서 제출
 - (대학)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 (학생) 원서접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
 - (대학)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전문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학생) 학과 전공-업무 적합성, 학업 계획 등
 - (대학) 사업추진 전략,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생·교원 역량강화 등


- 추진절차

- (학생) 모집공고(대학) → 서류접수·면접평가(대학) → 3자협약(대학-기업-학생)
- (대학) 모집공고(신청접수)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8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계약학과’
 - (홈페이지) | 



중소기업 외국인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등)와 협업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매칭에서 비자발급 지원에 이르는 유학생 취업 원스톱 지원체계 추진

1.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개요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교육 외국인 유학생(D-2) 1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인턴십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신청제외 대상

- ▶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학위과정),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학년 유학생(D-2) 및 구직 비자 보유 졸업생(D-10) 100명 이상으로 구성
 - ② (운영내용)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실전 대비 프로그램 포함, 총 400시간 이상으로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 선정절차 : 서류·발표·현장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2. K-수출전사 아카데미

사업개요

-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고 네트워크 등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중소벤처기업 수출전문인력으로 양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 대상 수출직무 교육 인프라 (교육과정·강사·강의장 등) 및 취업매칭 네트워크 확보 기관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수출직무 희망 외국인 유학생 300명 대상으로, 학기 중 주말과정과 방학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교육
 - ② (운영내용)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무역실무 이론 → 수출·마케팅 실습 → 취업코칭」의 취업맞춤반 교육으로 수출전문인력 양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유학생 모집)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3. K-Work 플랫폼

사업개요

-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매칭 지원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D-2, D-10) 및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고, 중기부 고용추천 24개 직종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채용·인재 정보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관심 기업 및 인재를 분류·관리하고, 구인·구직 선호항목 기반의 AI 매칭 지원
 - ② 채용공고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계약 체결시 신속한 비자발급 지원을 위한 고용추천(E-7-1) 등 연계지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 : k-work.or.kr
- 추진절차(기업)



● 추진절차(외국인)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4. 비자추천(E-7-1, E-7-4)

사업개요

- (E-7-1 고용추천)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전문직종(24개)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해 E-7-1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 지원
- (E-7-4 전환추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E-7-4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추천 지원

지원대상

- E-7-1 신청자격 :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D-2, D-10) 및 GNI 80% 이상 임금 지급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 E-7-4 신청자격 : 국내 4년 이상 체류한 K-Point E74 200점 이상 득점자 및 신청 외국인 산재 가입을 완료한 국내 제조업중 중소기업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E-7-1 고용추천) 고용추천 확정명단을 중기부에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
- ② (E-7-4 전환추천) 전환추천 확정명단을 중기부에서 법무부에 통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이후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연중 상시모집

- 선정절차 : 중진공 서류검토(심의) 및 중기부 최종검증 후 선정

- 추진절차(E-7-1 고용추천)



- 추진절차(E-7-4 전환추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79



연수사업

사업개요

전국 6개 중소기업 전문연수원 운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6개 연수원 : 중소벤처기업(안산), 강원(태백), 충청(천안), 호남(광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창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구직자 등
- 지원조건 : 연수신청 연수생(기업)이 연수비 부담
 - * 고용보험 환급과정, 할인과정, 무료과정 일부 운영
- 우대사항 : 소기업, 정책연계 과정, 신규과정 등 연수비 할인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경영분야 직무역량향상연수, 정책연수, 기업 현장 맞춤형연수, 이러닝·마이크로러닝 등 연수운영
 - (직무역량향상연수) 디지털신산업, 뿌리·생산기술 연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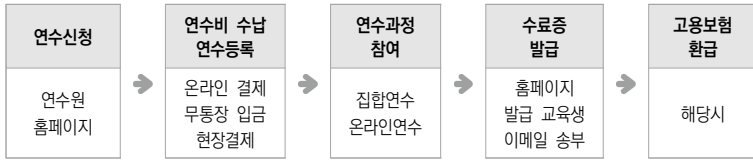
- (정책연수)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맞춤연수) 중소기업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연간 60,000명 내외
- 연수분야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오프라인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연수	디지털 신산업 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로봇, 이차전지, 기타 신산업 분야
		부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혁신, 국제인증, 품질관리	
	경영	경영일반·직무, 창업, 산업안전, 자기개발, 기업가 정신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 기업의 교육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이러닝연수	스마트제조, 부리기술, 경영 등의 직무중심 이러닝연수	
	마이크로러닝	최신 트렌드 중심 마이크로러닝(7분내외 콘텐츠)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홈페이지) <http://ssup.kosmes.or.kr>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연수비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지원절차 : 연간 연수과정 일정에 따라 교육 신청 및 참여 가능



문의처

- 연수원 연락처

구분	지역	연락처	FAX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안산	031-490-1472	031-490-1116
호남연수원	광주광역시	062-250-3000	062-250-3077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2	0505-047-4423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6	055-548-8080-1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0505-047-4097
강원연수원	강원 태백	033-550-5000	033-550-5015
온라인연수	-	031-490-1288	031-490-1118



Q&A

Q 고용보험환급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연수신청 시 훈련위탁계약서와 회사통장사본을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HRD-Net에 노동부 환급 계좌등록을 해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연수생이 가져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연수생이 특별히 가져와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연수생은 숙박에 필요한 세면도구 및 개인물품과 필기도구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천분야(공업(일부), 광업, 에너지)에 한함
(타 분야의 자격 및 선정요건 등은 병무청 및 해당 분야 추천권자(기관)에 문의 필요)

사업개요

국가산업 발전·육성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청분야(중소벤처기업부) : 공업(일부)*, 광업, 에너지
 - * 중기부 추천분야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 * 타 기관 추천분야 : 의료의약(복지부), 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농림부), 임산물가공(산림청), 식음료(식약처), 게임s/w·애니메이션·영상게임기(문화부), 수산물가공·해운·수산(해수부), 건설(국토부), 방위산업(한국방산진흥회)

신청자격(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마이스터고·특성화고 및 학생과 3자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신청자격(현역 입영대상자)

▶ 학사 이하 학위 보유자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면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예정)된 기간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

* 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일학습병행자격 보유중인 자도 편입 허용

* 정보처리 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

● 우대사항

- 국가중점정책분야(반도체, 저탄소, 소·부·장 등), 내일채움공제 및 성과 공유제 가입 기업,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 참여 기업 등

* 기타 우대사항 및 우대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지원내용

● 세부내용 :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

● 지원규모(25년 기준)

- (현역) 3,200명(업체별 배정인원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최종 결정)

- (보충역) 별도 제한없음(업체 소요대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매년 6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 시스템(www.smes.go.kr/sanhakin/))

● 제출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 증명서 등

● 평가항목 : 고용증감, 일자리 질, 혁신형 기업, 산학협약 및 인재양성 등

* 기타 평가항목 및 접수부여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 시스템 : www.smes.go.kr/sanhakin/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 1899-3001

참고사항

① 2026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
인원 신청·접수 공고
- (홈페이지)





Q&A

Q 병역지정업체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병역지정업체로 한 번 선정되면 선정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병역지정업체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기존 병역지정업체라 하더라도 근무중(채용예정)인 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부 장관에 차년도 인원배정 신청(6월)**을 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이 해당 업체에 통보(12월)한 인원배정 범위 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이상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 보충역은 예외(업체 소요대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 추천권자에게 별도 신청 불요)

Q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된 해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업체로 선정된 해에 병무청장이 해당 업체에 배정한 인원 범위 내에서 근무중(채용예정)인 입영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Q 산업기능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전문연구요원도 함께 편입할 수 있나요?

A 전문연구요원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별도 지정되어야 합니다.(전문연구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및 평가지표 등은 산업기능요원 분야와 상이)
전문연구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 관련 문의는 병무청 혹은 해당 분야 추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전문연구요원 :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현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자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 혹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등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7 장

인력유입 촉진

- 7-1 내일채움공제
- 7-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7-3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7-4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7-5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7-6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7-7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7-8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 7-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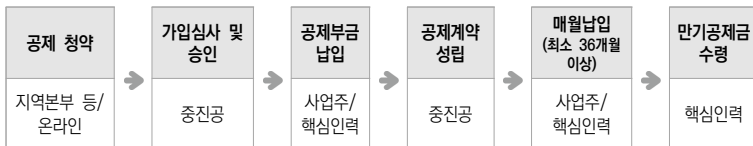
지원내용

- 가입기간 : 3년 이상
* '25.1월부터 3년형 가입가능

- 공제납입금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최소 3년 이상 1,224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의 비율로 납부
- 적립금액 : 연간 400만원 이상 적립(3년 1,224만원, 5년 2,000만원 이상)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지원
* 비용인정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법인기업) 산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일부 세액공제 적용

(재직자)
- 3년 이상 가입 후 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일반 50%, 청년 90%)
* 최대주주(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제외
** 일부 사유(휴·폐업, 법인해산 사유)의 중도해지자도 소득세 감면 적용
휴가비 지원, 건강검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복지혜택 지원

Q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기업납입금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3년 또는 5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예비)핵심인력)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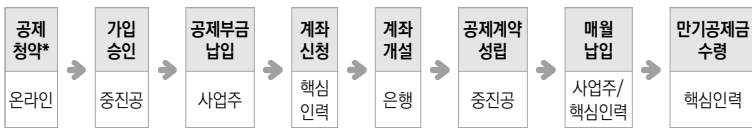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3년*, 5년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2025.09)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간 최대 2,298만원 또는 5년간 최대 3,980만원 공동적립(매월 12~60만원, 이자포함*)
「핵심인력 : 사업주 = 1 : 0.2」의 비율로 납부
- 적립금액 : 3년간 460~2,298만원, 5년간 796~3,980만원(이자포함*)
- 공제금리 : 기업납부금(변동금리 적용), 근로자 납부금(최대 4.5%*)
* 최대 4.5%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2.0%)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기존) 기업(중진공), 재직자(은행) 별도 가입창구 →
(변경) 기업, 재직자 단일 가입(중진공)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내일채움공제 대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다른 점은?

A 내일채움공제와 주오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다음과 같이 가입 요건, 가입기간, 납입비율, 적용금리 등이 다름

구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요건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직자	정규직 근로자	모든 근로자
가입기간		3년~10년	3년, 5년
납입비율		핵심인력:기업 = 1:2 이상	핵심인력:기업 = 1:0.2
적용금리		2.37% (‘25.4분기 기준)	최대 4.5% (기본금리* 2.5%+우대금리 2.0%)
월 적립금액 (기업+재직자)		월 34만~300만원	월 12만원~60만원

* '25.4분기 기준 은행별 금리
 (IBK기업은행)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간 변동
 (하나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농협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국민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Q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이나 기존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이라도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한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 중소기업 근로자((예비)핵심인력)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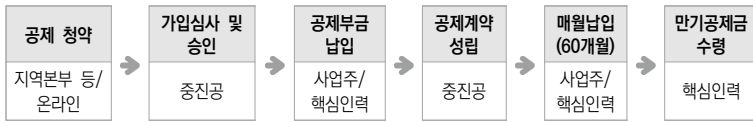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간 1,008만원 공동 적립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적립 금액 : 3년간 1,008만원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만 가입가능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용어 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과 청년근로자(신규채용자)가 2년간 공제금 적립 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이공계 등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신청자격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당해 연도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②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등)에 해당 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 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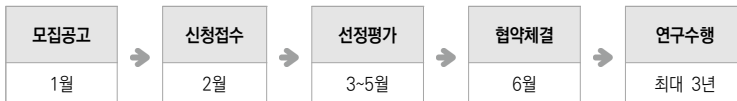
-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불가
-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 연봉 지원(최대 3년, 기업별 1명)
- 지원규모 : 총 540명 내외(신규 260명, 계속 280명)
- 지원금액 : 채용인력 기준연봉의 50%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 



Q&A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행 가능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신규 신청 가능 여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신청 불가
	신진 1회 + 고경력 1회	신청 불가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신청 가능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Q

다른 기업에서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지원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신진, 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 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 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인력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 인력(지원 연구인력)은 변경이 불가하나, 지원 연구인력의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이공계 등 고경력 연구인력의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로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②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등)에 해당 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 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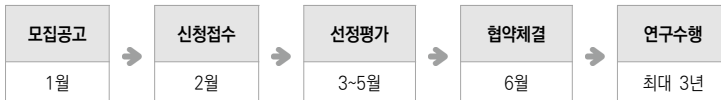
-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불가
-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연봉 지원(최대 3년, 기업별 1명)
- 지원규모 : 총 224명 내외(신규 85명, 계속 139명)
- 지원금액 : 채용인력 연봉의 50% 이내(최대 5천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 



Q&A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행 가능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신규 신청 가능 여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신청 불가
	신진 1회 + 고경력 1회	신청 불가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신청 가능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Q

다른 기업에서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지원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신진, 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 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 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인력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 인력(지원 연구인력)은 변경이 불가하나, 지원 연구인력의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R&D 우수성과 대 표기업 등 우대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 ▶ 동 파견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단, 연장지원 협약종료 이후에도 전직인력 계속 고용 기업은 재신청 가능)
- ▶ 이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파견 연구인력 연봉 지원(최대 3년, 기업별 1명)
- 지원규모 : 총 81명 이내
- 지원금액 : 파견인력 연봉의 50%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업은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서면평가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 현장평가 :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선정
 -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연 연구인력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나요?

A 공고문의 매칭시스템을 통해 지원수요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간 매칭이 진행됩니다.

☞ (인력 매칭) <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 → 연구인력 수요 기업 → 공동인증서 인증 → 지원수요서 작성 → 연구인력 매칭

Q 동 사업에 참여 중 중단하게 되는 경우, 파견지원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동 파견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기업(기업지원계약 체결)은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개요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인력) 자연·공학·의약계열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및 구직자
 - (기업) 자연·공학·의약계열 연구인력 채용수요가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소기업 구직자
- 우대사항 :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Level3 참여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 대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참여시 선정 절차 우대

신청제의 대상

-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우수 예비연구자 양성 및 채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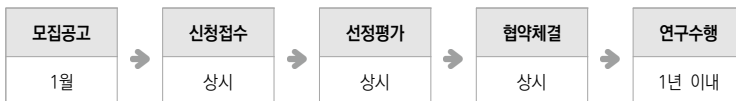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지원규모 : 총 400명 이내(4개 센터별 100명, 80개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20만원
- (Level2) 학위별 차등지급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학사 학위 취득자	2~4개월	1,300,000원/월	<기업부담금> 1) 월급여에서 인턴지원비를 제외한 금액 2) 4대보험료
석사 학위 취득자	2개월	1,600,000원/월	
박사 학위 취득자		1,900,000원/월	

- (Level3) R&D 프로젝트 지원비 : 10,000천원 ~ 12,000천원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이메일 신청
 - * 한국교통대학교, 전북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호서대학교
-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공고
- (경로)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
- * 한국교통대학교, 전북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호서대학교
- (홈페이지)



Q&A

Q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연구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현장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Q 해당 연구인력혁신센터의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한가요?

A 해당 연구인력혁신센터의 졸업(예정)자가 아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입 촉진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세제 혜택 - (추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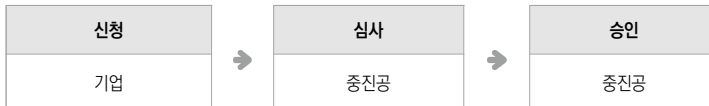
①성과급 / ②임금수준상승 / ③우리사주제도 / ④주식매수선택권 / ⑤성과보상공제 / ⑥복지기금운영 ⑦정부지정기업(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등)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일자리 평가' 가점
- 세제 혜택(단, 성과급 유형에 한함)
 -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공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산학인 홈페이지(www.smes.go.kr/sanhakin)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성과공유 유형별 증빙서류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공통)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의 감소 여부 확인
 - (선택) 성과공유유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제외 대상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지원내용

-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위한 추천(또는 확인)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에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분야별 증빙서류 등
 - * 상세 내용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 개별 공고문 확인
- 선정평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배점 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가·감점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추천(확인서의 경우, 자격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청 및 접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23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29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7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67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2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08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4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8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8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7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2		

참고사항

- 개별 모집공고는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확인



Q&A

Q 회사가 중견기업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그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중견기업 근로자 신분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공고문은 어디에 올라오나요?

A 각 지역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게시판과 중소기업인력 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제 4 부

판로 지원



제 8 장 ▶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제 9 장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10장 ▶ 마케팅, 홍보 지원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8 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8-2 직접생산확인제도
- 8-3 계약이행능력심사
-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 8-5 조합추천 수의계약
- 8-6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사업개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음

지원대상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25.1.1~'27.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 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 대상제품 지정 현황('25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품목 610개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제외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③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g.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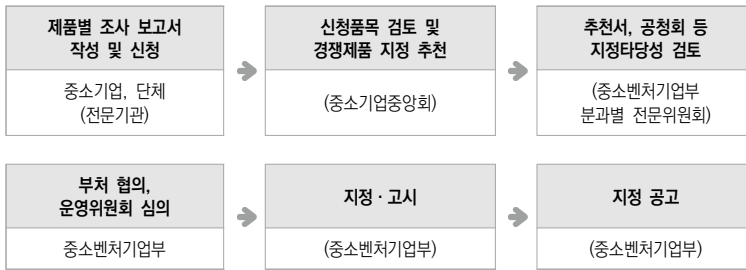
유의사항 등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제출서류

-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7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사업개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신청제외 대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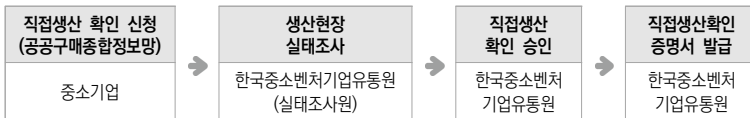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제출서류

-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 (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22) 37,561개사, ('23) 38,239개사, ('24) 41,300개사,
('25.11) 36,414개사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3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심사운영팀: 02-6678-9661~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직접생산 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수수료 수납 이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 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정한 납품이행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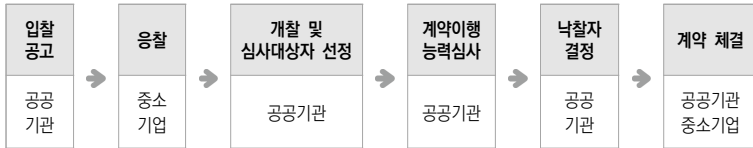
심사내용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이상 : 입찰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입찰가격 60점, 납품이행능력 40점 (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5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고시금액(2.2억원) 미만 : 입찰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신인도(+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기재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2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7년 이내) 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으로 평가

제출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4호 中 1종]
-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별지 제5호]
-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6호] 확인
 - (납품실적)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별표4]에 따른 관계기관 등이 발급하는 서류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2억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 만점(30점)을 부여합니다.

Q [신인도 평가기준] 나. 영세기업(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고시금액 미만 구매입찰의 경우, 점수를 받는지요?

A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Q [신인도 평가기준] 라. 정책지원(부처별 정책지원)의 C.혁신형 중소기업 및 D.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인정되는지요?

A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합니다.

즉, C.혁신형 중소기업 1.5점만 인정됩니다.

※ 계약이행성실도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경우,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



적격조합 확인제도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확인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자일 것(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받은 중소기업자)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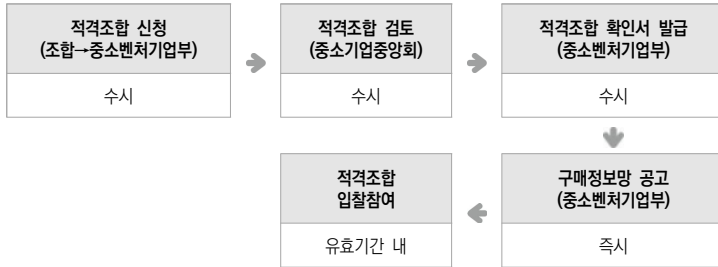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부여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2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02-2124-324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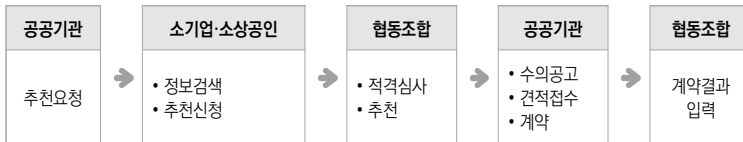


조합추천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요내용

- (구매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
- (추천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소액수의계약추천→대상제품현황에서 확인
- (추천방식) 선착순 또는 3배수 무작위 추첨 방식 중 수요기관 담당자 택1
 - * (2천만원 미만) 2개 이상 업체 추천
 - * (2천만원 이상) 5개 이상 업체 추천(비조합원사 반드시 1개 이상 추천)
- (구매방식)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상시)

문의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1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02-2124-324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영 제13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제품(신청 가능제품)을 개발한 자

신청가능제품(인증부처)

* 2025. 12월 기준

* 신청가능제품 최신 현황 확인 규정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제6호」(법제처 - 행정규칙 검색)

-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 NEP신제품인증(산업통상부)
- ▶ NET신기술인증 적용제품(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 ▶ GS(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조달청)
-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중소벤처기업부)
- ▶ 재난안전제품인증(행정안전부)
- ▶ 혁신제품(조달청 등)
- ▶ 녹색기술인증 적용 확인제품(산업통상부 등)
- ▶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산업통상부)
- ▶ 물산업 우수제품등(기후에너지환경부)
- ▶ 상생협력제품(중소벤처기업부)
 - * 공고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인 제품에 한함

지원유형

- (공공기관수요형)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 (중소기업제안형)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지원내용

- (실증비용 지원)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실증비용 사용 가능 항목 〉

지원 항목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 처리 불가 항목	증빙서류
제품 설치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참여기업 직접 설치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에 따라 비교 견적 필요)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증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KOLAS(한국인증기구) 외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재료비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판매 제품 제작 · 생산 비용	
계측장비 임차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장비 설비 구매비용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실증으로 인한 손상·파손이 아닌 경우 등	

신청·접수

- (공고) '26. 1분기 예정
-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신청
 - * 사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7, 74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 042-712-5632, 5635, 5637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g.go.kr

제 9 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9-2 성능인증제도
-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사업개요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1등급), 우수조달물품 등 13종)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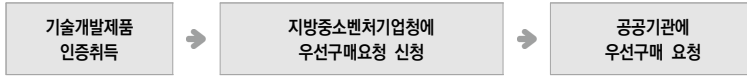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3종
-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1등급),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물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적용제품), GS,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9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처리절차



*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정보망 이용(www.smpp.go.kr)

지원규모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19) 5.35조원, ('20) 5.63조원, ('21) 6.58조원 ('22) 6.86조원, ('23) 6.95조원

문의처

-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4	울산	052-210-0012
부산	051-601-5121	강원	033-260-1672
대구·경북	053-659-2237	충북	043-230-5374
광주·전남	062-360-9155	충남	041-415-0678
경기	031-201-6936	전북	063-210-6483
인천	032-450-1134	경남	055-268-2542
대전·세종	042-865-6157	-	-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 NET (과학기술)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185 02-3460-9023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7216
NET (건설, 교통)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031-389-6485	NET(환경)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02-2284-1631
NET (보건의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02-2095-1738	NET(방재)	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성능인증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042-712-5621~5	녹색기술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4434
GS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02-860-1416	구매조건부 신기술, 민관공동 투자기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2-388-0100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02-368-8944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적합성 인증제품	국가산업융합 지원센터	031-8040-6832
우수R&D 혁신제품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025	물산업우수 기자재 지정제품	상하수도협회	02-3156-7791
혁신제품	조달청	070-4056-7664	재난안전 인증제품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11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g.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A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Q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1등급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Q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A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A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신기술 적용확인서를 받은 제품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우수조달물품

A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Q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A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Q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 성과공유과제를 통해 수요처를 지정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A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Q 녹색기술제품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성능인증제도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성능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13종
 -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제품, NET 적용제품, NEP, 특허 및 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이며 대상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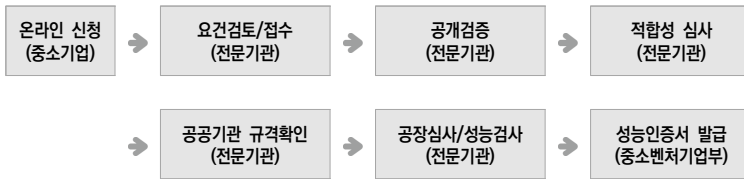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접속 - 사업공고
- 제도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 접속 - 제도신청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제출서류

- 필수 첨부서류 :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
 - * 관련 세부내용 등은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확인

처리절차



지원규모

- 발급건수 : ('22) 397건 → ('23) 317건 → ('24) 273건
 - * 성능인증 발급은 신규, 연장신청 건수를 포함 (발급년도 기준)

문의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7, 7544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 : 042-5621~5625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Q&A

Q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 성능인증은 접수일로부터 발급까지 약 3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 기간 포함)정도 소요됩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VAT를 포함하여 7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나, 창업기업(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 2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개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와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

지원대상

구분	기 업	제 품
창업 과제	중소기업자(조합제외)로 설립7년 이하 창업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일반 과제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제품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최대 25억원 이하
소액 과제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업 공공조달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지원내용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면, 제도 참여 구매기관의 제품 수요 발생 시 각종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품 구매를 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신청·접수

-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 제품 모집
- 공고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접속 - 사업공고
- 제도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 접속
제도신청 - 시범구매 - 시범구매신청

제출서류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온라인작성)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품설명서, 규격서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참여구매기관

- 560개 기관 참여 (수시모집)

〈 시범구매제도 참여 구매기관 현황('25년) 〉

(단위 : 개)

행정기관(265)				공공기관(295)					합계
국가 기관	지자체	국가 의료원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18	245	1	1	31	57	66	139	2	560

처리절차



운영실적

- ~'25년 누적 선정제품 수 : 2,177개 제품
- 구매금액 : 1.83조원 ('18년~'24년)

문의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7)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우선구매팀 : 042-712-5611~5)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제도신청-시범구매)



Q&A

Q 시범구매에 신청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뭔가요?

A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② 조달청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 ③ 특허청 우수발명품 ④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제품

Q 시범구매제품 지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A. 지원기간은 제품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인증(지정)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
-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

Q 시범구매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청 마감일로부터 제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약 2개월 ~ 2.5개월이 소요됩니다.

Q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 시, 구매기관과 100%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구매기관의 상황 또는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구매기관이 시장환경이나 조직상황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0장

마케팅, 홍보 지원

10-1 판로진출지원

10-2 MRO 납품 중소기업 지원

10-3 동행축제



판로진출지원

사업개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채널 및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등 연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온·오프라인 유통망 등에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단, 세부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지원조건 확인 필수)
- 우대사항 : 경영혁신기업, 여성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 대기업·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IT), 기타 세부 사업별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제품
- ▶ 부도/휴·폐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적합 경우 등
- ▶ 그 외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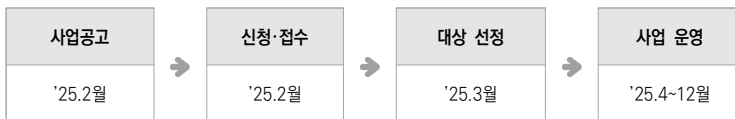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진출 지원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

-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검증 및 유통망 연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 (K-수출전략품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143.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판판대로.kr)
 - * 세부 일정 및 지원 대상·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사업신청서 등
- 선정평가 : 기본 요건 확인 → 서류 및 전문가 평가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지원필요성, 시장적합성, 상품우수성, 사업 적합성 등
 - * 평가 방법,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고 필수
- 추진절차









- *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및 추진절차는 변동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화) 044-204-7548, 7543
(이메일) arsnalish@korea.kr, steadily93@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전화) 044-204-7509, (이메일) kdw2539@korea.kr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케팅기획팀 :
(전화) 02-6678-9343, (이메일) lhdo0606@kodma.or.kr
온라인판로지원팀 :
(전화) 02-6678-9812, (이메일) sylee@kodma.or.kr
판로개척팀 :
(전화) 02-6678-9716, (이메일) thfgml97@kodma.or.kr
정책매장운영팀 :
(전화) 032-743-5184, (이메일) lks@kodma.or.kr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지원사업 안내
 - 공고명 : 2025년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fanfandaero.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 지원사업 소개 : 2025년 마케팅지원사업 온라인판로 종합지원사업
 - (경로) fanfandaero.kr > 사업공고·신청 > 유통·판로 > 온라인 판로 종합지원사업
 - (홈페이지) | 
- 지원사업 소개 : 2025년 마케팅지원사업 오프라인 기획전
 - (경로) fanfandaero.kr > 사업공고·신청 > 유통·판로 > 오프라인 기획전
 - (홈페이지) | 
- 지원사업 소개 : 2025년 마케팅지원사업 대형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 (경로) fanfandaero.kr > 사업공고·신청 > 유통·판로 > 대형 유통망 입점
 - (홈페이지) | 
- 지원사업 소개 : 마케팅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
 - (경로) fanfandaero.kr > 사업공고·신청 > 유통·판로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 (홈페이지) | 
- 지원사업 소개 : 2025년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 (경로) kodma.or.kr > 사업안내 > 마케팅지원 > K-수출전략품목
 - (홈페이지) | 



Q&A

Q 마케팅지원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A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하여 e커머스, TV·데이터홍쇼핑, 오프라인 유통망,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등 연계 및 입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용어 설명

판판대로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플랫폼으로서, 판로지원 사업 신청·유통판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 인천공항면세점, 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의 입점·홍보·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간

* 비면세매장(판판샵) : 현대백화점(판교)

* 면세매장(판판듀티프리) : 인천공항 면세점(T1, T2)

K-수출전략품목 : 한류 인기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전략품목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홍보·마케팅 등 지원



MRO 납품 중소기업 지원

사업개요

중소 소모성자재(이하 “MRO”)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육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MRO 납품 중소기업(구매대행기업 포함)
- 지원조건 : 사무용품, 공구류 등 17개 제품군 MRO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MRO 구매대행업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판로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입찰정보제공, 입점·구매상담회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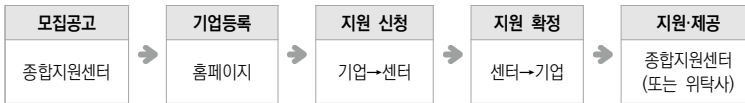
분 야	내 용
교육	● 입찰(공공조달, 주한미군 등 해외·전자입찰), 마케팅 전략(물류, 상품기획 등) 등 중소기업 취약분야별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입찰정보제공	● 조달청 입찰정보 분석(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MRO 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판로기회 확대

분 야	내 용
입찰컨설팅	• 기업특성을 고려한 입찰공고문분석 등 전문가매칭을 통해 1:1 맞춤형전략을 제시하여 취약분야 역량강화
입점·구매상담회	• 중소기업 MRO납품기업이 희망하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유통채널 및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1:1 바이어 매칭하여 공급처 발굴

- 지원규모 : 1,55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지원사업별 신청·접수 기간 상이)
- 신청방법 :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 (전화) 044-204-7937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MRO종합지원센터 : (전화) 1544-0906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Q&A

Q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 “MRO기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판판대로 홈페이지 통합회원 가입·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회원정보]-[기업정보]-[MRO 납품기업신청] 체크·선택 및 저장·신청 후 승인 완료 시 MRO기업 등록이 됩니다.

Q “MRO기업” 신청 후 승인완료시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청일 기준, 영업일 1~2일 소요됩니다.

Q 소모성자재 17개 제품군은 무엇인가요?

A 사무가구, 사무용품, 가전류, 전산용품, 소방안전용품, 운송/포장/저장, 청소/생활용품, 피복, 공구류, 측정기기/실험용품, 생산/동력/기계장비, 기계/배관/유공압, 연료/화학, 전기/조명, 철강자재, 통신/보안, 건설자재

용어 설명

소모성자재(Maintenance Repair & Operation: MRO) : 기관 운영 및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



동행축제

사업개요

- 대형유통망,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판촉 행사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통해 내수 활성화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B2C 소비재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 대기업·중견기업·대형협동조합 제품, 해외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및 유통 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등

지원내용

- 동행축제 기간* 온·오프라인 판촉(기획전 등) 및 대외 홍보 지원
 - * 상반기, 하반기 진행 예정

신청·접수

- 판판대로(판판대로.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제출 서류, 추진 일정 등 세부 안내는 판판대로 내 공고 예정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상세기술서(사업 공고를 통해 별도 서식 공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청 제품의 온라인 상세페이지

처리절차

- 동행축제 개최 1~2개월 전 판판대로(판판대로.kr)를 통해 공고 예정


지원규모

- 연초 300개사 내외
 - * '25년의 경우 회차별 100~300개사 선정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축진과 : 044-204-7291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02-6678-9885, 9887, 9889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판판대로(판판대로.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5월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지난공고 보기 > '대한민국 동행축제' 검색
 - (홈페이지) | 

제 5 부



수출 지원



제 11 장 ▶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1 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 11-1 수출바우처
- 11-2 수출컨소시엄
- 11-3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11-4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11-5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11-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11-7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수출바우처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공고 시기	'24.12.30	'25.12.15
한도 확대	한도확대(3종) 운영 - 튼튼내수 50% - 수출국다변화 20% - 수출고성장 50%	한도확대(3종→5종) - 관세대응 패키지 50% - 물류 1,500만원 - 튼튼내수 50% - 수출국다변화 20% - 수출고성장 50%
물류 지원	국제운송 지원한도 '25년 한시 상향 (3→6천만원)	한도상향(3→6천만원) 유지 및 서비스 확대* * 풀필먼트, 무상샘플 운송료 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트랙		국고지원 한도 (백만원)	국고 보조율	
내수	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 미만	30	50~70%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만달러 미만	30	* '24년 매출액 규모 따라 차등 적용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45	매출액	보조율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70	100억원 미만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10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 우대사항

- ① (관세대응) 메뉴판내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다만, 추가된 한도는 관세대응 패키지로만 사용 가능)
- ② (물류지원) 메뉴판 내 ‘국제운송’ 활용하는 경우 총운송비 기준 최대 15백만원 한도내에서 70%(최대 1,050만원)를 정부 지원
- ③ (튼튼한 내수기업)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 한도 50% 확대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능인증기업, TIPS성공졸업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④ (수출국 다변화) '25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5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4년 대비 '25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

- ⑤ (수출 고성장)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 '25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우대항목 중 ③, ④, ⑤의 경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

※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3.1.일 기준)
- ▶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및 감점
 - 대상 : 최근 2년('24년, '25년)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신청기업
- ▶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불가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26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단, 경영 독립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지원영역	지 원 항 목
관세대응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해결 등 관세 대응 관련 서비스
디자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물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
홍보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조사/일반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 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지원영역	지 원 항 목
통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해외규격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해외 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지재권/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AEO인증 획득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수출·무역 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등
홍보/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 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브랜드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의뢰기기 제품설명회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국제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제외)
무역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수출위험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 지원규모 : 4,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1,50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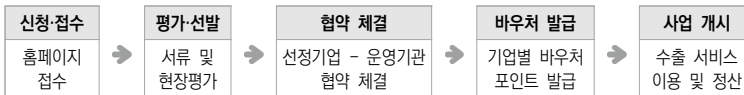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 예정 시기

구 분	공고시기 / 신청기간
1차 공고 (일반)	(공고) '25.12.15 / (신청) '25.12.17~'26.1.9~
2차 공고 (일반)	(공고) '26.4월 / (신청) '26.4월

*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 등은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
 - (서면 평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서류평가 진행을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12
- 중소기업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 055-751-9721~2
- 수출바우처 콜센터 :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

- (경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홈페이지)



②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개정(2차)

- (경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커뮤니티 - 정산가이드

- (홈페이지)



Q&A

Q

수출바우처 선정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홍보/광고, 컨설팅 등 15개 카테고리*별 8,000여개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세대응 패키지,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홍보동영상, 조사/일반 컨설팅, 브랜드개발·관리, 법무·회계 컨설팅, 서류대행/현지등록,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총 15개 메뉴판

수출바우처사업은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2,000여개의 전문 수행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의 경우 '우수 수출기업 지정 제도'로서, 선정시 2년의 지정기간 동안 금융·보증기관의 금리·한도 우대,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정 첫해에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수출바우처 사업에 평가 없이 자동 선정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수출컨소시엄

사업개요

중소기업 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업종별 협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주관단체가 되어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별 참여 중소기업 모집·선정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약 80개 컨소시엄	약 100개 컨소시엄
지원내용	(신규)	현지 경제단체 등 협업형 프로그램 도입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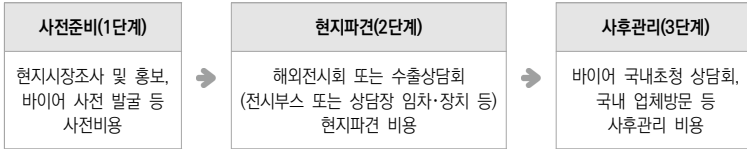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주관단체와 참여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참여기업 지원조건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K-수출전략 품목 지정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 관계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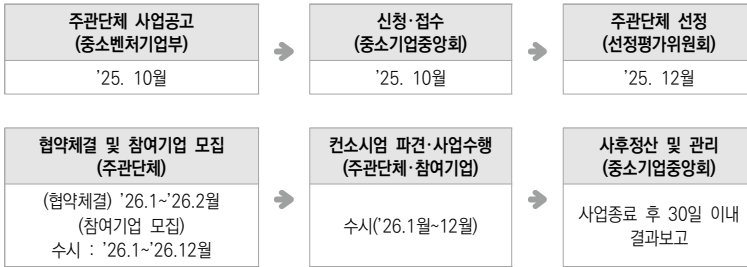


- 지원규모 : 컨소시엄 100여개 파견(약 1,500개사)
- 지원금액 : 198.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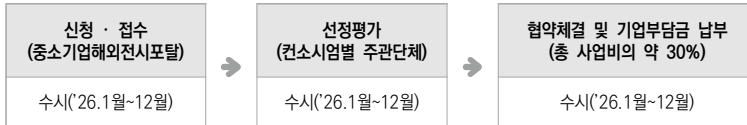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주관단체) '25.10월 / (참여기업) '26년 연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에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주관단체 사업 모집”
 -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또는 수출컨소시엄(상담회)”

- 제출서류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 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등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수출실적 등 수출역량,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수출국 다변화 노력 등
- 전체 추진절차



- 참여기업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전화) 044-204-7504, (이메일) hr0218@korea.kr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전화) 02-2124-3295, (이메일) jhyeon1224@k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2026년 사업공고

- 공고명 : '26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공지 및 소식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공고명 : '26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 (홈페이지) 



Q&A

Q (주관단체) 해당 전시회사업에 선정되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추가로 받아도 될까요?

A 주관단체로 선정되셨을 경우, 해당 전시회는 이미 국고지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참여기업) 숙박 및 항공비 등 출장 여비도 지원해주시나요?

A 아닙니다. 부스 임차료, 물품 운송료, 현지 마케팅 등 전시회 사업에 직접적인 부분 대상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항공료 및 국외여비는 지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해외판매 및 물류 등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각 내역사업별 요건에 따름
- 우대사항 :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 등(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산업 등) 영위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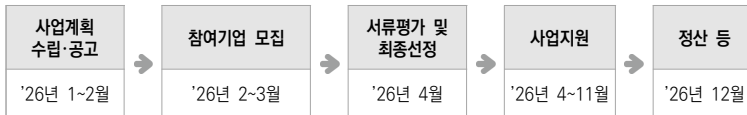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1월 내 업데이트 예정
- 지원규모 : 1월 내 업데이트 예정
- 지원금액 : 1월 내 업데이트 예정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2월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평가 → 2차 최종 선정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상품의 시장경쟁력, 수출준비도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고객센터(1588-623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글로벌쇼핑몰활용 판매사업, 자사물 활용 판매, 공동물류지원 사업
 - (경로)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지원 사업공고
 - (홈페이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개요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규제 대응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우대사항 : 지방소재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트랙합산 동시 신청 인증 건수는 1회당 신청가능한 최대 건수를 넘을 수 없음)
-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
기간 내 1회에 한함)

- ▶ 직전 5개년('20년 ~ '24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70% ~ 50%)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지원 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최대 1억원	70%	60%	50%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존재

- 지원규모 : 약 630개사
- 지원금액 : 17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5월, 8월 (예정, 변경가능)
- 신청방법 :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smes.go.kr/globalcert/>) → 기업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제출서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 시험·인증기관 견적서 등(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누리집 참조)

- 선정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인증획득 필요성,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노력 등(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누리집 참조)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부	▶ 누리집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관리기관	▶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업체 평가	관리기관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참여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 등 실시
중간보고(필요시)	참여기업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등 보고
완료보고	참여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관리기관	▶ 인증사실확인 ▶ 정부지원금 정산 지급

문의처

- 전화상담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전화) 1522-0141, (이메일) mail@ktr.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홈페이지)



Q&A

Q 사업공고일 이전에 진행된 시험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예, 공고일 이전부터 진행된 시험이라도, 인증서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험으로 인증이 같음되는 DoC (자기적합선언)의 경우 최종 시험성적서 발행일 기준)

Q 인증획득 후 매년 발생하는 유지비용(사후심사 비용 등)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인증획득 후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후심사 및 시험비용 등 유지비용은 사업은 도입 취지와 달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Q 공고에 포함된 지원대상 인증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 공고된 지원대상 인증이 아니더라도, '비 공고 규격'으로 신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시 인증 검색에서 '비 공고 규격'으로 선택하고, '비 공고 규격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리기관에 제출하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인증의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용어 설명

패스트트랙 : 상시접수, 간이평가 등을 통해 평가·선정 기간 단축 및 사업 참여 편의성을 대폭 제고한 트랙

DoC(자기적합선언)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 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인증제도상 제3자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사업개요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 기업'으로 선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
-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중기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0여개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우대 서비스를 제공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전년동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

구분	지 원 대 상
유망 단계	전년도 수출액 '10~100만 달러 미만'
성장 단계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 달러 미만'
강소 단계	전년도 수출액 '500~1,000만 달러 미만'
강소+단계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 수출액에는 직접수출, 간접수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등 서비스 수출액 모두를 포함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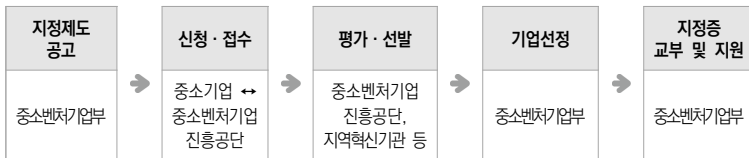
- ▶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휴·폐업중인 업체
-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바우처사업 평가 면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수출입 상담 및 교육, 해외기업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지원 등
- (R&D 트랙 우대지원)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기정원) 트랙 지원시 가점 부여(강소·강소*)
- (지역 자유프로그램 지원) 소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제품 제작, 전시회 지원 등 지역 자유프로그램 지원(강소·강소*)
- 지원규모 : 수출 유망중소기업 400여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 12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26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시 신청시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수출이행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면 평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서류평가 진행을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발표 평가) 강소·강소+트랙 한정 지자체·지역혁신기관 발표평가 진행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12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 055-751-9721~2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거점, 유통망 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
- 주관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한류 마케팅 및 현지 유통망 입점, 해외법인 설립, 해외실증(PoC) 등을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협업형 과제 도입	(신규)	• 업종별(유통·플랫폼·방송) 전문성 결합 과제 도입
중장기 과제 지원 강화	• 프로젝트형 과제 도입·운영	• 프로젝트당 3년간 최대 10억원 → 15억원* 지원 확대 * 진출국이 미국인 경우 2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 관련 법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 등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

- * 선도기업 : 해당 산업의 리더 및 보유 인프라,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

주관기업 제한 요건

-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참여 제한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 보조금 관련 법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 등
- * 신청자격의 부합 여부는 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내용

- 소비재 : 글로벌 한류행사 및 한류콘텐츠, 유통 대기업 보유 현지 온·오프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산업재 : 주관기업의 현지법인 및 영업망, 기술력과 연계 中企 해외 법인 설립, 컨설팅, 해외실증(PoC) 등 현지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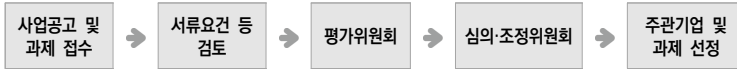
〈 사업 유형별 지원 세부내용 〉

사업유형	세	부	내	용
소비재	• (K컨텐츠) 글로벌 문화행사, 콘텐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유통망) 현지방송 채널 및 온라인커머스, 유통매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 (주관기업 협업형) 유통·플랫폼·방송사 등 업종별 주관기업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			
산업재	• (판로개척) 주관기업의 현지 영업망, 해외 브랜드 파워, 기술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기술 수출 마케팅 지원			
	• (현지화/프로젝트)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연계 중소기업 현지주주 교섭 및 제품 현지화 개발·시범 설치, 해외 대규모 설비 투자 관련 간접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1,1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155억원 내외

신청·접수


- 공고시기(예정) : '25.12월~1월, 6월
- 신청방법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상생누리-대·중소기업 동반진출-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
- 선정평가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주관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 내 선도기업)의 운영계획 타당성, 운영능력, 지원규모 및 효과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4, 750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54, 876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1차)
 - (경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재단소식 - 공지사항/사업공고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Q&A

Q 본 사업을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각 산업을 리딩하여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산업 선도기업일 경우에만 주관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원 혜택을 받는 참여 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중소기업은 주관기업 선정 후 별도로 과제별 참여 중소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지원 활동이 동반 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됩니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현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운영현황	14개국 21개소	14개국 22개소(칭다오 전환배치 완료)
제출서류	GBC 입주 신청을 위해 22종 서류제출 필요	행정정보공공이용망 활용으로 GBC 입주 신청에 필요한 기업 제출 서류를 22종에서 14종으로 간소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 및 정착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우대사항 : 미 관세조치 피해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지정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지정기업, 농산업분야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TIPS, 예비·아기 유니콘, CTS 선정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 ▶ 후·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등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현지 진출 및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현지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 임차료 일부 지원 (1차년도 80%, 2차년도 50%) 지원
 - 사무공간(5~55㎡), 회의실, 사무용 집기, 인터넷, 전화 등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지원, 현지 파견직원의 행정지원
- 지원규모 : 14개국 22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 * 총 279개 독립실 : (북미)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유럽)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아시아)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알마티, 자카르타 (중국)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충칭, 선전, (중남미) 멕시코, 산티아고, (중동) 두바이, 리야드
- 지원금액 : 177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독립실)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공유오피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온라인 예약시스템 (www.gbc.kosmes.or.kr)

- 제출서류 : 입주활동계획서, 파견자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기업/개인) 등
 - *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 이용망 활용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 선정평가 : (1단계) 현장실사 → (2단계) 해외시장성 평가 → (3단계) 심의·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 창출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전화) 044-204-7513, (이메일) jhjang3@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전화) 055-751-9685, 9675
(이메일) wis2021@kosmes.or.kr, yhh@kosme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Q&A

Q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공유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상담실)은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독립실 입주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 기간은 기본 1년이며, 1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여 3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G-SPACE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유오피스 공간활용률 및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이용예약이 가능토록 구축한 예약시스템(모바일, 웹 : 인터넷 창에서 주소 입력 - gbc.kosmes.or.kr)

제 6 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탄소중립 지원



제 12 장 ▶ 여성기업 지원

제 13 장 ▶ 장애인기업 육성

제 14 장 ▶ 지역기업 지원

제 15 장 ▶ 탄소중립 지원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2 장

여성기업 지원

- 12-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12-2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 12-3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12-6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 운영
- 12-7 여성기업 경영애로 해소
- 12-8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12-9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12-10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12-11 펌테크 산업 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초기(예비) 여성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 공간, 커뮤니티 공간, 분야별 전문 상담(컨설팅), 창업 정보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초기 여성기업
- 지원조건 :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입주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한 자
- 우대사항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및 기술 창업 분야 등 우대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공고일 기준 타 기관에 공간(입주) 지원을 받는 기업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이 불가능한 기업
- ▶ 그 밖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여성기업육성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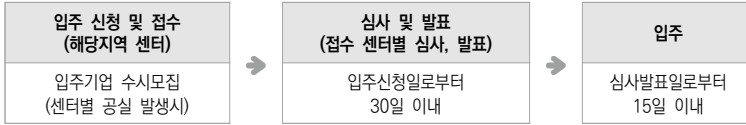
지원내용

- 여성창업 보육 공간
 - 개별시설 : 창업보육실(입주일로부터 1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 * 입주공간 면적은 센터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1실당 30㎡ 규모
 - 공동시설 : 코워킹스페이스, 여성 전용 휴게실, 수유 시설 공간, 공동 사무기기, 제품 촬영 스튜디오, 화상 회의실 등
 - * 지역센터별로 공동시설 내용은 다를 수 있음
- 여성창업 분야별 전문상담(컨설팅)
 - 경영, 인사·노무,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여성창업 정보
 -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 여성기업(인), 창업지원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연계
- 우수 입주 및 졸업기업 선발 및 시상(대상 등 7개 기업)
- 지원규모 : 전국 18개 센터, 230개실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여성기업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 역량,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등 종합적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화) 044-204-7453, 7458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02-369-0993, 0920
(이메일) leetk@wbiz.or.kr, yhkim@w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지역센터 연락처 〉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부	(02) 369-0900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성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001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42-5192	(42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제)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광주	(062) 527-1612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3호	
인천	(032) 822-9622	(21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5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20,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	
충북	(043) 236-6561	(2835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	
전북	(063) 272-9973	(549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94-9608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차룡로48번길 44, 16층 1601호-16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세종충남	(041) 569-0572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4층(한양에드가1차)	
경기북부	(031) 868-8316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경북	(054) 476-3999	(3937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킴플렉스 2동	101동(공단동)



Q&A

Q 입주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보증금은 약 100만원~150만원이며 임대료(관리비 포함)는 센터별로 사무실 전용면적에 책정된 3.3㎡당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10,000원~35,000원 상이

Q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모집 대상에 예비여성창업자가 포함되어, 입주신청 혹은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고 이후 여성기업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Q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간 친화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수유시설 등 여성 기업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사업개요

우수 여성창업자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①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여성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②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분야	예비창업/일반/기술창업	팜테크/패션뷰티/바이오·헬스/AI 등 여성친화산업 우대선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여성창업경진대회) 예비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 (단,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미만)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

신청제의 대상

(창업경진대회)

- ▶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 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투자유치 30억 이상을 받은 자(기업)

-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과거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기업)
-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을 영위 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을 영위하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여성창업경진대회)

- 교육 및 멘토링 :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 시상 : 수상자 약 40팀(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상금 2,000만원)
- 후속지원 :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 자격 부여, 사업화 자금 (총 1.8억원) 투자유치, 언론홍보, 네트워킹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교육 : 수출 우수사례 및 수출전략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전교육
- 컨설팅 및 글로벌 홍보지원 : 해외 진출 역량진단 전문가 컨설팅, 참여기업 영문 홍보 책자 제작 등 홍보 지원

- 해외시장 개척 : 해외시장 정보 제공 지원, 전시회 참여기업 부스 설치 및 참가비 지원
- 지원규모 : 교육 및 컨설팅, 글로벌 홍보 지원(20팀), 해외 시장 개척(10팀)
- 지원금액 : 컨설팅 및 글로벌 홍보(1억원), 해외시장 개척(1억원)
* 지원규모 변경 가능

신청·접수

(창업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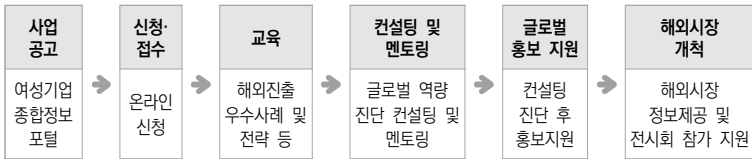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참가자 서약서 각 1부
- 선정절차 : 3단계(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 주요 내용 :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재무계획, 팀 소개 등
- 추진절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참가자 서약서 각 1부
- 선정절차 : 교육, 컨설팅 등을 받은 여성기업 중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선순위로 선정
- 선정 주요 내용 : 아이템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참여 전시회 적합성, 해외 전시회 참여 준비도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화) 044-204-7453, 7458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02-369-0943, (이메일) kangkh@wbiz.or.kr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부	(02) 369-0943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001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42-5192	(42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광주	(062) 527-1612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전 테크노월드 2차 C동 223호		
인천	(032) 822-9622	(21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5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20,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충북	(043) 236-6561	(2835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
전북	(063) 272-9973	(549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94-9608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차룡로48번길 44, 16층 1601호-16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
세종충남	(041) 569-0572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4층(한양에드가1차)
경기북부	(031) 868-8316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경북	(054) 476-3999	(3937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동(공단동)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사업

사업개요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MD상담회, 홈쇼핑입점, SNS광고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프로그램) MD 상담회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	(프로그램) MD 상담회 (지원규모) 360개사 내외(예정)
	(프로그램) SNS광고영상 제작비 지원 (지원규모) 20개사	(프로그램) SNS광고영상 제작 지원 (지원규모) 30개사(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상품을 보유한 여성기업
- 지원조건 : 대표자가 여성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전년도('25년) 교육·상담회 수료 기업 우선 선정

신청제외 대상

- ▶ 자체 브랜드 없이 유통만 하는 기업(수입제품, 총판 등)
- ▶ 남성이 대표인 기업(공동대표 가능)
- ▶ 직전년도 수혜기업

지원내용

- 맞춤형 MD 상담회
 - 국내 대형유통사 MD들과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유통사 입점 절차, 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전략 제시, 맞춤형 판매 컨설팅 등 지원
- 지원규모 : 360개사(90개사, 연 4회)
- TV홈쇼핑 입점
 - 공영홈쇼핑 입점 관련 컨설팅 및 인서트 영상, 방송 수수료 지원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금액 : 1,000만원(국고), 기업자부담 500만원 / 1회 / 판매 수수료 8% 적용
- SNS광고 영상 제작 지원
 - SNS를 통한 제품, 회사의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
- 지원규모 : 30개사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10월
-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서 제출
 -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 정보포털(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여성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성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중 택1)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화) 044-204-7453, 745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화) 02-369-0923, (이메일) tvhome@w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Q&A

Q

해외 제품을 국내 총판으로 유통하는 회사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여성기업의 자체 브랜드 보유일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Q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여성이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므로, 여성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사본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어 설명

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www.smpp.go.kr에서 신청가능

TV홈쇼핑임점 : 공영홈쇼핑 방송 1회(50분)를 지원하며 방송판매수수료 8% 적용하는 판로지원 사업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사업개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발급 불가 기업

- ▶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지원내용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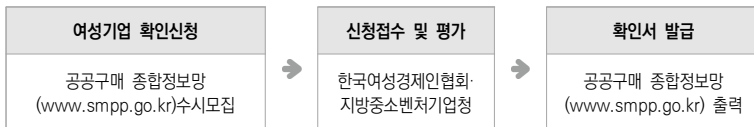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 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 제출서류 :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여부에 따라 다름
 - 상법상 회사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내역사실증명원(공동대표인 경우)
 - 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 처리절차



문의처

- 여성기업확인서 콜센터 : 02-2038-8953
- 중소기업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044-204-7453, 745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 : 02-369-0932 / 0971
- 지역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기관(여성경제인협회 전국지회)

지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회	(02) 369-0932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493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56-0006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6028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1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전 테크노월드 2차 C동 228호
인천	(032) 260-3602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1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돌질로 20, 3층
강원	(033) 233-550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2	16393)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충북	(043) 231-7807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0	51391)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릉로48번길 44 1601호
제주	(064) 726-6008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세종충남	(041) 569-0570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1-2612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한양애드가 4층
경기북부	(031) 868-8313	11473)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경북	(054) 475-4563	39370)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호
세종	(044) 866-0446	30033)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프라자 604호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현장실사 후,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년중 상시 무료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우리 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종합정보망에서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에서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 연락 하면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여성기업 확인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법에 따른 판로, 금융, 인력 등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또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개요

여성기업 공공입찰 실무교육 실시 및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지원, 여성기업 홍보를 위한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제품등록 및 전자홍보책자를 통한 여성기업 홍보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지원규모 :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 입찰실무교육 실시로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 * 입찰 절차, 계약방법, 투찰금액 산정, 적격심사 등 입찰관련 교육
-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를 별도로 구축한 사이트(kwbiz.bidcp.net)를 통해 사업분야에 맞게 입찰정보 제공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wow.wbiz.or.kr)에 제품등록 및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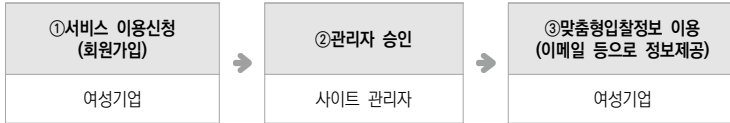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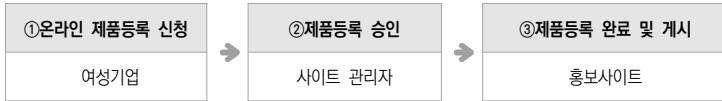
- 입찰 실무교육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 사이트 입찰 실무교육 공고 참고



-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 : kwbiz.bidcp.net 회원가입 후 이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 wow.wbiz.or.kr 일반회원 가입 후 이용



● 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문의처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044-204-7453, 745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097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는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 중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을 우선 구매해야합니다.

Q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 「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wow.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이트는 어떻게 이용하는건가요?

A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사이트 (wow.wbiz.or.kr)는 여성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업체 중 제조, 용역업체는 누구나 등록 가능합니다. (도소매 업종 제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업체의 물품을 등록가능하며 공공기관이 구매희망하는 내용을 견적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칭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 운영

사업개요

여성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채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여성기업의 구인정보 등록부터 일자리 정책 연계·상담·교육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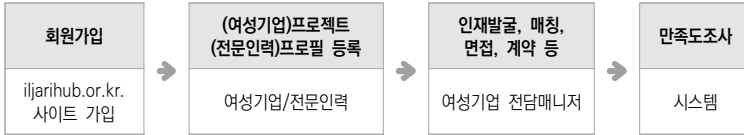
- (구인기업) 여성기업
- (지원인력) 디자인·정보통신·마케팅 등 전문가·개인·프리랜서 고경력자 전문인력 및 경력단절여성 등 단순 노무인력 지원

* 지원범위 : 남녀 모두 가능

지원내용

- 여성기업 프로젝트, 전문인력 매칭(여성기업 전담 매니저의 1:1 관리)
- 좋은 일자리 창출 여성기업 구인공고 홍보 지원
- 업무용S/W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및 안전 결제 시스템
-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지원제도 연계(고용지원금·교육·창업·자금)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ahub.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구인기업)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등록
 - (지원인력)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에서 프로필 등록 후 지원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화) 044-204-7453, 7458
- 전화 상담은 02-369-0963,
이메일 문의는 iljarahub@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www.iljarahub.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 (홈페이지)





여성기업 경영애로 해소

사업개요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전문위원과 선배 여성 CEO 멘토링단에서 수시 상담하여 문제 해결

지원대상

- 예비 여성창업자 및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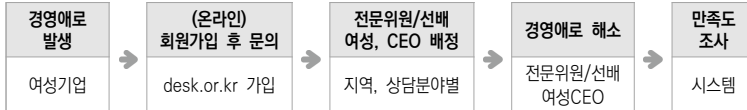
지원내용

- 전국 6개 권역센터에 배치된 전문가 또는 선배여성CEO를 통해 온·오프라인(유선, 현장 방문, 화상 온라인 등) 컨설팅 및 경영애로 상담
- 상담분야

구 분	내 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및 동향, 지식재산권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수출입

신청·접수

- (온라인)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단 홈페이지(www.desk.or.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전화 02-369-0948
- 추진절차



지원규모

- 전국 6개 권역(서울/경기/인천/경상/호남/충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도과 : (전화) 044-204-7453, 7458
- 전화 상담은 02-369-0948,
이메일 문의는 kmkim@wbiz.or.kr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단(www.desk.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권역별 연락처

지역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부	(02) 369-0948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493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56-0006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대전	(042) 526-2861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8호	
인천	(032) 260-3602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1층	
경기	(031) 211-0292	16393)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참고사항

- 경영애로지원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사업개요

전국 권역별 여성CEO 대상 기업별 맞춤형 특화 교육 지원 및 여성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개최 지원 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교육(8회) - 권역별 교육(6회) - 오찬포럼 및 네트워킹 데이(2회) • 온라인 콘텐츠 제작(15편, 유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교육 확대 및 맞춤형 특화 교육 제공 - 기업 맞춤형 특화 교육(협회, 5개 과정) - 전국 권역별 교육(8회) - 네트워킹 데이(1회)

지원대상

- 여성CEO 및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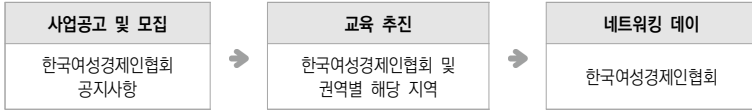
지원내용

- 교육 및 네트워킹 데이 행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wbiz.or.kr) '공지사항' 참고 ('26.3~)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추진절차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화) 02-369-0938, (이메일) today@w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Q&A

Q

수강료가 있나요?

A

오프라인 교육은 기본 무료 지원하나, 일부 교육 또는 오프라인 행사(네트워킹 데이) 참여 시에는 소정의 참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권역별 커뮤니티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를 주축으로 지역별 커뮤니티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네트워킹데이는 권역별 교육에 참여한 사람만 참가 가능한가요?

A

협회 및 권역별 교육에 참여하신 여성CEO(여성임원 등 포함), 여성경제인 간 교류/협력을 원하시는 여성CEO(여성임원 포함)라면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개요

전국 고교 및 대학 여학생 대상으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멘토링, IP코칭 및 출원 지원을 통해 미래 여성경제인, 여성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전국 여자고등학교 및 여자대학교 재학생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중 여학생
지원규모	1,200명(30개교 선정)	800명(개별/팀 신청)
운영방식	프로그램별 연 1회 운영	프로그램 연 2회 운영
지원내용	여성CEO특강, 여성기업 현장탐방, 실전 창업 멘토링,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탐방, 통합 워크숍(행사)	실전 창업 멘토링, IP코칭 및 IP출원 지원, 네트워킹 페스타(행사)

지원대상

-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중 여학생
 -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실전 창업 도전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실전 창업 멘토링, 선행기술조사 및 IP코칭, 출원, 네트워킹 페스타 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wbiz.or.kr) '공지사항' 참고(26.3~)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중
-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wbiz.or.kr) '공지사항' 확인 및 신청
 - * 신청 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기술서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화) 02-369-0925, (이메일) today@w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Q&A

Q 팀 신청 기준이 있나요? (인원, 팀원 중 남학생 포함 등)

A 팀 대표 포함 2~5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당 1개 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원에 남학생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팀 대표가 여성이고, 팀원 과반이 여성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5년도 참여학생이 '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학생이라면 가능합니다.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사업개요

전국 여성CEO들이 한자리에서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여성 경영인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전국 여성CEO 및 여성임원

지원내용

- 전문가 초청강연, 여성기업 경영 우수사례 공유, 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문화체험 등

신청·접수

- '26. 하반기,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해 신청 가능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044-204-7453, 745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0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kwbiz.or.kr)



펩테크 산업 육성

사업개요

펩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펩테크 기업의 사업화지원, 투자 연계, 전시회 참여, 네트워킹, 연구조사 및 인식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펩테크 :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을 위한 기술·상품·서비스로 여성의 임신·출산·건강관리 등의 기술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의료 기술 등을 기반으로 여성 건강 관련 제품·서비스·플랫폼을 개발·제공하는 펩테크 분야 종사 기업
- 우대사항 : 여성기업,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지원내용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고도화, 인증·실증, 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 준비 등 사업화 지원
투자연계 지원	국내·외 주요 IR 행사 참가 지원을 통해 IR 피칭 등 투자유치 기회 제공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펩테크 관련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한 기업 홍보 및 투자유치, 판로확대 발판 마련
네트워킹	펩테크 관련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동향·정책·투자 환경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실태조사 및 인식 제고	펩테크 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DB 구축, 대국민 홍보를 통한 펩테크 산업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kwbiz.or.kr) ‘공지사항’ 참고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전화) 044-204-7453, 7458, (이메일) doedali@korea.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화) 02-369-0921, (이메일) hskim@w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용어 설명

펌테크 :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을 위한 기술·상품·서비스로 여성의 임신·출산·건강관리 등의 기술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3 장

장애인기업 육성

- 1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13-2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13-3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 13-4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 13-5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13-6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13-7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13-8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 13-9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13-10 MAS 컨설팅 및 등록
- 13-11 업무지원인 서비스
- 13-12 전국장애경제인대회
- 13-13 공공구매제도 운영
- 13-14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개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기창업자,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전문가와의 1:1 컨설팅, 오프라인 실무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컨설팅, 인턴캠프 등	온라인교육, 컨설팅, 아카데미 등
신청·접수	인턴캠프 관련 신청·접수 내용 추가	아카데미 관련 신청·접수 내용 추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기창업자,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 지원조건 : 사업공고 전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 및 업종을 전환하려는 재기창업자,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온라인 창업교육(창업-NET), 1:1 창업 컨설팅, 오프라인 실무교육(창업 아카데미) 지원

- (온라인교육) 장애인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창업-NET)을 통한 창업 기초, 역량강화, 재기, 협동조합, 시각장애인 창업, AI 교육 및 유관기관 강의 콘텐츠 제공
- (컨설팅) 창업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1:1 대면 상담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업자등록 이후까지의 심층 솔루션 제공
- (아카데미)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중장년, 시니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실무교육을 진행하여 창업 트렌드 파악 및 역량 강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1,930명(온라인 1,510명, 컨설팅 360명, 아카데미 60명)
- 지원금액 : (맞춤형 창업교육) 5.24억원, (기업가역량강화센터) 10억(신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온라인) 연중 수시, (컨설팅) 2월, (아카데미) 8월
- 신청방법 : 창업-NET(<https://start.debc.or.kr/main.d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절차 : 필수 제출 서류 누락·미비 여부 확인을 통한 선착순 모집
- 추진절차 : 창업-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교육 및 컨설팅 → 수료증 발급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창업 컨설팅)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② 기타사항

- 제목 :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설명자료
 - (경로) 창업-NET > 공고 > 자료실

- (홈페이지)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지원조건 : '26.1.1.(목)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우대사항 : 중증, 여성, 저소득, 청년 등에 해당될 경우 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매장 인테리어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 소요비용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집기구입비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업지원비용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한도 300만원)

- 지원규모 : 총 65개사(예정)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상반기) 2월~3월, (하반기) 5월~6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전화) 02-2181-6534, (이메일) changup@debc.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상반기 대상자 모집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창업사업화)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사업개요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창업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7년 이내에 창업(개인, 법인)한 장애인
- 우대사항 : 중증/저소득/청년/여성장애인, 아이템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대표자, 센터 주관의 창업교육 수료생 등

신청제외 대상

- ▶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또는 동일 아이템
- ▶ 타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최대 1,000만원) 지급
- 지원규모 : 총 11건(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장려상6), 예정
- 지원금액 : 총 3,200만원(대상 1,000만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100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이메일)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참가자 문제의식과 창의성, 아이템 필요성과 사업전략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전화) 02-2181-6534, (이메일) changup@debc.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경진대회)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사업개요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공동창업을 위해 창업 이론 및 기술교육,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기반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예산	24억(국비 12억, 지방비 12억)	22.5억(국비 12억, 지방비 10.5억)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
- 지원조건 : 15개 장애 유형 중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발달장애인 및 가족 창업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실습(1년), 최대 2년간 창업 활동 지원(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활용)
- 지원규모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7개소 운영
(1개소당 평균 20팀 교육)
- 지원금액 : 22.5억원(국비 12억, 지방비 10.5억)

신청·접수

- 공고시기 : 연중 수시(결원 발생 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각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경북 가치만드소	경상북도 안동시 동흥2길 20	054-900-1173
광주 가치만드소	광주 광산구 고봉로126-15	062-511-8330
제주 가치만드소	제주시 아라일동 368-76	064-749-8234
충남 가치만드소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747	041-960-1144
경남 가치만드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819-3	055-763-3556
아산 가치만드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58-15	041-911-6446
익산 가치만드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24-4	063-901-0060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아산 가치만드소 밀착형 창업교육 교육생 모집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가치만드소)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개요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부스임차료, 홍보비 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신청제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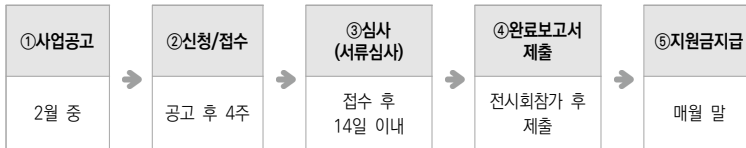
- ▶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
- ▶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직접지원, 간접지원)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 참가불가
- ▶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
- 지원 세부내용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 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전시회)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 



Q&A

Q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A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는 지원불가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 학술세미나)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사업개요

수출 물류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해외 유망 전시회 한국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기반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수출물류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IR 등 지원	해외 유망 전시회 한국관 지원 신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지원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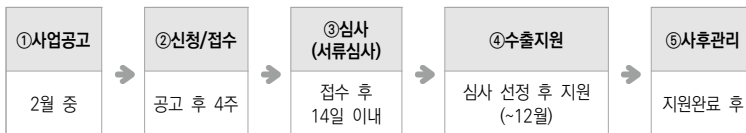
- ▶ 휴·폐업중인 기업
- ▶ 지원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 지원기간 중 지원업체의 비협조 또는 사업포기 시 향후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00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 시장개척단파견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바이어 발굴 및 검증 후 현지 파견을 진행하여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 제공
 - 수출마케팅 : 해외 온라인 마케팅 및 온라인 글로벌 공동전시관 등 지원
 -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수출 상담회 개최
 - 수출 물류비 :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에 대해 최대 5백만원, 80% 한도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해외 유망 전시회 한국관 지원 : 해외 바이어 및 참관객이 많은 유망 전시회에 한국관 설치, 바이어 매칭 등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수출)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시장개척단 파견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국가진출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진성바이어를 매칭하고,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현지에 파견(4~5일 일정)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파견 시 항공(50%), 교통, 통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용어 설명

인코텀즈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인도 방식·비용 부담·위험 이전 시점을 정형화한 약속

- *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조건)** :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화물에 대한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 CFR에 최소 보험료를 수출자가 추가 부담하여 가입하는 조건입니다. (운임 및 보험료까지 부담)
-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료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화물에 대한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조건)** : CPT와 동일하게 운송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며, 수입자를 위한 최소 수준의 보험 가입 의무도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조건)** :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 준비된 상태로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만 수입자 부담입니다.
-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 지정된 목적지에서 화물을 하역하여 인도합니다. DAP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수출자에게 하역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 수출자(판매자)의 의무가 최대인 조건입니다. 수입국에서 통관, 관세,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화물을 인도합니다.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개요

기술 개발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절감 및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15개사 내외 지원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20개사 내외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 신청조건 : ①참여기업-②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① 참여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
 - ② 제작기업 : 디자인 전문회사,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등
- 우대사항 : 주관기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기업 등

지원제외 대상

-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 3,000만원, 분야별 상이
 - *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공급가액의 10~30% 현금 부담과 부가세)
- 지원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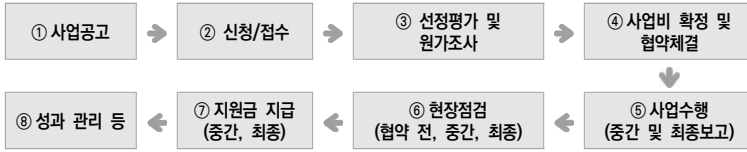
단계	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분야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 목업	시제품 금형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기구설계, 워킹목업,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결과물	최종보고서, 제품디자인설계도, 디자인목업	최종보고서,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	최종보고서, 금형 및 시사출품, 시사출 및 조립 완제품
지급 방식	중간결과물 점검(평가) 후 30%, 최종결과물 점검(평가) 후 70% ※ 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제출 필수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협약 기간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단계	선정 기준	평가 기준
1차 서류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2배수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 능력, 성장성 및 기대효과
2차 발표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내에서 고득점자순 선정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기대효과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시제품)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사업비는 전문 원가조사기관의 분석을 통해 확정(조정)되며, 기업규모 (중기업/소기업/예비창업자)에 따라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 잔여 개발 비용은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합니다.

용어 설명

제품디자인제작지원 : 사업화를 위한 제품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 2차원 및 3차원 데이터를 실체로 형상화하여 실제 제품의 형상, 질감, 색상을 점검, 수정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지원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제작지원 : 제품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의 형태 설계 및 기능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된 부품들을 Mock-up 제작하여 조립성을 검토하고,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설계, 프로그래밍 등이 실제 제품과 같이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로, 상용화 목적의 금형 제작 전 단계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시제품금형 : 디자인 도안 및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도면, 제품 제작도면과 시제품모형(워킹목업 또는 실물모형)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시제품 금형(부분품 포함)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 지원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비용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 신뢰성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지원 25개사 내외 지원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지원 30개사 내외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조건 : 당해연도 1.1.~ 사업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최종결과물 제출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고용 등

지원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동일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지원영역	지 원 항 목
인증획득 (컨설팅비, 시험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규격인증 : CE, UL, CSA 등 ▪ ISO인증 : ISO9001, ISO14001, ISO22000, ISO45001, ISO13485, ISO37001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NET, NEP, GS인증, 우수 조달제품 등 ▪ 조달가점, 법정 의무인증 : KS, 환경표지,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등 ▪ 각 정부부처 소관인증 : 고품질 우수제품,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 기업인증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 지식재산 : 국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홍보 : 오프라인(TV, 신문지, 지하철 옥외광고 등) 및 온라인(SNS채널 등) 광고 ▪ 브랜드개발 : 브랜드 네이밍, BI, CI 등 제작 ▪ 홍보 동영상 : 회사 및 제품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 디자인 : 브로슈어, 포스터, 홈페이지 제작

-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인증획득분야 10개사, 마케팅분야 10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1,500만원 한도 내 2건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제품)사업화 전략, 기업(제품) 경쟁력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29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인증)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인증획득 비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인증획득 비용이란 선정기업에서 지출하신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를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인증비란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 비용이며, 시험비란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 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이며, 컨설팅비란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Q

선정기업 발표는 어떻게 하나요?

A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 후보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

해외규격인증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 대상 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센터 참고)

현장실사 : 선정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필요시)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사업개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지원조건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간 보조공학기기 사용 유지
- 우대사항 : 기업업력(창업초기 우대), 저소득 여부 등

신청제외 대상

- ▶ 공고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 휴·폐업 기업
-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 지원
 - 사업주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기기 활용계획서 등, 이용 서약서 1부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기업업력, 가점 사항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29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보조공학)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 



Q&A

Q 어떤 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집 공고문 내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된 보조공학기기의 인정여부 및 적합성은 심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Q 타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A 타기관에서 지원받으신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1백만원 이상이고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기기인 경우 본 사업에서는 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Q 여러 개의 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대 3개의 제품을 지원금액 한도(5백만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품목에서는 1제품만 신청 가능)

Q 부가세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센터는 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5백만원)만을 지원하며, 5백만원의 초과분과 부가세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용어 설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인 사업주 : 모집공고 전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 상 확인이 가능한 1인 사업주



MAS 컨설팅 및 등록

사업개요

장애인가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등록 및 공공입찰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가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청년장애인, 창업 초기기업, 센터 주관 창업 교육 수료, 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장애인가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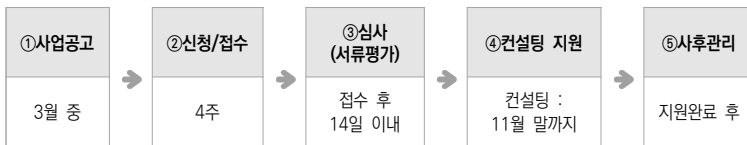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96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 MAS 컨설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지원
 - * 기업별 1세부품명 20품목 이내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에 맞춘 단계별 전문 컨설턴트 지원

- 전자입찰 컨설팅 : 공공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방법 지도
 - * 전자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 관련 컨설팅
 - * 과거 투찰 성향 파악 및 문제점 해결 지도
- 이음장터 컨설팅 : 서비스 공공조달 플랫폼 상품등록 및 활용 방안 지도
 - *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 내용 및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 기업진단 및 서비스 상품분석 서비스 제공
- 벤처나라 컨설팅 : 조달청 벤처나라 플랫폼 상품등록 및 활용 방안 지도
 - * 기업진단 및 서비스 상품분석 서비스 제공
 - * 조달청 벤처나라 상품등록을 위한 입점절차,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평가진행 방식 등 전반적인 컨설팅 진행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 3월 예정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공고명 : 2025년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공공판로)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 



Q&A

Q 접자입찰 컨설팅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투찰 전략(전략적 투찰계획 수립 및 최적의 투찰금액 산정 방법), 서류작성(입찰 및 낙찰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방법), 기업지원(신용평가 등급, 기업진단, 해외조달 컨설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용어 설명

MAS(Multiple Award Schedule) : 일정 자격 및 조건(납품 실적, 경영 상태 등이 일정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개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경영활동 안정화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

요건	정 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고용인원이 없는 1인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경제인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정의)제2항에 해당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 기간이 유효한 기업의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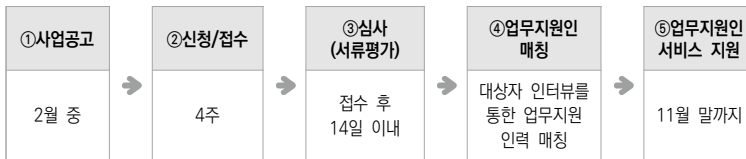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15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구분	내 용
업무보조형	• 일 8시간 미만, 월 160시간 미만(자부담 5%, 부가세 제외) - 센터는 모집된 업무지원인과 이용자 매칭(인력파견 수행기관 운영)
의사소통형	•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비용 300만원 한도(자부담 5%, 부가세 제외) - 의사소통형 선택 시 의사소통 수행업체를 이용자가 직접 선정
경영지도형	• 컨설팅 소요비용 300만원 한도(자부담 5%, 부가세 제외) - 경영지도형 선택 시 경영지도 수행업체를 이용자가 직접 선정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 2월 예정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기업업력, 지원필요성, 활용계획, 효과성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 02-2181-6530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업무지원인 서비스 모집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업무지원)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업무지원인은 어떤 업무를 지원하나요?

A 업무지원인 서비스 유형은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3가지로 구분됩니다.

- ① 업무보조형 : 제품포장, 행정보조, 이동지원, 서류정리, 정보검색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지원
- ② 의사소통형 :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경제인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지원
- ③ 경영지도형 :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컨설팅 등을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지원

Q 업무지원인 매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 ① 업무보조형 : 센터에서 선정한 인력파견 수행기관에서 지원당사자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필요 업무에 대해 파악 후 해당 조건에 맞는 인력을 모집하여 매칭합니다.
 - ② 의사소통형 : 의사소통 수행업체(수어통역센터 등)를 이용자가 직접 선정하고,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③ 경영지도형 : 경영지도 수행업체(컨설팅 전문기관 등)를 이용자가 직접 선정하고,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사업개요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 지원 유공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장애인기업 관계자의 교류와 성과 확산 촉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모범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
- 지원조건

구분	지 원 조 건
모범 장애 경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 사회공헌 실천, 고용 창출 등 모범적 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경제인으로 3년 이상 장애인기업을 경영한 자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장애인기업 제도개선, 장애인기업 육성·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자체,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신청제외 대상

- ▶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지침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6.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중소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우등상,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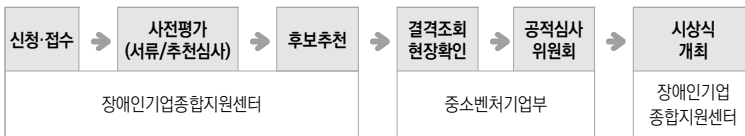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모범장애경제인) 중소기업부 장관, 지식재산처장 표창
(유공자 부문)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
- 지원규모 :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 17점, 지식재산처장 표창 5점
- 지원금액 : 해당없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7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및 기타증빙서류(공고문 참고)

- 선정평가 : 자격검토 → 후보추천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 모범장애 경제인 부문 : 공적기간,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등
 - 유공자 부문 : 공적기간, 사회공헌 실적,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부 : 02-2181-6524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목 검색 (경제인)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Q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A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다양한 부대행사(전시회·설명회 등)를 통해 장애인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주체임을 알리고 장애인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성과 확산을 촉진하는 행사입니다.

Q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포상자 이외에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인가요?

A 전국의 장애인기업 대표 및 임직원, 공공구매 수요기관, 장애인 및 중소기업 정책 관계자, 투자사·바이어,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 장애인 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제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서류	기존 신청서류 접수	기존 신청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근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규모 중기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가능 대상

- ▶ 법인사업자(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 ▶ 개인사업자
- ▶ 협동조합(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제외 대상

- ▶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 ▶ 특수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사회복지법인)
- ▶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연합회)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내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함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당해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총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함
- (소액수의 관련 우대사항) 장애인기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시,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함
- (신인도 가점 우대) 우수조달물품,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최대 가점 한도 5점

신청·접수

- 신청절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출력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애인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함 포함)
협동조합 추가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함 포함),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정관
중기업 추가서류	• 장애인종업원 장애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등록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02-2181-6541)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 참조



장애인가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사업개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가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사업개시 3년 미만 장애인가기업 및 예비창업자	사업개시 7년 미만 장애인가기업 및 예비창업자
입주조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12개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18개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가기업
- 지원조건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공고일 기준) 의 장애인가기업
- 우대사항 : 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② 여성 또는 청년, ③ 창업교육 수료자, ④ 창업경진 대회 수상 이력 보유자

신청제외 대상

- ▶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부동산업 등), 여행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업종은 불가능)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
- ▶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 제공, 기타 교육(지재권, 공공조달 등) 및 상담서비스,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제공 등
- 지원규모 : 16개 지역센터 123개 보육실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지역별 연중 수시 신청 및 접수(창업보육실 공실 발생 시)
- 신청방법 : 방문·우편 또는 전자문서 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3단계 평가(지원 신청서 접수-서류 및 면접심사-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
- 추진절차(연중수시)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5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지역	담당센터 번호	지역	담당센터 번호
서울	02-2181-6541	전북	063-237-5354
경기	032-322-1940	전남	061-285-7867
인천	032-817-1364	제주	064-749-8234
대전	042-362-9077	울산·부산	052-294-7230
강원·충북	043-238-8243	대구	053-600-8070
충남	041-331-0505	경북	054-842-3773
광주	062-511-8330	경남	055-763-3556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지역
센터명 검색

- (홈페이지)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4 장

지역기업 지원

- 14-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 14-2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 14-3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 14-4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14-5 지역특화산업육성
- 14-6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14-7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 14-8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제조 소기업(매출액 10~120억 이하) 및 중기업(600~1,500억 이하)* * 탄소, 중대재해, 지역성장 바우처에 한함	제조 소기업(매출액 15~140억 이하) 및 중기업(600~1,800억 이하)* * 탄소, 중대재해, 지역성장 바우처에 한함
지원우대	-	비수도권 기업 대상 정부지원 보조율 우대지원 * 비수도권 5%p, 우대지역 10%p, 특별지역 15%p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 소기업 및 중기업*
 - *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하며, 탄소바우처, 중대재해바우처, 지역성장바우처는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우대사항 :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일반·우대·특별지역*으로 구분하여 5~15%p 정부지원 보조율 우대(40~85% → 45~95%)
 - * (특별지원지역)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 공통 해당 40개 지역
 - **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이 아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곳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 과제
- ▶ 동 사업을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기타 보조금법 위반 기업 등(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등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6년 2,700개사
- 지원금액 : '26년 65,234백만원 (업체당 50백만원 한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차) '25년 11월, (2차) '26년 2월 경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기업평가·선정 및 협약체결 후 바우처 활용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4-204-7588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 055-751-9858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기업 혁신플랫폼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홈페이지)



Q&A

Q

정부보조금, 기업분담금, 바우처 금액 차이가 무엇인가요?

A

1. (정부보조금) 관리기관이 수요기업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기업분담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10~50% 구성
3. (바우처 금액)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의 합계금액으로, 수요기업이 바우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액

Q 공급기업으로 등록 중 입니다. 수요기업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공급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용어 설명

바우처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사업개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혁신·전략산업에 대한 실증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개선 및 사업화를 추진

〈규제자유특구 -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비교〉

구분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2019년	2026년 신규 도입
신청주체	단일 지자체	2개 이상 지자체 컨소시엄
규제완화	단일 기술 단위 규제	산업 공급망 기반 덩어리 규제
지원내용	규제특례등, 재정지원	좌동 * '26년 지정 후 '27년부터 재정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 특구 및 특구사업자
- 지정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 「지역특구법」 제73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은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 제안 가능
 - 신청방법 :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시·도 지방시대위 의견청취 결과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40조)
 - * 신청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 지정절차



- 지정방법 및 시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후 지정(상반기)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3개)를 적용하고 예산(R&D, 인프라 등)을 지원
- 규제혁신 3종세트 :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 규제 신속확인 :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 '규제없음'으로 간주 (시장출시 가능)
- ▶ 실증특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①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②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③불가능한 경우 시장에서 테스트를 허용
- ▶ 임시허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①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②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지역특구법' 상 기존 규제(203개)를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입지, 환경, 도시계획 등)
- 재정지원 : ①실증 R&D, ②인프라(실증장비, 안전성·성능인증 등), ③사업화 지원(책임보험, 성능평가·시험, 마케팅·판로 등)

● 재정지원 세부내용

① 실증 R&D

- 지원내용 :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R&D 지원(가용범위 내 지원)

* 제한된 조건에서 핵심성능(규제완화사항)이 구현되어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지원기간 : 2년 ~ 4년 (실증특례 부여기간과 연동)
- 예산규모 : '26년 총 16,840백만원(국비)

* 지원형태 및 비율 : 출연, 국비 7(이하) : 지방비 3(이상) : 민간부담금 2(이상)

② 실증기반조성 R&D

- 지원내용 : 규제특례 등의 실증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 장비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비영리 특구사업자(TP, 연구소 등)
- 지원기간 : 2년 ~ 4년 (실증특례 부여기간과 연동)
- 예산규모 : '26년 총 2,900백만원(국비)

* 사업비 매칭비율 : 정부출연금 5(이하), 지방비 5(이상)

③ 사업화 지원

- 지원내용 : 책임보험료, 시제품 고도화(제품설계, 시험), 특허, 시험 평가 및 장비활용, 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가용범위 내 지원)

- 예산규모 : '26년 총 5,972백만원(국비)

* 지원형태 및 비율 : 민간경상보조, 국비 7(이하) : 지방비 3(이상)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044-204-721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 02-6009-372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제혁신사업팀 : 055-751-9404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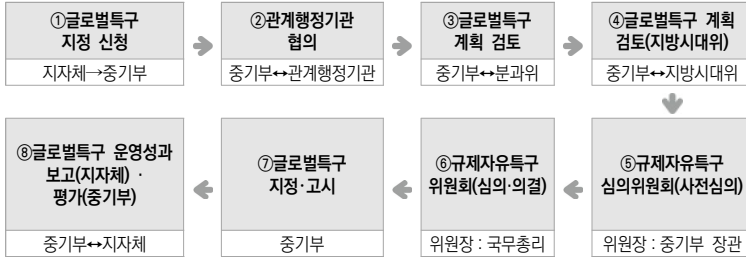
사업개요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서,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집적된 곳에 규제특례, 국내외 실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된 특구 및 특구 사업자
- 지정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 「지역특구법」 제73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은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 제안 가능
 - 신청방법 :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은 글로벌특구계획, 시·도 지방시대위 의견청취 결과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40조)
 - * 신청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 지정절차



- 지정방법 및 시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후 지정(상반기)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규제혁신 3중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3개) 적용 및 예산(해외공동실증R&D, 해외인증, 인프라 등)을 지원
 - 규제혁신 3중세트 :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 규제 신속확인 :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 '규제없음'으로 간주(시장출시 가능)
- ▶ 실증특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①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②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③불가능한 경우 시장에서 테스트를 허용
- ▶ 임시허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①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②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지역특구법' 상 기존 규제(203개)를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입지, 환경, 도시계획 등)
- 재정지원 : ①해외공동실증 R&D, ②국내외 실증 및 해외 인증, ③인프라(실증장비 등)

① 해외공동실증 R&D

- 지원내용 : 규제로 인하여 국내에서 실증이 어려운 기술 또는 해외 실증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협력기관과 공동실증 R&D 지원

- 지원기간 : 2년 ~ 4년 (예산 가용범위 내 지원)

- 예산규모 : '26년 총 8,261백만원(국비)

* 지원형태 및 비율 : 출연, 국비 50 : 지방비 25 : 민간부담금 25

② 국내외 실증 및 해외인증

- 지원내용 : 해외 혁신클러스터와의 현지 실증, 글로벌 인증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료 등 지원

- 지원기간 : 2년 ~ 4년 (예산 가용범위 내 지원)

- 예산규모 : '26년 총 17,691백만원(국비)

* 지원형태 및 비율 : 민간경상보조, 국비 7(이하) : 지방비 2(이상) : 민간부담금 1(이상)

③ 실증기반조성 R&D

- 지원내용 : 규제특례 등의 실증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 장비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비영리 특구사업자(TP, 연구소 등)

- 지원기간 : 2년 ~ 4년 (예산 가용범위 내 지원)

- 예산규모 : '26년 총 13,526백만원(국비)

* 지원형태 및 비율 : 출연, 국비 5(이하) : 지방비 5(이상)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 044-204-7205, 75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제혁신사업팀 : 055-751-990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 02-6009-3723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제도 개요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의 획일적인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자율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뒷받침
 - ※ 별도의 직접적 재정 지원은 없으나, 운영 성과가 우수한 특구(탁월·우수)에는 중기부 및 타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가점 등)를 제공

신청 자격

- 원칙 : 기초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 예외 :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와 공동 추진 가능
- 민간 제안 :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계획을 제안할 수 있음
 - ※ 지자체장은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해야 함

지정요건

- 지역의 특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신청
- 단,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특구를 우선 선정
- 심의 기준 : ①특화사업과 지역 여건의 적합성, ②규제특례와 사업의 연관성, ③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가능성(민자 포함), ④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⑤국토계획과의 정합성 등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 단,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부(특구 운영과)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사전 진단·컨설팅 등 협의 필수

구비서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지형도면·지적도
 -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규격(축척 1:500~1,500 등) 준수 필요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기준(재원조달, 파급효과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견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전 진단 결과 반영 내역서, 지정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대상 사업인 경우)
-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관계 법령상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예 : 산지전용허가 신청 서류 등)

처리절차

가. 특구 계획 수립 및 신청(주체 : 지자체)

- ① 계획 구상 및 제안 : 지자체 자체 구상 또는 민간 제안 접수
- ②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토지이용규제 특례가 포함된 경우 필수
※ 사전 심의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2년 내) 조건으로 신청 가능
- ③ 주요 내용 공고 : 지자체 공보 등에 20일 이상 공고
- ④ (특화사업자 지정) : 필요시 민간 사업자 신청 접수 및 지정(신청 후 30일 내 통보)
- ⑤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 공고 6일 경과 후 14일 이상 열람 기간 부여
- ⑥ 주민 공청회 : 개최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공고 후 개최
- ⑦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수렴
- ⑧ 지정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 제출(동시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계획 통보)
※ 관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 가능



나. 지정 심의 및 사후관리(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①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지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원칙(부득이한 경우 1회 45일 연장 가능)
- ② (환경부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협의
- ③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구계획(안) 전반에 대한 협의(20일 이내 회신, 필요시 10일 연장)
- ④ 실무위원회 개최 : 쟁점 사항 사전 조정 및 안건 검토
- ⑤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여부 최종 결정 (위원장: 중기부 장관)
- ⑥ 지정·고시 : 관보 고시 및 지자체 통보 (효력 발생)
- ⑦ 성과평가 :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특구 포상(인센티브) 및 부진 특구 관리(구조조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 044-204-7591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개요

비수도권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대상 기술지도, 사업화, 역량강화 등 메뉴판식 기업성장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중소기업
- 지원조건 :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지역별 상이

* 세부 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사항은 시·도별 모집공고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 품목, 동일 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 ▶ 이 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 그 외 사도 기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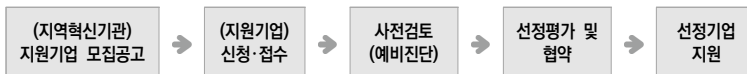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별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대상 기업성장 프로그램(기술개발 진입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마케팅, 시험분석, 지식재산권 확보 등) 지원
 - 시군구연고산업육성 : 인구감소·관심지역, 농어촌지역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군구 단위 지자체 소재의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2,100개사 내외
(’26년 사업비 806억원)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이내
(시군구연고산업은 최대 9천만원 이내)

〈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지원내용 〉

지원분류	지 원 내 용
혁신화& 성장촉진	지역의 전통산업 기업군을 ICT·플랫폼 기술 등을 접목하여 고도화하거나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육성타겟 기업군의 혁신역량 제고 및 트렌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컨설팅, 기업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화지원	기존 시제품제작, 마케팅 외 연고산업 관련 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확장 프로그램 신규 추진
패키지지원	지역 내 유망기업 혹은 유망제품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패키지 기획 및 지원
생산성 향상	노후되었거나 안전장치가 미흡한 생산장비의 개선, 고위험 장비의 DX 전환, 생산라인 효율화 등
외국인 인력채용 프로그램	외국인 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박람회 참가, 관련 플랫폼 사용 비용 지역특화형 비자신청 관련 행정 자문 정착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 지원 외국인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지침·안내서 번역 지원 (프로그램 구성 시 필수)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주관기관(혁신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기업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smtech.go.kr/region/rm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지원기업)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주관기관 선정 이후 주관기관별 기업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주관기관 :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또는 사전검토, 현장실태 조사, 발표평가를 통한 지역혁신기관 선정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 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원기업 : 지원 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화) 044-204-7578, 7587, 729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전화) 044-300-0824, (이메일) swyi@tipa.or.kr
- 사업 및 시스템 문의 (1357), 정책정보 (www.bizinfo.go.kr)



Q&A

Q 지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지역별 기업지원이 가능한 테크노파크 혹은 지역혁신기관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해당 주관기관에서 지원기업을 모집합니다. 3월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smtech.go.kr/region/rms) 혹은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기업 모집 공고가 진행됩니다.

Q 지원기업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기업의 지원조건은 매출액, 수출액 및 기업규모, 산업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해당 내용은 기업지원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지원대상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력산업 기업지원의 경우,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특허·인증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제품 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마케팅 등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지역혁신기관 : 지역 내에서 인력·산업 등을 연계·활용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등을 지원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이 포함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개요

- 지역혁신 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성장 견인
 -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주력산업 분야 (예비)선도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참여조건)	주력(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 * 주력산업분야 KSIC코드 보유 중소기업	개편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 주력산업분야 + 연관산업 KSIC코드 보유 중소기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2개사 이상)과 대학·대·중견기업 컨소시엄
 -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국세, 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 ▶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대학 또는 대·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혁신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산·학·연 협력 R&D 추진
 -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여 잠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성장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
- 지원규모
 -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26년) 157개 과제, 최대 2년간 7억원/연
 -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26년) 147개 과제, 최대 2년간 2억원/연
- 지원금액 : '26년 총 96,939백만원(국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대면평가(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함,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개발 내용의 부합성 및 적정성, 수행역량,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4-204-758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전화) 044-300-0823, 0827~0829, 0831
(이메일) abc@tipa.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 (경로) 온라인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알림마당(R&D사업공고)
 - (홈페이지) |





Q&A

Q 전략품목에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원과제가 해당 사업의 전략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고된 전략품목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전략품목과 과제의 적합성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전문 위원이 평가합니다.

Q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경우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나요?

A 네, 주력산업 생태계구축사업의 경우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개요

지역특성에 기반, 지역·중앙이 협력하여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위기 기업 적시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응체계 구축·운영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지원 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중소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화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및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그 외 세부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 등중소기업 밀집지역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광역지자체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지역경기동향 분석,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등)하고,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기업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형 지원)*

* 기업현장실사 기반 산업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해 기술, 사업화 맞춤 지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우대, 국세·지방세 감면(50%,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 지원규모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비수도권 12개 시·도별 약 10~16개사 내외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 4.78억원

●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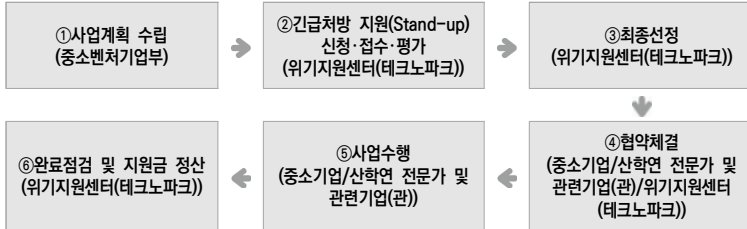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기업별 최대 10백만원 지원

신청·접수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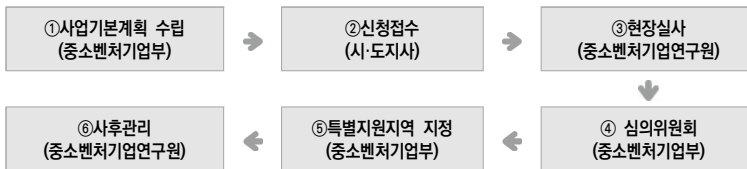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 2월~상반기 목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하반기) 7월~하반기 목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계획
- 신청방법 : 시·도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

- 선정평가 :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신청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추진절차 : 긴급처방 지원절차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

- 공고(예정) 시기 : 수시지정
- 신청방법 :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공문)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정량(사전·서면검토), 정성(현장실사·보고서) 평가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586, (이메일) msk1121@korea.kr

(전화) 044-204-7265, (메일) lifegood1250@korea.kr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
(전화) 02-6009-3809, (메일) yiyang@technopark.kr
- 중소기업연구원 지역혁신팀
(전화) 02-707-9859, (메일) kimhj@kosi.re.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 (홈페이지)



Q&A

Q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광역지자체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가 지역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가 있는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처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어 설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 간 경영·기술정보 교류·협업 지원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협업계획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혁신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협업기업 선정)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
-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 승인기업 중 애로 발생으로 협업이 중단되었거나 협업을 통한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희·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증개·도매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협업체결성, 협업진단, 협업제품 개발 및 혁신활동 등 협업과정에 필요한 애로해결 및 사업화활동 등
- (협업기업 선정) 협업기업 선정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융합 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 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접수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서류검토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 지원필요성(협업추진 필요성 및 협업목적, 사업추진의지, 협업체구성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협업활동 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기대효과(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지역혁신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 ▶ (협업지원사업)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심의위원회 → 선정확인서 발급
 - *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기업의 안정성, 협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협업추진능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서류검토 → 발표평가(필요시) → 최종선정
 - * 지원필요성(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의 필요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 애로 사항 및 지원필요성), 계획의 적정성(사업목표의 구체성, 협업추진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구비서류(청렴서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4-204-7578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 042-331-0572

제 15 장

탄소중립 지원

- 15-1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 15-2 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 15-3 중소기업 기후공시·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 15-4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 15-5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 및 친환경 설비도입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친환경 전환 촉진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보조율	• 보조율 50%	• (상향) 보조율 70%
우대조건	• 탄소다배출 업종	• (추가) 산업단지 비입주 기업
지원 설비	• 에너지 고효율 설비, 탄소배출 모니터링 설비 등	• (추가) AI 기반 공정 최적화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의무감축 대상 제외)
- 우대사항 : 탄소 다배출업종,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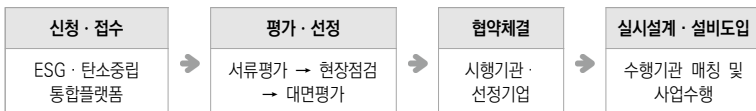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부도 및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탄소감축 설비 투자 패키지 지원
 - 지원설비 : 인버터형 공기 압축기, 고효율 기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지원규모 : 약 80여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 평가 → 현장점검 →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량, 탄소 다배출 업종 영위 여부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751-9849
 - (온라인 문의)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ESG통합플랫폼 ≡ 자료실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 소요되는 탄소중립 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10개사	17개사
지원 유형	• 사업화(6개사), 실증(4개사)	• 사업화(10개사), 실증(4개사) • (추가) 투자 연계형(3개사)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등 총 14종	• (간소화) 신청서 통합 등 총 7종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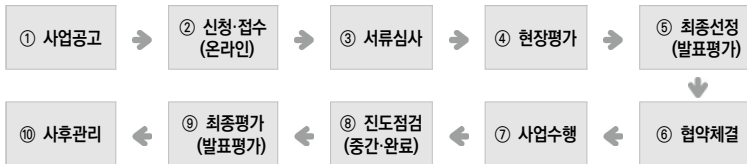
- (기술 사업화) 탄소중립 관련 기술취득(3년이내) 중소기업
 - 특허권(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등 포함), 국가 R&D 성공판정 받은 기업
- (현장실증) 보유기술이 시제품제작 단계 이상(TRL 6단계 이상)으로 국내·외 수요기업·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기술검증이 필요한 기업
 - 수요기업의 구매조건부 MOU, 의향서, 계약서 등 수요기반 증빙 **必**
 - * 필수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수요처와 6개월 이내 체결한 증빙자료에 한함
-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내용

- (기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제품개선, 국내외 인·검증 등 사업화 지원(업체당 평균 1.5억원 지원, 10개사 내외)
- (현장실증)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국내·외 수요처 현장 성능 점검, 제품개선·설치 등 실증지원(업체당 평균 4.5억원 지원, 4개사 내외)
- (투자연계) 바이어·유통사 매칭 등 판로 개척, 특허·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컨소시엄당 최대 4억원 지원, 4개 컨소시엄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 심사 → 현장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보유 기술 수준, 정책 지원의 시급성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751-9733
 - (온라인 문의)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공고
 - (경로) ESG통합플랫폼 ☞ 자료실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후공시·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개요

협력 중소기업에 지속가능경영 수준진단을 통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여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28.7월~) 대비 공급망 재편 등 리스크 점검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획득 및 ESG 경영보고서 작성 등 3단계 지원 비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대) 3단계 지원 비율 20%

지원대상

- 신청자격 : '28.7월부터 시행 예정인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내·외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 * 국내EU 수출액 15억 유로 초과(50여개), EU매출액 15억 유로 및 직원수 5천명 초과
- 지원조건 :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1/2/3단계) 컨설팅 및 인증지원(보조율 100%)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1단계) ESG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자가 진단 및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진단
 - (2단계) 진단 수준별 심화컨설팅(탄소배출량 산정, 중대재해예방) 및 글로벌 인증(ISO14001, ISO45001 등) 취득지원 등
 - (3단계) 협력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에서 제안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 집계 교육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 신청방법 :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요건 검토 → 선정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의 직·간접 영향도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751-9731, 9737
- (온라인 문의)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 (경로) ESG통합플랫폼 ☞ 자료실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 MRV :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Measurement)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체계

사업개요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 인프라 구축, 적격 검증기관을 활용한 배출량 검증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대상	• CBAM 대상 품목(6개) 수출 중소기업	• (품목 확대) 6개 → 8개 품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EU로 CBAM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솔루션(S/W+H/W+검증) 보급
 - (S/W)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기반 탄소 배출량 산정 S/W
 - (H/W) 공정·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데이터통신 장비
 - (검증)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 기관의 검증
- 지원규모 : 약 20여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평균 40백만원 지원(보조율 7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3월
- 신청방법 :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요건 검토 → 선정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751-9732
 - (온라인 문의)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SW 보급 사업
 - (경로) ESG통합플랫폼 ⇄ 자료실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개요

CBAM('26~)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최대 5년, 55억 이내	75% 이내	지정공모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 (R&D)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실증)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 지원규모 : 18개 과제('26 신규)
- 지원금액 : 5,000백만원('26 신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4 ~ 26. 5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선정평가 :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 부합성, 탄소 감축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532~0538, 0541~0548
(이메일) 311@tipa.or.kr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참고사항

-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탄소감축 효과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 필수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2 편



제1편

중소기업

- 제1부 > 금융 지원
-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 제3부 > 인력 지원
- 제4부 > 판로 지원
- 제5부 > 수출 지원
-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탄소중립 지원

제2편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 제1부 ▶ 소상공인
- 제2부 ▶ 전통시장
-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4편

공통사항

- 제1부 ▶ 기타
-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 부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소 및 연락처

제 1 부



창업기업 지원



제1장 ▶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제2장 ▶ 창업저변 확대

제3장 ▶ 창업지원 인프라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 1-1 예비창업패키지
- 1-2 초기창업패키지
- 1-3 창업도약패키지
- 1-4 재도전성공패키지
- 1-5 창업중심대학
- 1-6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1-7 팀스(TIPS)
- 1-8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 1-9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1-10 유니콘브릿지 사업
- 1-1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1-12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 1-13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Around X)
- 1-14 청년창업사관학교
- 1-15 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이어드림 스쿨)
- 1-16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사업화 준비 단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시장 안착 유도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지원규모) 748명 내외	(지원규모) 750명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주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신청제외 대상

-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포함)로 등재된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전문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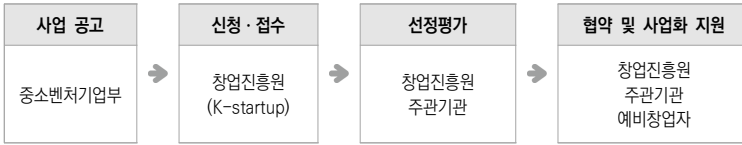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0.8억원(평균 0.5억원) 지원
 - (창업프로그램)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총 750명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가점 증빙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경쟁력 확보 방안, 시장진입 전략 및 자금조달 방안,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창업진흥원 예비제도전실 : 044-410-1803~4, 1806~7, 1809, 1840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 

Q&A

Q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A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Q 사업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 내 신청 자격 및 요건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혁신 기술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BM(Business Model) : 제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모형

MVP(Minimum Viable Product) :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핵심 기능 위주로 구현한 제품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개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유형	① 일반사업화 ② 민간투자 ③ 딥테크 특화(추경)	① 일반사업화 ② 딥테크특화 ③ 투자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신청제의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전문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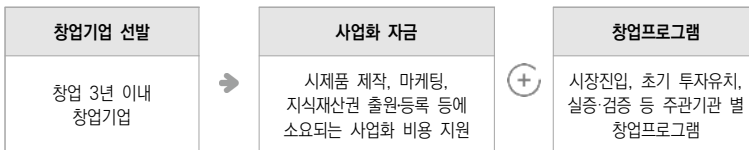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 등

〈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지 원 내 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5억원, 평균 0.7억원)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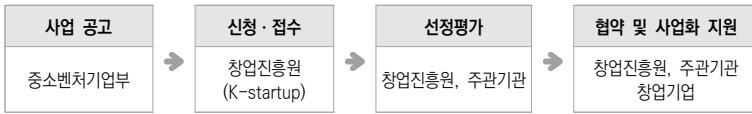
- 지원규모 : 614개사 내외
- 주요 사업절차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예정)
- * 투자연계형은 '26년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 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 추진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창업진흥원 초기도약실 :
(전화) 044-410-1864, 1831, 1834, 1836, 1862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투자연계형) : (전화) 044-410-1925, 1892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 



Q&A

Q 지원유형 중, ‘일반사업화’, ‘딥테크 분야’, ‘투자연계’ 유형에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시 수행은 불가합니다. 최초 선정이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Q 창업 3년 이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초기 창업패키지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개요

도약기 창업기업(업력 3~7년)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유형	① 일반사업화 ③ 투자병행	② 대기업협업 ④ 딥테크 특화(추경) ① 일반사업화 ② 딥테크특화 ③ 투자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창업기업 및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지원유형별 우대사항 상이(모집공고 확인)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전문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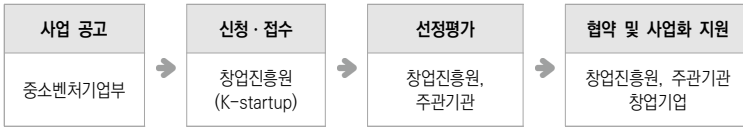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일반사업화)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주관기관 프로그램(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딥테크특화)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주관기관 프로그램(기술인증, 글로벌진출 등) 지원
 - (투자연계) 투자유치 실적 보유 비수도권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2억원), 주관기관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460개사 내외(지원유형별 상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예정)
 - * 투자연계형은 '26년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지원유형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모집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 초기도약실 : 044-410-1860, 1863, 1866~8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투자연계형) : 044-410-1925, 189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참고사항

- 공고명 :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모집마감) →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Q&A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경우(신산업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이내)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Q 지원유형 중, ‘일반사업화’, ‘딥테크 분야’, ‘투자연계’ 유형에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시 수행은 불가합니다. 최초 선정이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개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재창업자의 재창업 및 재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실패 인식 개선 및 재창업 저변 확대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201개사(명)	(지원규모) 185개사(명) 내외
지원구분	일반형, IP전략형	일반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②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④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既)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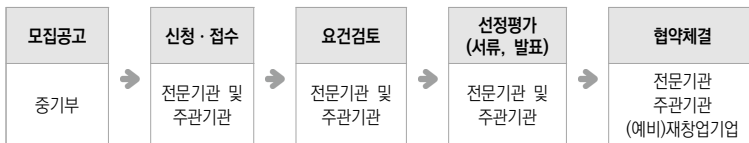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분야별,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85개사(명) 내외
- 지원금액 : 14,966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폐업사실증명원,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팀구성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등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창업정책과 : 044-204-7623, 7628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044-410-1983, 1992, 1985, 1987, 198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예비)재창업기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 



Q&A

Q 복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운영 중 일부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재창업에 해당 되나요?

A 재창업은 폐업을 한 뒤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복수의 사업자 운영 중 일부 사업자를 폐업한 것은 재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개인기업의 폐업도 폐업이력으로 인정되나요?

A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름

성실경영평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에 따름



창업중심대학

사업개요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과 대학생·교수 등 대학발 창업기업에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수요에 기반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813개사	820개사 내외
지원내용	대학발 창업기업과 지역 산업 기반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딥테크 분야, 지역주력산업 연계, 지역 내 창업 등 맞춤형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창업중심대학별 상이(모집공고 확인)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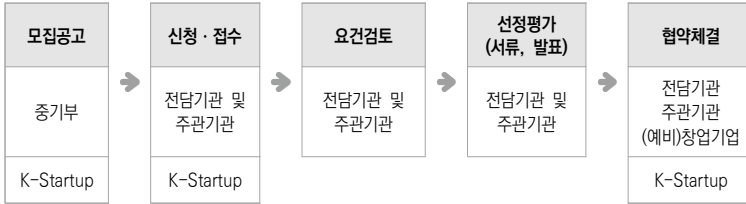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글로벌 진출, 민간협력,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 : 시제품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8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88,25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예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사업 확장 및 출구 전략, 팀(기업 구성원) 역량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953, 7954
- 창업진흥원 청년도전팀 : 044-410-1811~181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권역내 일반형 /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형 /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 (경로) '사업공고'- '모집마감' 에서 '창업중심대학' 으로 검색하여 확인
- (홈페이지) |



Q&A

Q

창업중심대학 소속의 대학생, 교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전국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부터 스케일업이 필요한 도약기업까지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Q 창업중심대학 사업신청시 별도의 연령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또는 창업기업일 경우 희망하는 창업중심대학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25.12월 기준) 창업중심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창업중심대학은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11개 창업중심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청권(한남대학교, 호서대학교, 충북대학교)으로 운영중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사업개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초격차 기술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10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
공고시점	'25년 1월 말(당해연도 초)	'25년 12월 말(직전년도 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AI·AX	AI	반도체	양자, 보안·네트워크
	로보틱스		모빌리티
Bio	생명·신약		헬스케어
Contents	콘텐츠(신설)		
Defence	방산(신설)	우주항공	해양
Energy	친환경	에너지	핵융합
Factory	생산·공정·센서		

- 우대사항 : CES 2026에서 혁신상 수상기업 등(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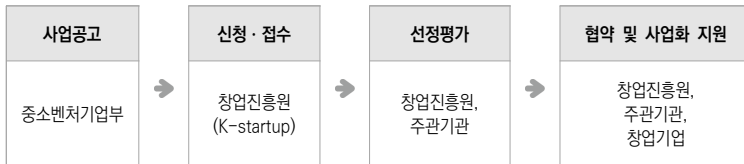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 연계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 우대
 - *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개방형 혁신(대·중견기업 협업), 투자유치 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기술사업화	•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
개방형혁신	• 국내·외 대·중견기업 공공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투자유치	• 국내·외 VC·AC 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IR 참가 지원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 12. 29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 수준, 성장 전략, 글로벌 진출 역량
- 추진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 딥테크전략실 : 044-410-1684, 1689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내 사업 공고문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창업 기업 모집수정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Q&A

Q 본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 지원이 보장 되나요?

A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간 지원이 보장됩니다. 다만, 매년 사업비 배정평가를 통해 당해연도의 정부지원금(최대 2억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 (정부지원금 예시1) 1차년도 1.7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총 4.7억원

* (정부지원금 예시2)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1억원, 3차년도 1.5억원 총 4.5억원

Q 본 사업에 선정 시 사업 수행기간인 3년보다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나요?

A 창업기업이 최소 1차년도의 사업을 수행 완료하고, 3년의 사업화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심의를 통해 해당 기업을 졸업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졸업기업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A, 상장, 매출 투자 특정 정량 성과 달성 등

Q R&D과제와 동시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서, R&D과제와 동시수행을 신청·수행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팁스(TIPS)

사업개요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프리 팁스]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중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수도권 소재 기업

*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 시,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환수금 등의 반납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팁스 R&D'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 그 외 신청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 시 신청제외 대상 목록 참조

[팁스 연계지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팁스 R&D’ 또는 ‘딥테크 팁스 R&D’ 협약 완료한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해외마케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세부기준(해외 투자유치형, 수출 중심형, 해외 창업형, 해외 콘테스트형 등)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 시 신청자격 참조

신청제외 대상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공통)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환수금 등의 반납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포스트 팁스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 그 외 신청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 시 신청제외 대상 목록 참조

(창업사업화)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기업)

(해외마케팅)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기업)

[포스트 팁스]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팁스 R&D 수행 후 “완료(성공)” 판정을받은 기업 중 아래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팁스 R&D 성공 조건 : ① M&A 성사(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③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신규 고용 15명 이상, ⑥ 직전 3개년도 VC 평균 투자 금액 이상 후속 투자 유치
- ⑦ ③~⑥ 요건 중 2가지 이상 각 항목에서 50% 이상 기준 달성 시
- * 후속투자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실적만 인정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환수금 등의 반납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팁스 선정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 투자금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 '팁스 R&D'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 그 외 신청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 시 신청제외 대상 목록 참조

[글로벌 팁스]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해외 VC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
-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환수금 등의 반납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 그 외 신청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 시 신청제외 대상 목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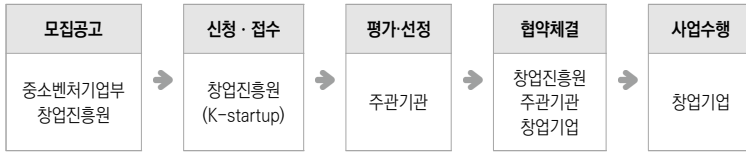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6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틱스 운영사(투자사) 등에서 창업기업에 先 투자·보육 후 추천, 정부 R&D 및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등을 지원
 - * 민간 투자(1~2억원) + 정부 매칭 지원(R&D 8억원,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3억원) + 후속지원(포스트 틱스 7억원, 딥테크 15억원) + 글로벌 틱스(6억원)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 ① 프리 틱스 :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8개월)
 - ② 틱스 연계지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틱스 R&D와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등 최대 3억원 지원(10개월)
 - ③ 포스트 틱스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 확대)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 자금 최대 7억원 지원(18개월)
 - ④ 글로벌 틱스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자금, 현지 진출 프로그램 등 최대 6억원 지원(최대 3년)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1분기 중(예정, 기간 및 일정 등은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평가 주요 내용 : 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기업 역량, 사업 추진 의지 등

- 추진절차 (※ 세부 사업별 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실) :
044-410-1715, 1718, 1721~3 / 02-2039-1308, 135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사업개요

오픈이노베이션(O/I) 수요가 있는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 간 협업체계 구축, 협업 수행을 지원하여 기업간 동반성장 촉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 단 세부 유형(트랙)에 따라,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기업도 지원 가능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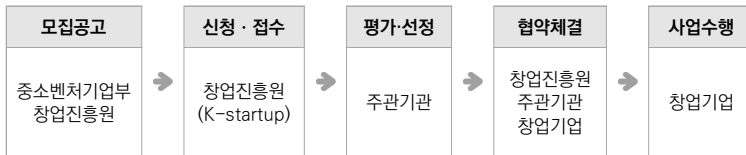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 ▶ 특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스타트업 대상 PoC, MVP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1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4억원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분기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이해도, 과제구체성, 실현가능성, 협업가능성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044-204-7671, 7643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 044-410-1720, 1989, 176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및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문제해결형 (Top-Down)·자율제안형(Bottom-Up) 스타트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수요기반형 (On-Demand)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스타트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방위산업 스타트업 챌린지 모집공고

- (홈페이지)





Q&A

Q 스타트업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요기업별 협업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선정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하여 협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용어 설명

(수요기업) :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기업

(POC, Proof of Concept) : 제품, 기술, 정보 시스템 등 조직의 특수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다는 증명 과정.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

(MVP, Minimum Viable Product) : 최소 기능 제품,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최소한의 기능(features)을 구현한 제품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사업개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입주공간	글로벌스타트업센터(서울) 또는 경기혁신센터(판교) 보육공간 중 선택	글로벌스타트업센터(서울) 또는 주관기관 보육공간 중 선택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외국 국적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해외 (예비)스타트업

*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16~'25년 동 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개인 사정 및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액셀러레이팅, 참가지원금 및 상금, 사무공간, 창업 비자 취득, 법인 설립 등
-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4월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c.org)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소개자료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서면평가) → 영상평가(온라인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국내정착가능성 및 의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및 차별성, 팀 역량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 글로벌허브실 (전화) 02-2039-173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Recruitment of (Pre-)startups for 2025 K-Startup Grand Challenge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유니콘브릿지 사업

사업개요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들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업에 정부지원금과 기술 금융 및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 분	'25년	'26년
지원 대상	(신설)	50억원 이상(누적) 투자유치기업
지원 내용	(신설)	정부지원금, 금융지원과 유니콘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후속연계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청 접수	(신설)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www.kibo.or.kr/dbranch)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필수 (1개) 및 선택(1개)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구 분	요 건	주 요 내 용
필수	투자유치금액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최근 50억원 이상(누적) 투자유치기업
선택	기업가치	-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
	혁신성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 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성장성	- 틈스 R&D 수행 완료(우수 혹은 보통) 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중 최대 70% 보조
- 우대사항 : 덤테크 영위기업, 비수도권 소재기업

신청제외 대상

-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 해당 시
-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해당 시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정부지원금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위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 세부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정부지원금	• 기업당 경쟁력강화자금 최대 6억원
금융지원	• 기업당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
후속지원	• 해외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IR·전시회 참여지원 등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32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예정)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https://www.kibo.or.kr/dbranch>)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피치덱), 지원자격 및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3단계 평가(요건검토·서면평가 → 기술평가·보증심사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단기간 내 유니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니콘 도약가능성, 해외성공 가능성, 보유기술 우수성, 정책 지원 타당성 등 지표로 구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전화) 044-204-7644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전화) 051-606-7697, 7656, 7694

참고사항

① 기타사항

- 제목 : 2026년도 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홈페이지)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 함양 유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Track 별 선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투자연계형 트랙 도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또는 10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 초격차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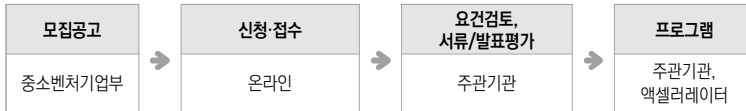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등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자금 등 지원
- 지원규모 : 18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30백만원 내외(Track별 상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4월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영문 사업 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글로벌창업팀 : (전화) 044-204-7684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
(전화) 02-2039-1652, 044-410-1884, 1887,
(메일) dream2@kised.or.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명 : (연장)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사업공고 - 공고마감
- (홈페이지)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사업개요

전 세계 혁신 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현지 사무공간 제공, 사업화·투자유치·네트워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 분	'25년	'26년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S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실리콘밸리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미국 뉴욕(시범운영) 등 3개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투자 또는 수출실적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 우대사항
 -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아기/에비유니콘, 초격차 프로젝트, TIPS(스케일업/딥테크/글로벌),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기업협업, k-global star),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입교·졸업기업, KOICA CTS 졸업기업
 - * 현지특화업종 해당 및 전문기관의 투자실적 보유기업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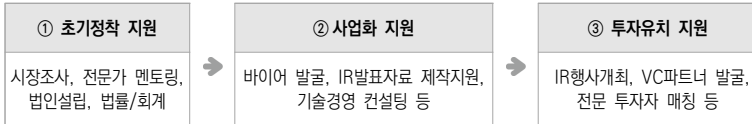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않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기업
- ▶ KSC입주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거점형)중진공 현지 K-스타트업센터(KSC)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초기정착, 사업화, 성과창출 등의 맞춤형 지원



- (프로그램형)창진원+중진공 해외진출 지원 국가의 현지 AC로부터 사전교육 및 현지에서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IR피칭, 데모데이 등) 참가를 지원

● 지원규모 : 139억원, 123개사 내외

신청·접수

- (KSC 거점형) 상시 신청·접수('25.1월~12월)
 - * K-스타트업센터 누리집(k-startupcenter.org)에서 신청·접수
- (KSC 프로그램형) 사업공고(~'25.5월) → 지원기업 선정(~'25.6월)
 - 프로그램 운영('25.7월~11월)
 - * 창업지원 포털 누리집(k-startup.go.kr) 및 K-스타트업센터 누리집(k-startupcenter.org)에서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055-751-9683, 9688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 044-410-187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KSC 거점형) 2025년 K-스타트업센터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KSC 프로그램형) 2025년도 K-스타트업센터 창업기업 모집공고
- (경로)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Q&A

Q

서로 다른 해외의 코리아스타트업센터에 동시 입주(신청)가 가능한가요?

A

국내 스타트업의 다양한 해외거점 진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KSC 프라임'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1년내 5억원 이상의 국내외 투자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10만불 이상의 해당국(인접국) 수출 실적이 있으면 최대 2개(곳)까지 동시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거점형과 프로그램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램형은 창업진흥원 위탁을 통해 입주공간 지원 없이,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만 제공하며, 거점형은 중진공이 직접 운영하여 엑셀러레이팅뿐만 아니라 초기정착부터 사업화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의 단계별 필요서비스를 종합 제공합니다.

용어 설명

엑셀러레이팅 :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 노하우, 시장 접근법, 투자유치를 위한 IR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Around X)

사업개요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경영 역량을, 정부와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및 안착 등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협업 글로벌 기업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 에어리퀴드, 앤시스(스페이스) 등 13개사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 에어리퀴드, 앤시스(스페이스), 아스텔라스, OpenAI, 메르세데스 벤츠, HP 등 17개사
동시수행 가능여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불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또는 10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19~'20년 초기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또는 창업도약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1~'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3~'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정부는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은 분야별 전문 서비스, 내·외부 인프라 등 제공
 - 정부 : 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평균 1.2억원), 주관기관 창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홍보, 투자유치 등) 제공
 - 글로벌 기업 : 솔루션 무상/할인 제공,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 매칭, 마케팅 지원, 현지 해외실증 지원 등
- 지원규모 : 44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평균 1.2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말 ~ 2월 초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선정평가 : 요건검토(업력,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서류평가(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발표평가(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요건 적합성, 사업화 계획, 글로벌 기업 협업 계획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글로벌창업팀
(전화) 044-204-7642,7662, (이메일) jieunyun17@korea.kr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전화) 02-2039-1274, 044-410-1844, 1883
(이메일) aroundx@kised.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수정공고
- (경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검색창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공고” 검색
- (홈페이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자금, 교육·코칭, 투자유치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모집분야	글로벌형, 투자형, 지역특화형 등 권역별 3개 특화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 창업기초교육, 기술사업화(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심화과정) 글로벌진출, 딥테크 분야 기술 고도화(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서울, 광주, 경산 등 3개 청창사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심화과정) 글로벌 딥테크 분야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자 * 청창사 졸업기업의 경우 연령제한 無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
 - * (기본과정) 창업 3년 이내, (심화과정) 창업 7년 이내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 * (기본과정) 최대 1억원, (심화과정) 최대 2억원
- 우대사항 :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우선 선발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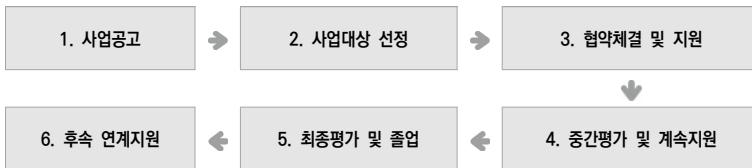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모,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비 지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적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쏠 과정 집중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특성화 지원) 글로벌 진출 준비, 투자 역량 강화,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국내·외 판로, 인력 지원 등
- 지원규모 : 950명(개사)
- 지원금액 : 1,02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3주(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6년 사업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사업화 추진 계획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1, 7955
(이메일) nak999@korea.kr, k2002kky@korea.kr

구 분		전 화 번 호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031-490-1386, 1399
	서울	02-2130-1426-9, 02-2130-1432-3, 1435-7
	경기동부(구리)	031-554-2784-8
	인천	032-858-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6-8
	강원(원주)	033-748-9266, 9268-9

구 분		전 화 번 호
충청권	대전	042-862-9937-8
	세종	044-850-5631-2
	충남(천안)	041-559-9282-9
	충북(청주)	043-903-9357-8
호남권 및 제주	광주	062-250-3031-2, 3034, 3039, 3042-3, 3069
	전북(전주)	063-276-8219-20
	전남(나주)	061-331-8708
	제주	064-759-9647-9
영남권	대구	053-656-8176-8
	경북(경산)	053-819-5053
	부산	051-305-9930-3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62, 8064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241, 9837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참조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입교생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 



Q&A

Q 여러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동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개 청창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 청창사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역별 중점 지원 대상 및 지원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필요한 청창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선정절차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 모델 및 사업화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 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이어드림 스쿨)

사업개요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교육인원	200명(대면 50명, 비대면 150명)	200명 내외(전국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
교육장소	서울 및 온라인	서울 및 거점 지역으로 확대
교육내용	기초교육 전공생·비전공생 동시 진행 취업 교육 중심	기초 역량 평가 후 수준별 맞춤형 분반 운영 취업 + 창업 맞춤형 교육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학력·전공 무관)

신청제외 대상

-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 (단, 전 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4년 교육과정 및 실전 프로젝트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집중 운영
 - 공통기초 : 교육 참여자의 IT 활용 수준에 따라 기초반과 실습반 분반 운영
 - 공통심화 :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범용 AI 교육을 확대하고, 기초·심화 간 연계성을 높인 응용 AI 교육과정으로 고도화
 - 인공지능 특화교육 : AI분석가(업무자동화 실무적용, 데이터분석), AI 서비스개발자(프론트·백엔드 학습, CI·CD 등)
 - 인턴십 연계 프로젝트 : AI 전문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현업 수행형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고, 종료 후 채용 매칭을 연계
 - 산업특화 실전 프로젝트 : 캐글 플랫폼 기반 모의·실전 경진대회 참가 및 산업특화 연계 프로젝트 실습
 - 우수교육생 지원 프로그램 : 우수·취업인재에게 자기계발포상금·국외연수 지원, 성실인재 식대, 교통비 지원 등
- 지원규모 : 200명 내외(전국 청년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
- 지원금액 : 총 사업예산 29억원('26년 안)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교육생 모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민간 사이트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서류심사 → 적성검사 → 심층면접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상식평가 및 역량 면접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2, (이메일) jy1480jy@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 02-2130-1418~9, (이메일) jbhan@kosme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청년인재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 



Q&A

Q IT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업에 선정되면 교육비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A 교육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교육비용은 내실 필요 없이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캐글(Kaggle) : 전세계 AI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AI경진대회 플랫폼 (190여개국 300만명 참여)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개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SW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베트남 SW인재 발굴 및 적기 매칭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베트남 현지 대학 졸업(예정)자 및 현지 구직자 200명	AI·SW분야 해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교육반/취업반 2-track 프로그램	베트남 SW 전문인력 취업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AI·SW분야 해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우대사항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기술 혁신 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제출한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 역량, 경력 사항, 직무적합도를 검증하여 취업매칭

〈 베트남 SW인력 채용형태 〉

구분	근무형태
리모트인턴십	현지 운영사 오피스 공간에서 근무
현지 재택 근무	베트남 개발자가 본인의 자택에서 원격으로 근무
국내채용	국내 근무지로 직접 출근하여 근무
현지채용	베트남 현지 근무지로 직접 출근하여 근무

〈 현지 취업매칭 주간 프로그램 운영 〉

- (해커톤) 기업과제 연계형 해커톤을 개최하여 비즈니스 과제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우수 인재에 대한 취업연계 진행
- (현지 채용박람회) 채용 수요기업 대상 베트남 현지 채용 면접 및 리모트인턴십 근무 환경 점검을 통해 사업 신뢰도 증진
- (컨퍼런스) 한국 IT 분야 채용 트렌드 이해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제공과 채용 기업 소개 및 네트워킹을 통해 매칭 성공률 향상
- 지원규모 : 200명
- 지원금액 : 총 사업예산 1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신청서(구인분야, 연봉 조건 등 포함)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2, (이메일) jy1480jy@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 031-490-1368, (이메일) hero@kosme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Q&A

Q

베트남 개발자 채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단의 사업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연락 주시면 채용 풀에 등록하여 취업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베트남 개발자의 개발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SW 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코딩 테스트, 심층면접 등을 거친 검증된 우수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창업저변 확대

- 2-1 청소년비즈쿨
- 2-2 창업에듀
- 2-3 도전! K-스타트업
- 2-4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 2-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2-6 창업지원포털(K-Startup)
- 2-7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청소년 비즈쿨

사업개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 관련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초·중·고교 및 지원센터 등

- 초·중·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12조),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3·4·6조)
-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 영재학교(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모집내용(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원조건 :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 역량 보유 기관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 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고등학교) 보급, 비즈쿨 교재(초·중·고)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 지원규모 : 423개 비즈쿨 기관(운영형 220개, 체험형 203개)

구 분		기 능
운영형 비즈쿨 (비즈쿨 프로그램 직접 수행)	일반 비즈쿨	교재교육, 창업동아리,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거점 비즈쿨	일반 비즈쿨 기능 + 권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권역에 전파
체험형 비즈쿨 (외부 기관의 비즈쿨 프로그램 체험)		소속 청소년에게 비즈쿨 프로그램 체험지원

- 지원금액 : 61.6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운영 계획서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수행 의지, 인프라, 기관별 특장점 등
- 추진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956
- 창업진흥원 기업가정신팀 : 044-410-1963, 1951, 1957

참고사항

- 공고명 : '25년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2025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공고)
 - (홈페이지) | 



창업에듀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창업 교육포털로 900여개의 창업강좌 서비스를 무료 제공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지원내용

-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창업에듀 이용자의 온라인 창업교육 편의성 강화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창업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창업교육 콘텐츠 900여개를 무료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신청·접수

- 창업에듀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 신청 가능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1, 19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도전! K-스타트업

사업개요

범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시상 및 후속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 저변 확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자(팀)
 - ※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 이력은 창업 업력에 기산하지 않음

신청제외 대상

-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입상 제외)
- ▶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 기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내용

- 상금 : 14억원 내외, 20팀(최대 3억원 내외)
- 상장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20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부처 통합공고 후 부처별 예선리그 개별 공고 → 예선리그별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예선리그별 제출서류
- 추진절차 : 부처별 예선리그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 '26년도 대회 운영 내용 〉


구 분	'25년
예선리그	혁신창업리그(일반), AI리그, 연구자리그, 학생리그(도약, 유학생), 국방리그, 스포츠리그, 관광리그, 콘텐츠리그, 환경리그, 여성리그, 부동산신산업리그, 지식재산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통합본선 진출	225팀 * 예선리그별 통합본선 진출 TO 상이
왕중왕전 진출	3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5팀) ※ 최종 수상 2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0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
(전화) 044-410-1717, 1783, (이메일) challengeK@kised.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도전! K-스타트업 2025』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도전! K-스타트업 2025』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검색
 - (홈페이지)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사업개요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대륙·시장권별 해외전시회에서 K-Startup 브랜드를 활용한 전시 참가 및 현지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을 진행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예외사항) 신청·접수일 내 ①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기업) 또는 ②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 (예외사항) 신청·접수일 내 ①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②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기업), ③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기업), ④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기업)

-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참가 지원 전시회별 상이
 - ① 전시 부스 : 참여 전시회별 K-Startup관 내 전시 공간 부스 지원
 - ② 역량강화 프로그램 : 전시회별 글로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참가 지원 전시회별 상이

〈 (예시) '25년도 참가지원 전시회별 지원 규모 〉

구분	Startup Mahakumbh	VIVA Tech	SWITCH	BIBAN	CES 2026
국가	인도(뉴델리)	프랑스(파리)	싱가포르	사우디(리아드)	미국(라스베가스)
지원규모	11팀	19팀	31팀	31팀	81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전시별로 상이(모집공고 확인)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http://www.k-startup.go.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글로벌진출 준비정도, 글로벌 성장 가능성, 참여 전시회 적합성 등

- 추진절차 : 전시회별 참여기관 모집공고 → 참여기관별 개별 선발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 →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전시회 참여 → 성과공유 네트워킹
- K-Startup통합관으로 운영될 경우, 전시회별 참여기관(유관기관)에서 직접 전시회 참여기업 선정 예정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글로벌협력팀)
(전화) 044-410-1713, 1712, 1724, (이메일) gek@kised.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2025년도 K-Startup 통합관 참여기관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K-Startup' 검색

- (홈페이지)



- 공고명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Startup Mahakumbh 2025 참가기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Startup Mhakumbh' 검색

- (홈페이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개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신청제외 대상

- ▶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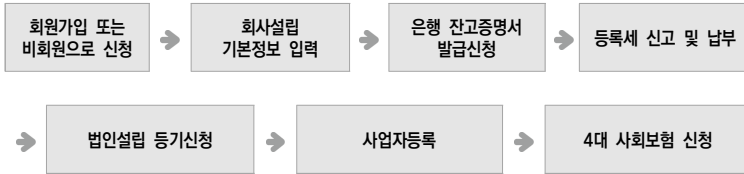
지원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대법원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사회보험센터(4대사회보험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

처리절차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디지털AI실) : 044-410-1655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 참조 (www.startbiz.go.kr)



창업지원포털(K-Startup)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 시설 및 공간 등 창업 정보를 통합 제공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대국민

지원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준비(대국민)
 - ② 예비창업(예비창업자)
 - ③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④ 창업도약(3~7년 기업)
 - ⑤ 재창업(재창업자) 등 사용자 정보 기반 맞춤 정보(사업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등) 제공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단계별(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및 실무(유통, 마케팅, 세무, 회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 지도 기반 창업지원사업 및 주관기관, 입주공간 정보 제공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대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디지털AI실) : 044-410-1652~9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 참조(www.k-startup.go.kr)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개요

- 신청자격 :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지원내용 : ①스타트업이 기업운영 중에 겪는 애로사항 상담 지원, ②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 유용한 정보 제공
 - * 상담분야 : 법률, 세무·회계, 일반경영, 해외진출, 정부지원사업, 창업공간, 창업행사 등
- 지원절차 :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 → 상담 진행
 - * 온라인 센터는 K-스타트업 지원 포털(www.k-startup.go.kr) 내 개소 예정('26.1분기)

〈 상담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
- 제출서류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처
 - (오프라인)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위치)
 - (온라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 '26.1분기 개소

문의처

- 전화상담 : 1357 + 4(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17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참고사항

- 지역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이용안내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내 검색
 - (홈페이지)



제 3 장

창업지원 인프라

- 3-1 창조경제혁신센터
- 3-2 창업존 운영
- 3-3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3-4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 3-5 메이커 스페이스
- 3-6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3-7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개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 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 상이

신청·접수

- '26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센터별 운영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과) : 044-204-7675, 7677
- 창업진흥원(지역전략실) : 044-410-1802, 1881, 192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30-3400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00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364-9132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6380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창업존 운영

사업개요

Data·Network·AI 등 미래 유망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 공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기업 입주공간 지원 및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등 보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12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입주공간 발생 시 공고)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계약체결 및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044-204-7678, 7675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 044-410-1927, 1889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 「판교 창업존」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경로) 판교창업존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홈페이지)





Q&A

Q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언제 게시되나요?

A 입주공간 발생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가 게시되며, 모집 규모와 시기는 연도별로 상이합니다.

[참고] 지난 입주공고 시기

- '25년 : 3월 초 공고, 4월 초 선정
- '24년 : 3월 말 공고, 4월 초 선정
- '23년 : 10월 말 공고, 11월 말 선정

Q 입주 가능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A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 연장평가 항목('25년 기준)

- 창업존 활용 및 참여도
- 입주 후 성과
- 지원 필요성 및 향후 계획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개요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전국 24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전국 24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문의처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사)한국창업보육협회(창업혁신추진단)
신청제외 대상	-	*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일 경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시점 이후 6개월 이내 창업해야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추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희주점업
 - 무도유희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일 경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시점 이후 6개월 이내 창업해야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내용

-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교육·창업 공간·보육 등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분 야	내 용
발굴	• 대기업 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을 위한 실천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 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 지원규모 : 전국 24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의 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전화) 044-204-7667, (이메일) 03hyeon@korea.kr
- (사)한국창업보육협회(창업혁신추진단) : 042-346-9622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 (경로) K-startup 창업지원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중
- (홈페이지)



Q&A

Q 외국인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체류자격자에 해당이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등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규모	전국 43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국 40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문의처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사)한국창업보육협회(창업혁신추진단)
신청제외 대상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창업해야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시점 이후 6개월 이내 창업해야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신청제외 대상

-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시점 이후 6개월 이내 창업해야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개인데스크, 편의시설 등) 제공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사업 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교육-멘토링	•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워킹	• 지역별·업종별, 입주·졸업 기업 간, 1인 창조기업-우수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 지원규모 : 전국 40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전화) 044-204-7667, (이메일) 03hyeon@korea.kr
- (사)한국창업보육협회(창업혁신추진단) : 042-346-9622
-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경로) K-스타트업 누리집
 - (홈페이지)



Q&A

Q 1인 창조기업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1인 창조기업 센터에서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근거하여 확인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개요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제조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메이커 문화 확산과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제조 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인프라 : 메이커 스페이스에 구축된 시설(작업실 등)과 장비(3D 프린터 등) 지원
- 프로그램 : 메이커 및 제조창업에 대한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등 지원

신청·접수

- '26년 연중 수시
 - 제조생산 종합플랫폼 '메이크올' 누리집(www.makeall.com)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시설, 장비를 확인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메이커 스페이스별 신청 방식 상이)

문의처

- 중소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전화) 044-204-7672, 7606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전화) 044-410-1802, 1958, 1961, 1962
(이메일) makerspace@kised.or.kr
- 메이커 스페이스 누리집 : [메이크올\(www.makeall.com\)](http://www.makeall.com)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사업개요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예비)창업자에 사업 공간, 기술·경영 멘토링 등 지속 성장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입주공간 및 보육센터별 창업 지원프로그램
- 입주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내(연장가능)

구분	세부내용
기술부문	기술개발,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 장비지원, 애로기술 해결(전문가), 기술이전 및 평가 등
경영부문	재무·세무·회계 교육지원, 경영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수립, 시장조사, 판로, 마케팅, 해외판로 지원, 특허지원, 경영애로 해결(전문가), 법인 및 공장설립지원, 등

구분	세부내용
행정부문	업무공간 제공 및 관리, 사무장비(팩스, 복사 등) 지원, 회의실, 휴게실 제공, 입주·졸업기업 간 네트워킹, 행정애로 해결(전문가) 등
자금부문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자금 정보제공, 투자(IR) 연계 지원 등

- 지원규모 : 전국 239개 창업보육센터, 5,600여개 창업기업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창업보육센터별로 상이)
- 신청방법 :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www.smes.go.kr/binet), 창업보육센터별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의 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전화) 044-204-7667, (이메일) 03hyeon@korea.kr
- 한국창업보육협회
(전화) 042-346-9621, (이메일) chslee@kobia.or.kr
- 공식홈페이지(www.smes.go.kr/binet)

참고사항

- 센터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상세정보 확인 가능
 - (경로) BI-N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주요모집공고
 - 입주기업모집
 - (홈페이지) | 



Q&A

Q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입니다.
(연장 가능)

용어 설명

BI : Business incubator 창업보육센터의 약칭으로 예비창업자를 일정 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장(인프라)를 제공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사업개요

외국인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 정착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통해 한국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7년 이내의 외국인 창업가 및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

지원내용

- GSC 지원 세부내용 : 공간 지원, 1:1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창업비자 등
 - 업무 공간 : 코워킹 스페이스(상시 운영) 및 미팅룸(예약 운영) 제공
 - 행사 등 개최 : 외국인 창업관련 이벤트 및 네트워킹 지원
 - 1:1 컨설팅 : 거주/비자/법인설립/은행/기타 분야별 상담, 교육 및 행정 서비스 대행 등 제공
 -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시그니처 프로그램, 특허교육 워크샵, 피칭 클리닉 등
 - 창업비자 지원 : 오아시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등

참고사항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공간구성 : 상담창구, 코워킹 스페이스, 이벤트홀, 컨퍼런스룸, 미팅룸, 휴게공간 등

제 2 부



재도전기업 지원



제4장 ▶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4 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진로제시 컨설팅

4-2 회생 컨설팅

4-3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4-4 구조혁신지원사업



진로제시 컨설팅

사업개요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지원대상

-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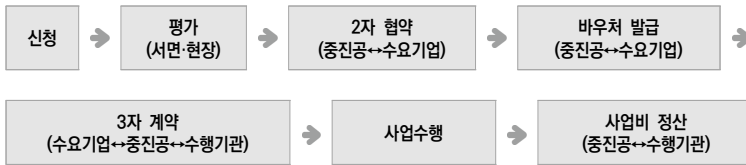
- 지원규모 : 355개사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자부담율 10%
- 지원 세부내용
 - (기초진로제시 컨설팅) 전문가가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공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거 실패 분석을 통해 성공적 재기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기업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정리 지원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
기초 진로제시 또는 재창업자 컨설팅	재무 분석	3MD	180만원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사업정리	3가지 전문분야* * 세무/노무/법무분야	분야당 1~2MD	총 360만원 (분야별 120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동의서 등
 - * 홈페이지(www.mssmiv.com)에서 신청서 등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4, (메일) ljh150@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4, 9626, (메일) lee03006@kosmes.or.kr



Q&A

Q

진로제시 컨설팅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A

모집공고 후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입니다.



회생 컨설팅

사업개요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절차 진행 등을 지원(워크아웃의 경우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비용 지원)

지원대상

- 회생 컨설팅 : ①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또는 ②일반·법인회생 신청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Pre-회생 컨설팅 : 업무 제휴법원에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기업 중, 제휴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 개인회생 컨설팅 :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기본증위소득 125% 이상인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완료보고서 제출 전)인 기업
- ▶ 최근 5년간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워크아웃 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70개사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자산 규모에 따라 자부담율 차등 적용(10%~)
- 지원 세부내용
 - (회생, Pre-회생, 개인회생) 회생 신청부터 회생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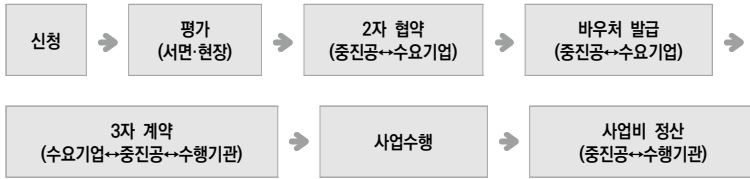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재무·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신청서 ■ 심문답변서 ■ 채권목록표 ■ 시부인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안 ■ 2차 집회서류 ■ 회계세무 자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관련 전반적인 조력(채권자+법원 연결 역할) 	

- (워크아웃) 워크아웃 관리절차 개시 및 연장에 필요한 실사 및 자구계획 수립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동의서 등
 - * 홈페이지(www.mssmiv.com)에서 신청서 등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4, (메일) ljh150@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4, 9627, 02-3211-5611
(메일) lee03006@kosmes.or.kr



Q&A

Q

희생컨설팅 기업분담금은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A

업체규모별로 기업분담금 비율이 상이합니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사업개요

중진공과 협약 은행*·투자기관(벤처캐피탈, PE)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촉진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대상

- 아래 유형①~②에 해당하는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구분	유형 ① 협약은행 추천	유형 ② 투자기관 추천
지원대상	중진공 및 협약은행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당해 구조개선 목적의 투자유치* 예정 또는 완료 위기징후 중소기업
	* 당해 협약은행 신규대출 완료 또는 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조건 적용제외	* 벤처캐피탈(VC), PE 등 투자자가 구조개선 목적으로 지분투자, 출자전환 등을 하는 경우
자격요건	위기징후	(중진공) 조기경보등급 주의·예비경보 (단, 중진공 신용위협등급 최하위 등급(CR13) 기업 제외) 또는 (은행권) 기업신용위협평가 B·C등급 또는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BB~CC등급
	업력/형태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권리침해/채납	가압류, 세금채납 등 권리침해 및 채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사의견	최근 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용자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공고 상 용자제한기업 미해당

* 세부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중진공과 협약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신규대출,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구분	지 원 내 용
금융지원	신규대출 시설(10년, 60억원 한도)·운전(5년, 3년간 15억원 한도(연 10억원 한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금리조정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 수립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약 금융기관(채권은행·투자기관)의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 지원규모 : 용자예산 1,516억원 예정 (구조개선자금 內)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25년 12월 22일
- 신청방법 :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및 협약 금융기관 상담 (상시접수)
- 추진절차 : 금융기관, 중진공(지역본·지부) 등 기업 상담·추천 → 사전검토 →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 사전협의 → 현장실사 →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 최종협의 → 지원결정 → 기업지원 → 이행점검

절차	내 용	비 고
상담·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상담 후 자격요건 부합 기업을 중진공(기업개선팀)에 추천 - 기업의 경영애로 상황, 기업신용평가등급, 업력 및 기업형태, 사업장 등 권리침해 및 세금 체납 여부, 감사의견 등 확인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등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 사전검토 - 정상화 가능성(재무개선 전망, 연체기록, 차입금 수준, 금융기관 공동지원 여부 등), 성장잠재력(혁신업종, 인종·특허·R&D 등), 정책 우선도(고용 수출 등) 종합 검토 	중진공 (기업개선팀)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은행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중진공

절 차	내 용	비 고
사전협의	- 채권잔액을 보유한 모든 협약 금융기관에 중진공 금융지원 예상 내역 등 사전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기업개선팀)
↓		
현장실사	• 구조개선진단(약식)-경영개선계획 수립(심층) 및 지원타당성 평가 - 기업 경쟁력 및 경영예로 원인 분석, 재무분석, 정상화 계획 검토-제시,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청산·계속가치) 실시	중진공 (지역본·지부) 회계법인
↓		
금융기관 최종협의	• 협약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최종협의 -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와 최종 중진공 금융지원 예정내역을 협약 금융기관에 공유하고,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최종확인	중진공 (기업개선팀)
↓		
지원결정	• 금융지원 최종 지원결정 -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등
↓		
기업지원	• 지원결정 내용 실행 - 신규대출 약정,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 등 진행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등
↓		
이행점검	• 정상화계획 이행현황, 경영성과 등 점검	회계법인 진단전문가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1, (메일) mashall98@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기업개선팀
(전화) 055-751-9922~7, (메일) mksong@kosmes.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및 협약은행 각 지점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정책자금
용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구조개선전용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홈페이지)





구조혁신지원사업

사업개요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사업·신기술 일자리로의 전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진단, 컨설팅,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도박, 향락, 건강유해 등)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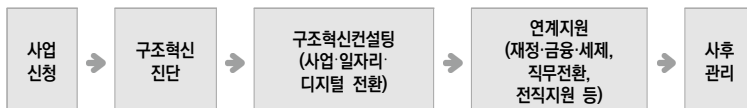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구조혁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유형별 전문가를 통해 구조혁신 이행계획(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구분	내 용
사업전환	· 기업역량, 재무진단, 사업모델 전환, 원가·물류 프로세스 혁신 등
산업·일자리전환	·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디지털전환	· 디지털화 수준, 내부역량, 단계별 개선전략 및 실행과제 등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재정, 금융, 세제, 직무전환, 전직 등 지원(신청·선정 기준은 각 사업별 공고 및 규정에 따름)
 - * 사업전환계획 승인(사업전환자금 융자),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등
- 지원 규모 : 구조혁신 진단 1,000개사, 구조혁신컨설팅 690개사 내외
 - * 진단, 컨설팅의 기업 부담금 없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분기 내 사업공고 예정
- 신청방법 : 구조혁신지원사업(www.kosmes.or.kr/3t)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2, (메일) 22mrj@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전화) 055-751-9702, (메일) 85choihs@kosmes.or.kr
-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www.kosmes.or.kr/3t)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Q&A

- Q** 컨설팅 분야별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 A** 사업전환(디지털 전환)과 산업·일자리전환은 분야별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Q** 본 사업의 신청시 기업부담금이 있나요?
- A** 진단 및 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기업부담금은 없습니다.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3 편



제1편

중소기업

- 제1부 > 금융 지원
-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 제3부 > 인력 지원
- 제4부 > 판로 지원
- 제5부 > 수출 지원
-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탄소중립 지원

제2편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 제1부 ▶ 소상공인
- 제2부 ▶ 전통시장
-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4편

공통사항

- 제1부 ▶ 기타
 -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 부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소 및 연락처

제 1 부



소상공인



제1장 ▶ 교육,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제2장 ▶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제3장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4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 장

교육,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 1-1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 1-2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1-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1-4 로컬브랜드 창출
- 1-5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 1-6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 1-7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 1-8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사업화 지원금, 보육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500명 내외	550명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지원조건 : 예비창업자
- 우대사항 : 로컬컨텐츠 중점대학, 장인학교 수료자 등 우대

신청제의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업종불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하는 사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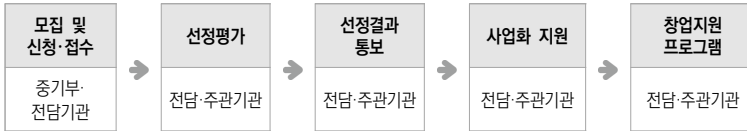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
 - (창업역량강화) 창업아카데미와 미니피칭대회를 통한 업종별 심화 과정 운영 및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수시 실시
 - (사업화 지원)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
 - (정책자금)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직접대출) 연계(최대 1억원)
- 지원규모 : 총 550명 내외
- 지원금액 : 225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온라인작성),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 선정 후,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등 신청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서류심사 시,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장성, 발표심사 시, 사업화 가능성, 창업 아이디어,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축진과 : (전화) 044-204-72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69, 7726, 7738, (이메일) bm@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Q&A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개요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여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220개사 내외	24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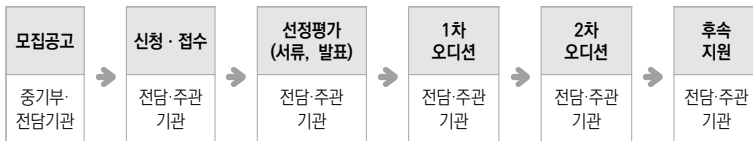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팀빌딩 프로그램 및 사업모델(BM) 고도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팀빌딩) 스타트업, 창작자 등 사업 수행 시 협업할 전문 파트너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과 사업 관련 경영, 마케팅 등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신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24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231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자격 요건확인,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 등 확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축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23, 7737, 7723
(이메일) strong@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Q&A

Q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기업가 정신, 장인 정신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작자, 스타트업 등 전문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모델(BM)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개요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230개사 내외	28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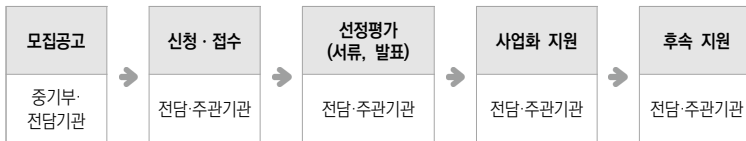
-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화 자금(로컬크리에이터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8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86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서류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개인(지역성·성장가능성), 협업 및 브랜드(협업성, 성장가능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축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35, 7736, (이메일) local@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협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Q&A

Q 로컬크리에이터(개인)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와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가 다른 데 이런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상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와 다르다면 해당 지역자원을 기준으로 해당 권역(주관기관)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고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용어 설명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 지역의 자원·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개요

골목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등이 상호간의 사업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8개팀	10개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표 기업이 되어 대표기업 포함 3개사 이상 팀을 구성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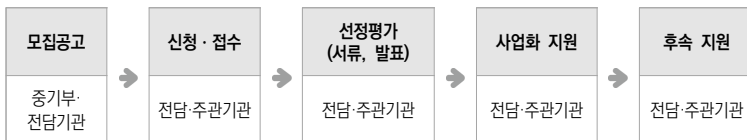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업간 연계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골목상권 BI 제작, 환경개선·디자인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0개팀 내외
- 지원금액 : 24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서류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계획, 지속 가능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축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35, 7736, (이메일) local@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개요

소상공인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민간자금 연계를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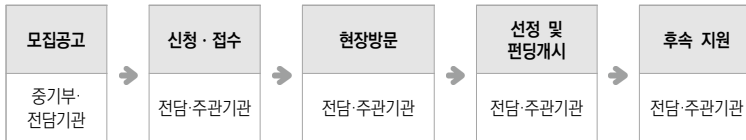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 코칭, 크라우드펀딩 오픈·홍보 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지원유형 :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

- 지원규모 : 1,333개사 지원
- 지원금액 : 40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신용심사 또는 사업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 클라우드 펀딩유형별 선정평가 방식 상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자격 요건확인,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 등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축진과
(전화) 044-204-7285, 7830
(이메일) kimdu9424@korea.kr, cy4733@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24, 7725, 7740, (이메일) fun@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Q&A

Q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유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교육,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어 설명

크라우드펀딩 : 자금 조달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들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BM(Business Model) :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사업개요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브랜딩·마케팅·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 기획자·VC 등)가 선 투자 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300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전문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사업모델의 혁신성 등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24, 7725, 7727, 7740
(이메일) lips2@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홈페이지)



Q&A

Q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중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자가 선 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개요

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업무 효율화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AI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AI 활용 교육 및 AI 전문 멘토(기관)과의 멘토링, 실전모델 적용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규모 : AI활용교육 2,000명, 사업화지원 680여명
- 지원금액 : 144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월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AI 도입 필요성, 활동성, 사업모델의 혁신성 등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축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35, 7736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2026년 신규사업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개요

유망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 연결하여 소비재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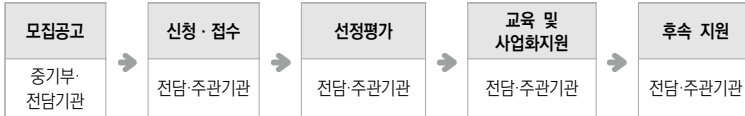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수출형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패키징·디자인 등의 개발·개선 지원

- 지원규모 : 100개사
- 지원금액 : 95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월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수출 성공 가능성, 활동성, 사업모델의 혁신성 등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전화) 042-363-7727, 7737, 772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2026년 신규사업

제 2 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 2-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 2-2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2-3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2-4 지역소공인육성(舊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 2-5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2-6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
- 2-7 지역상권 육성(글로벌 상권)
- 2-8 지역상권 육성(로컬거점 상권)
- 2-9 지역상권 육성(유망 골목상권)
- 2-10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 2-11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 2-12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지원 (TOPS)
- 2-1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2-14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 협업 추진주체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지원유형	상권형, 산업형, 조합형	공동사업, 판로지원
신청요건	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 요건 확인	사업 선정 시 소상공인 요건 확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 * 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지원조건 :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단계별(성장, 도약, 혁신성장) 신청
- 우대사항 : 청년, 여성, 장애인, BM경진대회 수상이력 등

신청제외 대상

- ▶ 휴 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및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공동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20% 내외 협동조합 자부담 필수)

지원구분	지 원 내 용
공동장비	•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공동일반	• 공동사업을 위한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등 지원
판로지원	•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개최, 박람회 참여 등 판로 확대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

- 지원규모 : 협동조합 8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68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말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가점 증명 서류 등
- 선정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비즈니스모델, 조합역량, 사업지속성, 협동조합 가치확립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서류검토 → 현장검증(해당 시) → 발표평가 및 선정심의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전화) 044-204-7883, (이메일) mimemy2@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전화) 042-363-7922, (이메일) coop@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 (경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 공동사업 > 모집공고
 - (홈페이지) | 



Q&A

Q '25년 설립 조합으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25년·'26년 설립 조합이라면, 매출액 유무와 관계없이 '성장단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개요

제품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 바우처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국비 보조율 80%	국비 보조율 70%
바우처확대	-	해외특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조건 : 국비한도(업체당 18백만원) 내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시회참가, 마케팅, 매장입점 지원 등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마케팅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국내·외 콘텐츠 제작지원(카달로그, 리플릿, 영상제작, BI·CI 개발 지원 등)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해외특화	• B2B 플랫폼 입점지원, 제품현지화, 통번역지원, 국제물류비, 무역보험, 컨설팅 등

- 지원규모 : 약 290개사
- 지원금액 : 66.9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26.1월)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촉진단 : 044-204-7882, 72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5, 7917, 7919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Q&A

Q 소공인 판로개척 바우처 항목 중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18백만원 한도 내, 바우처 판로지원항목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바우처지원 : 전시회 참가, 마케팅, 매장입점, 해외특화 등 각 지원항목을 뜻하며, 최대 18백만원 한도 내 필요항목 자율선택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한도	중대재해 : 최대 700만원 일반 : 최대 420만원	최대 700만원
지원유형 신설	-	(산업안전 박람회) 안전 장비 제조 소공인의 산업안전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및 제품 홍보 추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조건 : 국비 한도 내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산업안전 박람회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최대 7백만원, 국비 70%)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동사업 기수혜자,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중대재해 등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 (장비교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7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에너지 효율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바탕으로 인식 개선 및 실천 교육 • (장비교체)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 지원 		
산업안전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장비 제조 소공인의 국내·외 산업안전 박람회 참가 비용 지원 (부스 사용료, 집기 임차료 등) 	350만원 이하	150만원 이상

* 국비 한도 내, 교육비용 공단 별도 지원

- 지원규모 : 약 1,800개사
- 지원금액 : 126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26.1월)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축진단 : 044-204-7882, 7297
-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4, 7906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신청 >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



Q&A

Q 3년 전에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 불가능합니다.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 번만 지원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지역소공인육성(舊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와 소공인 협업 등 지원을 위한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구축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화지원센터)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 각 센터는 소관 집적지 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을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소공인 집적지 요건 미충족 지역 및 소공인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부적합한 영리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특화지원센터)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
 -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 (복합지원센터)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공용장비)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가공, 계측·검사 등 장비 도입

* (전시·판매장) 고객, 바이어 대상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체험 공간 등 조성

- 지원규모 : 복합지원센터 신규 1곳(2년간 25억원 이내)
특화지원센터 40곳 내외(센터당 3.2억원 이내)

신청·접수

① 특화지원센터

- 특화지원센터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상반기)
- 센터별 지원대상(소공인) 모집 : 센터 별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시기 상이
 -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해당 소공인지원센터에 문의
 - * 신청 및 제출서류 : 각 지원센터별 신청방법 문의

② 복합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상반기)
 - * 단, 예비공모 미신청 지자체는 본공모 신청불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 044-204-7882, 7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 042-363-7908, 042-363-7909
- 특화지원센터별 문의처 :
<https://www.sbiz24.kr/#/cmmn/gnrl/Confs/70>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운영기관 모집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 검색
 - (홈페이지) |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소진공 공고조회 > '2025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신규 운영기관 모집' 검색
 - (홈페이지) | 
- 공고명 : 2025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모집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2025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검색
 - (홈페이지) |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5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 



Q&A

Q 지역별 소공인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공인지원센터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은 각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 과정의 수강 대상은 소공인, 소공인 사업장 근로자, 예비소공인(창업예정자), 소공인 사업장 근로 희망자(취업예정자)입니다.

Q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 신청은 지자체만 가능한가요?

A 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며, 복합지원센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공인은 각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개요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을 디지털 기술(IoT, AI 등)과 접목하여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축 등을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1,800개사 내외	2,000개사 내외
지원내용	H/W 및 S/W 임차지원	H/W 구매지원, S/W 임차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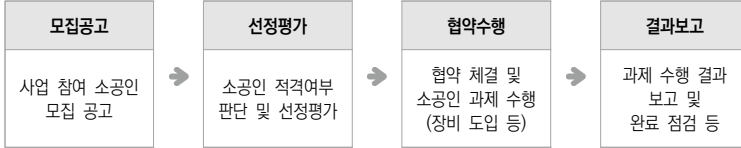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그 외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세부내용 등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하드웨어(H/W) 구매비, SaaS형 소프트웨어(S/W) 임차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국비 70%, 자부담 30%)
- 주요 사업절차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2월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2, 7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2, 7913, 7914, 79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개별형)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개별형)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Q&A

Q 기존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수혜 소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24년~'25년 수혜 소공인은 불가능합니다. 수혜소공인은 협약종료 후 2년 동안 도입기술 의무사용기간을 명시한 바, 신청 불가능합니다.

Q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구입이 가능한가요?

A 하드웨어는 가능합니다. 스마트화를 위해 도입하는 하드웨어(장비)는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는 임차지원으로 구입 불가)

용어 설명

IoT : '사물인터넷'을 칭하며,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

사업개요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 (백년가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소공인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 기타 사행성 업종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부합하지 않아 중기부장관이 시행계획에 공고한 경우

지원내용

- 백년소상공인 현판 및 지정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정책사업 우대 트랙 개설 등 연계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홍보활동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및 현판제공, 소개집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판로지원	공공·민간 협력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연계지원	중기부 내 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가점 부여, 별도트랙 신설 등 우대 * 강한소상공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공인 판로지원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소공인성장축진단 : 044-204-7280, 729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5, 7906
- 소상공인24(www.sbiz24.kr)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단, 지원자격 등 세부지원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26년 사업공고 내용 확인 필요
- 공고명 : 2025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백년' 검색
 - (홈페이지) | 



Q&A

Q

백년소상공인 신규 모집의 구체적인 모집 시기가 궁금합니다.

A

2026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게시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

백년소상공인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통칭하는 용어



지역상권 육성(글로벌 상권)

사업개요

국내외 관광객이 이동·숙박·식음·체험 등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벌 상권 조성을 위해 글로벌 브랜드 개발, 앵커스토어 육성 등 집중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인바운드 관광 경쟁력 있는 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지원내용

- 관광·문화·역사 등 K-컬처를 상권과 결합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체험·소비하는 글로벌한 상품으로 개발 및 고도화 지원
 -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상권의 앵커스토어를 육성하고 로컬창업·유입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방문객 편의 제고 등 종합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6곳 내외 (예산 150억원)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4, 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603, 7929, 7610
-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중소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 2026년 신규사업



Q&A



상권 컨소시엄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상권육성 전문법인, 로컬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법인 등)과 지방정부, 상인·주민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육성(로컬거점 상권)

사업개요

지역의 특화산업·제조업 등과 접목한 로컬콘텐츠 개발, 상권 브랜딩 등을 종합 지원하여 지역경제와 로컬의 거점상권으로 조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보유한 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지원내용

- 지역특색(특화산업·제조업 등)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및 특화상품 개발,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상권 브랜딩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상권 방문 매력도 제고를 위한 공간 재생·활성화, 소상공인·방문객 거점 조성, 상권환경 개선 등 종합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10곳 내외 (예산 100억원)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4, 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603, 7929, 7610
-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중소기업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 2026년 신규사업



Q&A



상권 컨소시엄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상권육성 전문법인, 로컬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법인 등)과 지방정부, 상인·주민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육성(유망 골목상권)

사업개요

상인 조직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생적 기반이 부족한 중·소규모 골목상권의 협동조합 결성 등 공동체 조직화와 역량강화, 골목 브랜딩·마케팅을 종합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조직화 기반 구축이 가능하고 골목의 정체성·콘텐츠·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골목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지원내용

- 골목상권의 상인조직 설립, 협동조합 결성,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 조직화 지원으로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골목 브랜딩, 골목환경 개선, 현황분석·진단을 통한 상권 발전방안 수립 등 유망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50곳 내외 (예산 125억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창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5, 788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603, 7929, 7610
-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중소기업창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참고사항

- 2026년 신규사업



Q&A

Q

골목상권 컨소시엄이란 무엇인가요?

A

사업을 수행할 상인조직과 지방정부, 로컬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사업개요

민·관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데이터 확보·연계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구축·운영하여 준비된 창업과 경영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제공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내용	상권분석, 경영진단, 트렌드 정보, 소상공인 통계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 고도화 및 상권정보 통계 정보 제공 확대(7월~)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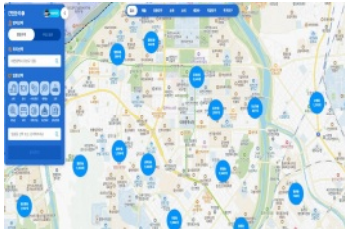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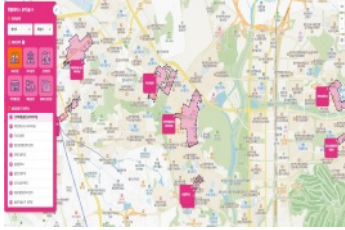

- 소국민(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담당자

지원내용

- 준비된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 상권정보 및 사업장별 경영진단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 구축
 - (상권분석) 선택 영역별(발달상권, 행정동 등) 매출, 인구, 배달, 업종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경영진단) 소상공인별 비즈니스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여 경쟁력, 생존가능성, 성장전망, 고객관심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 (트렌드) 빅데이터 기반 핫플레이스 테마 상권, SNS 트렌드 등 최근 이슈 정보 및 축제, 관광 등 소상공인 관심정보 제공
- (소상공인 통계)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현황을 실시간 변동이 가능하도록 시각화하여 제공
- (AI 챗봇) 소상공인이 상권정보 및 지원정책을 자연어로 질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AI기반 대화형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서비스 〉

상권분석	경영진단
	
트렌드	소상공인 통계
	

AI 챗봇

(AI 정책정보)	(AI 상권정보)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빅데이터실
(전화) 042-363-7569, 7546, 7547
(이메일) bigdata@sema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이용방법

- (PC·모바일) 소상공인365 홈페이지(<https://bigdata.sbiz.or.kr>)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사업개요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활성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년과 동일
지원내용	(신규)	해외물류 지원 사업 신설(도약단계)
신청접수	세부사업별 개별 모집·접수	메뉴판 방식 운영을 통한 일괄 신청(실전단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대사항 : 백년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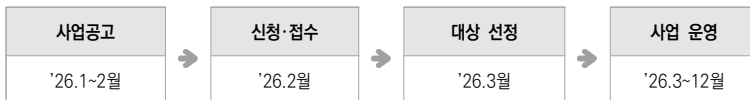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 (단 해외 OEM 제품을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준비단계)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수준 고려, 온라인 성장단계별 교육 지원(1:1 교육, e러닝 등)
 - (실전단계) 제품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SNS 활용 온라인 홍보 등 마케팅 지원 및 국내 온라인 채널 입점 등 온라인 판매 전 과정 종합 지원
 - (도약단계) 국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 입점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까지 수준·단계별 지원
 - (기반구축)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연계 O2O 판매 지원
 - (O2O 융합기획전) 소비 촉진 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연계 기획전 등 소비 진작 행사 운영
- 지원금액 : 총 78,719백만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2월 예정
- 신청방법 :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및 소상공인24(www.sbiz24.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자격검증) →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참여 의지, 상품 시장성, 사업 적합성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전화) 044-204-7282, 7877, 7281, 7876
 - (이메일) hebegins@korea.kr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디지털기획팀)
 - (전화) 02-6678-9354, 9353
 - (이메일) sinkh25@kodma.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디지털지원실)
 - (전화) 042-363-7822, 7825, 7826
 - (이메일) online@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온판 상담소(1899-0309)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통합공고
 - (경로) 판판대로, 소상공인24 > 사업공고·신청 >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 



Q&A

Q 모든 사업에 제한없이 참여 가능한가요?

A 실전 단계 사업은 공고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지원물량에 제한이 있는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지원'과 지역별 모집 예정인 '플랫폼 MD상담회'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
- '25년까지 3개년 연속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27년부터 지원 가능(4년 연속 지원 제한)

Q 신설되는 해외물류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이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해외에 판매를 하는 경우,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물류업체가 상품의 보관·재고관리, 주문처리, 포장·배송·통관, 반품·교환 등 모든 과정을 대행

용어 설명

라이브커머스 :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형태

MD(상품기획자) : 유통채널(인터넷 쇼핑물, 대형마트, 홈쇼핑 등) 소속으로 상품의 기획·구입·진열·판매 전반을 운영하는 책임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지원 (TOPS)

사업개요

민간 플랫폼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장의 판매 스타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단계별 마케팅·판촉 등을 지원하여, 소기업으로 성장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규모	3,000개	3,500개
우대사항	국내공장을 보유하고, 생산된 제품 보유	국내 상표권 등록된 자사브랜드 보유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 지원조건 : 온라인시장 내 브랜드 육성 및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 단, 자세한 자격기준은 사업 공고문 참조
- 우대사항 : 국내 상표권 등록된 자사브랜드 보유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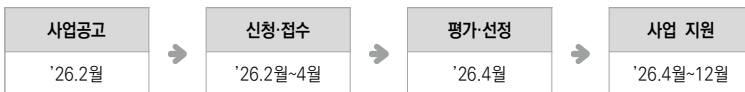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정부와 플랫폼 1:1 매칭을 통한 단계별 우수기업 맞춤 지원
 - (1단계, 실전문제 해결) 플랫폼사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컨설팅 및 온라인기획전 입점 지원을 통한 온라인시장 기초 체력 양성 (3,500개사)
 - (2단계, 판매 촉진) 국내 판로 확대와 매출향상을 위한 판촉·마케팅 및 플랫폼 특성에 따른 특화프로그램(ex. 인플루언서홍보, 라이브 커머스 등) 지원 (700개사)
 - (3단계, 브랜드 정립) 플랫폼사별 올해의TOPS 대상 특별기획전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ex.팝업스토어, PPL방송 등)지원 (30개사)
- 지원규모 : 연 3,500개사
- 지원금액 : 총 180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희망 플랫폼 선택 및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 및 상품소개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검토 →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판매제품(Product), 판매가격(Price), 마케팅(Promotion), 유통(Place)의 브랜드 마케팅 믹스(4P) 중심 평가
- 추진절차





* 세부 일정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전화) 044-204-7284, 7281,
(이메일) yn8823@korea.kr, ty0923@korea.kr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TOPS지원팀)
(전화) 02-6678-9372~9376, (이메일) tops6678@kodma.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판판대로 홈페이지 > 사업공고·신청 > 지원사업 공고 > TOPS 검색
- (홈페이지) | 
- 공고명 : 20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수행 기관 모집공고
- (경로) 판판대로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TOPS 검색
- (홈페이지) | 



Q&A

Q 브랜드 소상공인 지원(TOPS)은 무슨 사업인가요?

A 온라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탐티어 민간 플랫폼사와 함께 단계별로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어 설명

TOPS : 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의 약자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의 영문 약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개요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주문(키오스크), 생산(조리 로봇),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 렌탈형, S/W형 단년도 지원 ▶ 구입형 모든 기술 지원한도 500만원	▶ 렌탈형, S/W형 2년간 지원 ▶ 구입형 배리어프리 기기 지원한도 700만원 (일반기술은 동일하게 500만원 한도)
지원규모	11,000개	16,000개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인 경우(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일 경우 법인만 해당)
-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하는 경우
- ▶ 정해진 기한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지원 상점
(단,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경영지원 소프트웨어는 중복보급 가능)
- *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국비지원 한도금액 중 35만원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
- ** 경험형 스마트마켓(똑똑마켓), 상생형 스마트상점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상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경영지원 소프트웨어는 중복보급 가능)
- ▶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지원

구분	구입형			렌탈형	S/W형		선도형
	보편 ¹⁾	그 외	배리어프리		개인	가맹점	
지원내용	일반기술 (서빙·조리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 단말기기, 서빙·조리 로봇 2년 렌탈비	경영지원 소프트웨어 2년 사용료		기술 패키지 등 구입비
지원한도	500만원		700만원	연 350만원	연 30만원		1,000만원
국비 지원 비율	일반	50%	70%	70%	100%	90%	70%
	우대 ²⁾	60%	80%	80%			80%

- 1) 보편기술 (2개) : 전자칠판, 사이니지
- 2) 국비지원비율 우대대상 :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 지원규모 : 총 16,000개 내외
- 지원금액 : 349억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초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자부담 완화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 및 현장평가(선도형 주문제작 기술만 해당)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스마트기술 활용의지 및 역량, 스마트기술 이해도, 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전화) 044-204-7875, 7876
(이메일) younghun8607@korea.kr, wjddls623@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디지털지원실)
(전화) 042-363-7803, 7806
(이메일) hanu@semas.or.kr, gosemas@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스마트상점 콜센터(1600-618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Q&A

Q

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 없는 기술 공급기업에서 기술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성품이 아닌 주문 제작이 필요한 스마트 기기는 별도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 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단, 여러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Q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신청제외대상 제외)은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용어 설명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

* 자세한 내용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kioskui.or.kr) 누리집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개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공과금, 4대 보험 등 정해진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사업명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대상	• 연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연매출 0원 초과 ~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단가	• 1개사당 50만원 한도	• 1개사당 25만원 한도
사용처	• 총 9개(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통신비)	• 사업 공고 시 확정 안내('26.1)

* 지원대상, 지원단가, 사용처는 변동가능(추후 개별 공고 예정)

지원대상

- * 신청자격, 지원 조건 등은 변동가능(추후 개별 공고 예정)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DB 기준)
- 지원조건 : 연매출 0원 초과 ~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 지원내용은 변동가능(추후 개별 공고 예정)
- 지원 세부내용 : 지정된 사용처(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 등)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급
- 지원규모 : 약 230만개사
- 지원금액 : 1개사당 25만원 한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 신청방법 : 경영안정바우처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단, 국세청 DB를 통해 매출액 조회가 안되는 소상공인은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선정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 044-204-7862, 729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담경감 크레딧 기획운영팀 : 042-363-7984, 690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



Q&A

Q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의 사용방식은?

A 등록된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전기·가스 등 공과금 등)의 결제대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부여된 한도(1개사당 25만원) 내에서 차감됩니다.

Q 다수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대표 1곳만 선택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3 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 3-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 3-2 희망리턴패키지
- 3-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舊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사업개요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이상 장기가입자 경영악화로 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기타소득→퇴직소득) - 경영악화 기준 : 직전 3년대비 수입금액 50%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이상 장기가입자 경영악화로 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기타소득→퇴직소득) - 경영악화 기준 : 직전 3년대비 수입금액 20%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 납입한도 상향 - 분기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 납입한도 상향 - 연 1,800만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가입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석유정제품 1차 금속) 	매출액 14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3개)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매출액 10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펠트·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농업·임업 및 어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소매업 	매출액 60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 부동산업	매출액 4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5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신청제외 대상

- ▶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 일반유형주점업, 무도유형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지원내용

- 공제사유(8개) 발생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업,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가입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 노령의 경우 60세 이상 10년이상 납부시 지급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	6,625*만원이하 * 총급여 8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 = 8천만원(총급여)-1,375만원(근로소득공제) = 6,625만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대상	사업(근로)소득	소득공제한도	예상세율(%)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개인, 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99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132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154만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99만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서울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 개정 시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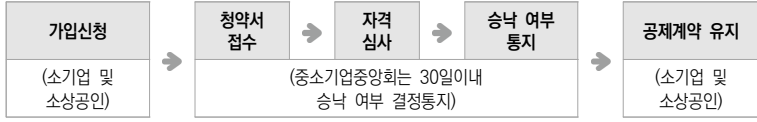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
-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일반대출 / 의료, 재해, 희생, 파산, 출산 대출(무이자)
-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월 1~3만원 적립 지원(1년간)
- 교육 및 판로지원
 - 역량강화·힐링캠프·현장강의·재기도전 등 교육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 경영지원단 운영
 - 법률·노무·회계 등 8개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경영지원
-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복지물, 건강검진, 장례식장 및 웨딩홀 등 전문업체 제휴할인 서비스
- 중간정산 가능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파산 4개 공제사유에 한해 중간정산 가능
- 장기가입 혜택
 -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신청 및 추첨 절차 후 혜택 제공
-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 3대 정책보험(풍수해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시 바우처 지원

가입

- 가입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월 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로 한함
- 서류제출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가입절차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문의처

-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 노란우산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원스톱 폐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점포철거비 신청서류 간소화 (제출서류 : '25. 7종 → '26. 2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과세 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5종 별도 제출 불필요
특화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이후 고용노동부 취업정책(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2천명) 지역별네트워킹 실시(취업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이후 고용노동부 취업정책(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확대(2천명 → 3천명) 지역별 취업 매칭데이 신설(지역 기업 구인 수요와 연계하여 구인·구직 매칭)
재기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 자부담 비율(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 자부담 비율 축소 (기준) 100%, 최대 2천만원 → (개선) 50%, 최대 1천만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신설

지원대상

- 원스톱폐업지원 : 3년 이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특화취업지원 : 3년 이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만15세 이상~만 69세 이하)
- 재기사업화지원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세부요건 공고문 참고>

신청제외 대상

-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 ▶ 임대사업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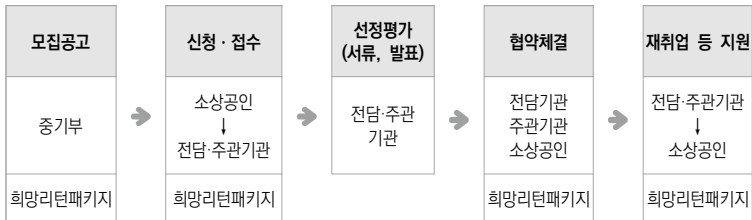
지원내용

- 원스톱폐업지원 : ①사업정리 컨설팅, ②점포철거지원, ③법률자문, ④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지원
- ①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 ② (점포철거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 ③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④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 특화취업지원 : ①취업교육, ②전직장려수당 지급, ③국민취업지원 제도 연계수당 지급, ④심리회복프로그램 등 취업 지원
- ① (취업교육) (기초) 직업탐색, 자아성찰 등, (심화) 구직자 정체성 확립, 대면취업상담 등
- ② (전직장려수당) 심화교육 수료 시 60만원 + 취업성공 후 1개월 근속 시 40만원 추가 지급(총 100만원) 지원

- ③ (국민취업연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 활동시 20만원씩 6개월 간 지급(최대 120만원) 지원(고용노동부 협업)
- ④ (심리치유) 폐업 후유증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서비스 등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협업)
- 재기사업화지원 : ①경영진단, ②사업화 교육과 ③사업화 자금 및 전담PM 1:1 밀착관리 지원
 - ①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 및 빅데이터 기반 1:1 재기 진단
 - ② (사업화교육) 사업개선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경영 이론 및 실습 교육(세무, 재고관리 등)
 - ③ (사업화자금) 진단된 문제해결을 위해 컨설팅 및 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금의 50% 자부담) 지원
 - ④ (사업화PM 지원) 재기사업화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관리 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소상공인 여부 등 사업별 공고 참고
- 선정평가 : 사업별 공고 참고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별 공고 참고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전화) 044-204-7829, 7838, 7856, 7860
(이메일) dete2000@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www.semas.or.kr)
(전화) 042-363-7692~7693, 7701~7709, 7711, 7713, 7715~771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참고사항

- 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 (경로) 희망리턴패키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통합공고)
 - (홈페이지) | 



Q&A

Q 점포철거를 개인이 자가로 하여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자 사업정리(철거,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재정사업의 특성상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후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舊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신청제외 대상

- ▶ 비영리사업자
- ▶ 그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지원규모 : 4만 2천명 내외
- 지원금액 : 153억원

신청·접수

- 공고시기 : 1~12월(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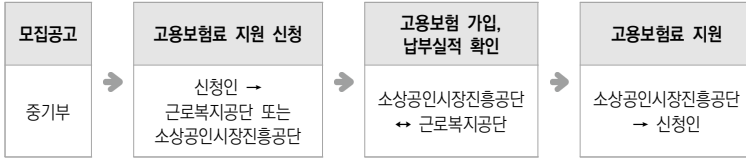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comwel.or.kr)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 (sbiz24.kr)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증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특례가입기획부)
(전화)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전화) 1533-0100(통합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소상공인24(sbiz24.kr)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소진공
공고조회 > 검색어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4 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 4-1 일반경영안정자금
- 4-2 특별경영안정자금
- 4-3 성장기반자금
- 4-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일반 소상공인(업력 무관)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영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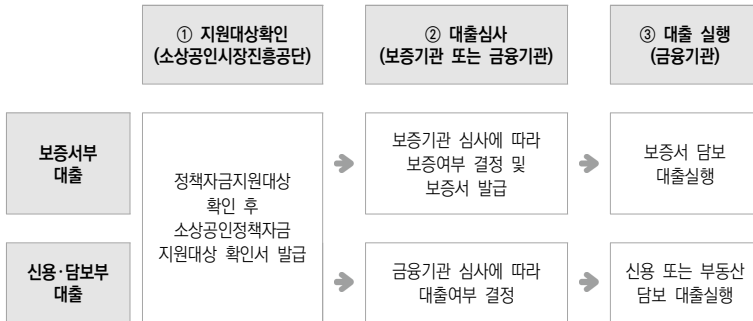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 소상공인 (업력 무관)	7천만원	기준금리 +0.6%p	5년 (2년 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25.4분기 기준 : 2.71%(분기별 변동)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대리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3-0100(정책자금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의 계층(장애인, 중·저신용자 등),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매출감소 기준) 매출액 10%이상 감소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시·군·구 등 총 11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 필요 - (매출감소 예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7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개편 - (매출감소 기준) 매출액 15%이상 감소 - (매출감소 확인대상) 삭제 - (매출감소 예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5개
자금 개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자금) 수혜기업,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한도·금리) - (희망형) 1억원, 기준+0.6%p	재도전특별자금 희망형 개편 및 도약형 신설 (지원대상)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사업화자금) 선정기업 - (도약형) 재창업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한도·금리) - (희망형) 1억원, 기준+0.6%p - (도약형) 2억원, 기준+0.4%p
	대환대출 - (대상채무) '24.7.3 이전 취급 대출 - (대출한도) 사업자대출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대환대출 대상채무 및 한도 확대 - (대상채무) '25.6.30 이전 취급 대출 - (대출한도) 사업자대출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5천만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25.4분기 기준 : 2.71%(분기별 변동)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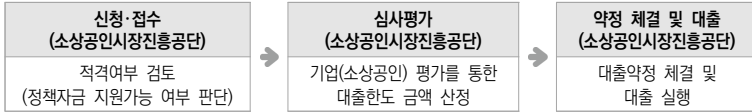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2.0%	5년 (2년 거치)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정책자금 기준 금리 +1.6%p	5년 (2년 거치)
재도전 특별자금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일반형) 7천만원	(일반형) 기준+1.6%p	5년 (2년 거치)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선정기업	(희망형) 1억원	(희망형) 기준+0.6%p	
	(도약형) 재창업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도약형) 2억원	(도약형) 기준+0.4%p	
청년고용 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 소상공인	5천만원	4.5%	① 비거치형 10년(비거치) ② 거치형 10년(2년)

* 정책자금 기준금리 '25.4분기 기준 : 2.71%(분기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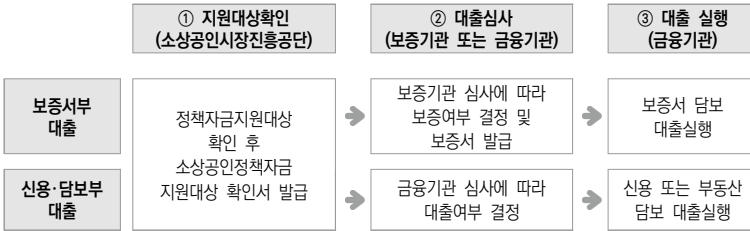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직접대출



- 대리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3-0100(정책자금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성장기반자금

사업개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축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자금 개편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생형) 상생협약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 (TOPS형) TOPS프로그램 수혜기업 (한도·금리) -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0.2%p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대상 개편 (지원대상) - (일반형) TOPS 1단계 기업 - (성장형) TOPS 2단계, 플랫폼 추천기업 - (도약형) Post-Tops 선정기업 (한도) - (일반형) 운전 7천만원 - (성장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도약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금리) 기준금리 + 0.4%p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 (일반형) 업력무관 소공인 * 대리대출 (한도·금리)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금리+0.6%p (대출방식)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개편 (지원대상) - (일반형) 일반 소공인(업력무관) - (유망형) 소공인 특화지원 참여기업, 백년 소공인 (한도·금리)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금리+0.6%p - (유망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0.4%p (대출방식) - (일반형) 대리대출 - (유망형) 직접대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신청제외 대상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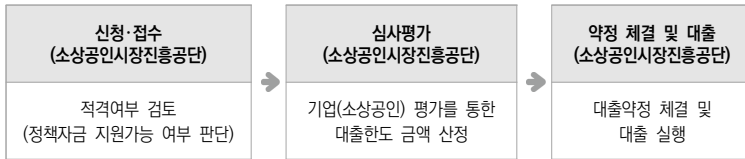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형) 업력무관 소공인 (유망형) 소공인 특화지원 참여기업, 백년 소공인	(일반형) 운전 : 1억원 시설 : 5억원 (유망형) 운전 : 2억원 시설 : 10억원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유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운전 : 5년 (2년 거치) 시설 : 8년 (3년 거치)
혁신성장 촉진자금	(일반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스마트기술 도입 등 (혁신형) 스마트공장, 매출신장, 수출 소상공인,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등	(일반형) 운전 : 1억원 시설 : 5억원 (혁신형) 운전 : 2억원 시설 : 1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운전 : 5년 (2년 거치) 시설 : 8년 (3년 거치)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8년 (3년 거치)
상생성장 지원자금	(일반형) TOPS 프로그램 1단계 수혜기업 (성장형) TOPS 프로그램 2단계 수혜기업,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도약형) Post-Tops 선정기업	(일반형) 운전 : 7천만원 (성장형) 운전 : 1억원 시설 : 5억원 (도약형) 운전 : 2억원 시설 : 1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운전 : 5년 (2년 거치) 시설 : 8년 (3년 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25.4분기 기준 : 2.71%(분기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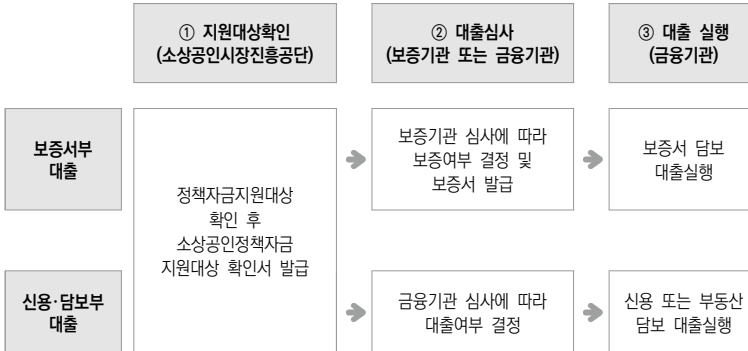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직접대출



- 대리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3-0100(정책자금콜센터)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개요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채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중인 경우
-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인 경우
-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선정요건

- '20년 4월~'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다음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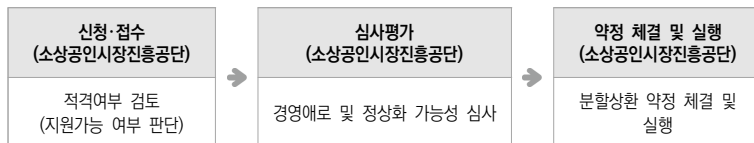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항 〉

구 분	내 용
매출감소	'20년 ~ '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 ~ '23.12.31)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통합계좌 운용)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를 개설 ※ 단, 보유한 직접대출 계좌들에 고정금리·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 고정금리 통합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2계좌 생성
금리(1%p) 감면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1%p(감면)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 감면기간 : 연장된 총 상환기간의 만기일까지 적용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5.7.30(수) ~ '26.6.30(화), 18:00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오프라인) 전국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3-0100(정책자금콜센터, 내선1번)

참고사항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시행
수정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제 2 부



전통시장



제5장 ▶ 전통시장 지원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5 장

전통시장 지원

-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5-2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5-3 시장경영지원(舊 시장경영패키지)
-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 5-5 전통시장 육성
- 5-6 전통시장 화재공제
- 5-7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를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지원규모) 80곳 시장	(지원규모) 79곳 시장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 우대사항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신청제외 대상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 ▶ 선정된 후 사업포기한 지 3년 미만인 시장

지원내용

- **공영 주차장 건립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지하 주차장·주차빌딩·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전통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 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노후시설 개보수, 차단기·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CCTV 등 설치 지원
-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 * 주차 쿠폰 발행비용, 주차장 임대계약, 주차요원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79곳 시장(439.32억원)
 - * '26년 건립 33, 개보수 13, 이용보조 33
- **지원금액 : 439.32억원**

신청·접수

- 접수완료('27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6.1월경 시·도 공고 예정)
 - 지자체(시·군·구),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의 후 시·도에 신청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시·도에서 신규 선정 및 예산 편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 신청양식은 시·도 공고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8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전통시장 담당부서



Q&A

Q 사업 공고 및 추진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지역 특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 중입니다.

Q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개요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의 조성을 위해 전기·소방·가스·기타분야에 대해 개별점포 내 안전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지원내용	공용구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	공용구간 지원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
	소방, 전기, 가스, 기타분야 안전시설물	(추가) 스마트 안전기술,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지원 항목 추가
지원 조건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지원대상

● 신청자격

1)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

2) 개별점포단위 (노후전선설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 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우대사항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미수혜 시장
- 소방·가스·전기등급 C이하로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 화재보험(공제+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은 시장(구간별 가점)
- 기타 공고시 안내되는 사항

신청제외 대상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지 5년 미만인 곳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안전시설물 지원

사업부문	지원품목 예시
전기분야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차단기 및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소방 분야	• 개별점포별 화재알림시설(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 설치 •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품목
가스분야	• 개별점포별 가스 안전시설물 설치(가스 보관함,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기타분야	•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 풍수해, 폭염*·폭설·폭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 스마트안전기술(AI 화재감시 CCTV, 원격점검 시스템, 지능형출동시스템 등)

- 지원규모 : 67곳
- 지원금액 : 11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신청 접수 완료('27년 공고는 '26.8월 예정)
- 신청방법 : 상인회가 관할 기초지자체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공고문 내 서류 작성
- 선정평가
 - 현장평가(해당 점포의 사업 타당성, 계획 적정성 등)
 - * 지방청, 시도담당자, 전기안전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평가(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 * 전기안전전문가 등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추진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중기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6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공용구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개별점포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총사업비의 20% 내에서 공용구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장경영지원(舊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개요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지원조건 : 시장당 국비 36백만원 이하(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우대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4년, '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3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최근 3년간('23~'25년) 시장경영지원(구 시장경영패키지) 이력(예산)이 없거나 적은 곳
-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신청제외 대상

- ▶ 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 전통시장·상점가의 영업 점포 수 대비 화재공제(공단) 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50% 미만인 곳
-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
-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6년 지원예정 포함)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선정구역 내 개별시장도 포함
- ▶ '26년에 “전통시장 육성사업(舊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단, 인력지원 부문은 중복 수행 가능
-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 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 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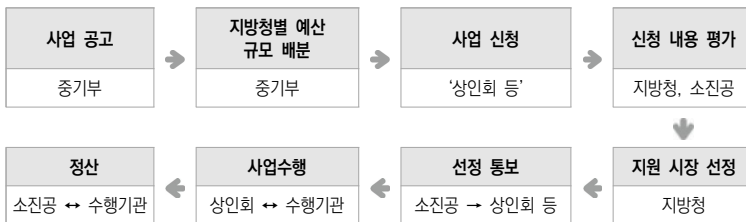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구분	사업부문	사업 내용
역량 강화	상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 인준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 지원	시장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지원규모 : 362곳
- 지원금액 : 시장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0월('26년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소상공인24(www.sbiz24.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점포 명부 확인서, 가점 증빙 서류 등
- 선정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지방청, 소진공, 지자체, 외부전문가) → 심의조정위원회(지방청, 소진공, 지자체, 외부전문가) → 최종선정(중기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정량(60점), 정성(40점), 가·감점(±10점)
 - 정량 지표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시장 상인회 가입률, 가격 표시율 등
 - 정성 지표 : 타당성, 효과성, 노력도, 협력도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3, 79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37~9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사업 신청시 선택한 사업부문만 수행할 수 있나요?

A 사업 선정 후, 소진공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해 신청시 선택한 사업내용의 변경(예산, 사업 부문 등)이 가능합니다. 단, 국비 증액은 불가합니다.

Q 2명 이상 인력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력 구성 및 신청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개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 상품권으로, 전국 24.2만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상품권구매처

-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디지털상품권 : ‘디지털온누리’ 앱
 - * 기업구매는 <https://onnuribiz.komscoipay.com/>

상품권구매한도

- 개인구매
 - 지류상품권 : 50만원(5%할인)
 - 디지털상품권 : 100만원(7~10%할인)
- 기업구매
 - 지류·디지털상품권 : 구매한도, 할인을 없음

상품권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및 백년소상공인 중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디지털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사용 가능
 - 온라인 사용처는 디지털온누리 앱 혹은 온라인 사용처*에서 확인
- * https://onnurigift.or.kr/online_market

상품권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 디지털상품권 : 1천원 이상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 가능
(총 소지금액 200만원 초과 불가)

발행규모

- '26년 약 5.5조원 발행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개인) 1670-1600, (기업) 1670-400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전화) 042-363-7640, 7634~6, 7642~4, 6852~9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전화) 044-204-7874, 7900, 7908



Q&A

Q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A 디지털온누리 앱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상품권 구매(충전) 후, 카드 결제 방식 혹은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용 상품권입니다.

Q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 A**
- ①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고객이 기존 보유한 카드를 등록해 카드 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삼성페이, 카드사 앱결제 가능)
 - ② 상품권 할인혜택과 카드사용실적 반영 가능,
 - ③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소득공제 40% 적용

용어 설명

온라인가맹 : 온라인가맹은 ongift.or.kr으로 기존 오프라인 가맹신청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가맹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가맹신청 가능한 방법을 말함



전통시장 육성

사업개요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및 시장별 브랜딩 전략을 고도화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요건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5%이상 - 화재공제 가입률 45%이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모바일) 가맹률 70%이상 - 화재공제 가입률 50%이상
우대요건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이상인 곳 - 전통시장 상인과 임대인 간의 상생협약 동의률(70~80%이상) -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	삭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조건 : (문화관광형 시장)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백년시장) 2년간, 최대 30억원 이내(예정)
- 우대사항(문화관광형시장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4년, '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3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최근 3년간('23~'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

신청제외 대상 (문화관광형시장 기준)

- ▶ 접수 마감일 기준 증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은 경우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24년도 선정('25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 ▶ '25년도 선정 첫걸음기반조성 지원 시장
- ▶ '15년 ~ '25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6년 지원예정 포함)

지원내용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
 - 전통시장 내 빈공간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 공동판매장, 문화 교류 공간 구축 등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콘텐츠 개발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 * 지원 규모 : 총 50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백년시장 :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시장 중 경제·사회적 가치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
 - 오랜 세월 속 백년시장이 가진 지역내 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상징성 있게 스토리화, 이를 바탕으로 사업기반 조성
 - 환경 구성(점포 인테리어, 테마거리, 공용공간 등)을 통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지원
 - 의식주 체험, 굿즈, 래시피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
- * 지원 규모(예정) : 총 10곳 내외 / 지원금액(예정) : 시장당 2년간, 최대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문화관광형시장 '25년 10월('26년 사업 공고), 백년시장 '26년 1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소상공인24(www.sbiz24.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비 확보 약속서, 상인현황 등
- 선정평가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서류·발표·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초, 현장(실사), 서류·발표 평가
 - 기초 평가 : 자격요건(적/부), 가·감점 내역 등 평가
 - 현장(실사) 평가 : 기반·편의시설 확보 유무, 준비도 등 현장실사 평가
 - 서류·발표 평가 : 시장성 분석, 시장보유 특성 등 서류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3, 79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71~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Q&A

Q 문화관광형시장 제외 요건('15~'25, 지원횟수 3회 이상) 관련하여 '14년 선정('14~'16)의 경우에도 지원횟수로 포함되나요?

A 제외 요건 기간내에 지원을 받았으므로('15~'16년), 지원횟수에 포함됩니다.

Q 문화관광형시장 관련, 2년 최대 10억 이내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대 금액(10억)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최종 선정 시 지원시장별 사업비는 시장규모, 지원이력 등을 고려하여 확정내시로 통보합니다.

Q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하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A 평가 도중 포기는 제재조치가 없으나, 사업선정(확정내시) 이후 포기하는 경우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Q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은 '26년에 운영하지 않나요?

A 해당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26년 신규 모집은 없으나 '25년에 디지털 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 시장 2년차 대상에 한해 '26년까지 사업 운영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개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을 보상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지원한도 최대 1억원
	-	화상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 신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內 개별점포(등록, 인정)

신청제외 대상

- ▶ 전통시장 구역 외 점포
-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점포
- ▶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지원내용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료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 5천만원, 동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 휴업일당 특약, 화상·5대 골절 수술 위로금
- 납입방법 : 일시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상품 예시〉

구분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8천만원 (건물/동산 각 4천만원)	1억원 (건물/동산 각 5천만원)
주계약	재물 손해	A급	66,000원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66,000원
		B급	101,500원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101,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원)중 5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료 : 100원 •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원)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료 :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1일당 가입금액(5만원) 					
	화상·5대 골절 수술 위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료 : 연 300원 • 1사고당 500,000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 가입
- 신청방법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 상담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 화재공제 가입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2



Q&A

Q 화재공제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상담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Q 화재공제 가입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입신청서와 건물구조급수를 A급으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사업개요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
 - 지역·규모·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상설점포 없이 노점만으로 구성 된 시장
- ▶ 영업점포 수가 10개 이하인 시장

지원내용

-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 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500곳 내외 시장)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상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쉘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신청 · 접수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5



Q&A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의 안전시설물은 중기부의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 3 부



보증지원 제도



제6장 ▶ 보증지원 제도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6 장

보증지원 제도

-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6-2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6-3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6-4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6-5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6-6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 6-7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 6-8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6-9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6-10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 6-11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협약보증
- 6-12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 6-13 폐업 분할상환 특례보증(폐업 특례 브릿지보증)
- 6-14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 6-15 소상공인 성장추진 보증대출
- 6-16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 6-17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사업개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용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일부업종 보증지원 제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6년 보증잔액 43.9조원으로 운용

(단위 : 건/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11월
보증공급	건 수	570,247	1,102,797	1,000,959	1,207,608	976,292	948,423	990,179
	금 액	140,238	285,069	246,341	270,848	244,350	253,408	274,021
보증잔액	건 수	1,134,637	1,735,669	1,939,361	2,279,027	2,195,866	2,057,083	1,998,765
	금 액	230,184	394,222	430,769	465,757	446,220	427,154	443,643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사업개요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용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일반지원기업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소액지원기업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2,90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Q&A

Q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무엇인가요?

A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5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용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단, 발생 사유가 재해일 경우 지원 가능)
 -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 *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내용

- 보증한도 : 3억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재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요건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장애인 확인증• 고업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폐업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금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Q&A

Q “업력 6개월 이상”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예비)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자활기업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table border="1"> <tr> <td>사회적기업</td> <td>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td> </tr>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td> </tr> <tr> <td>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td> <td>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td> </tr> <tr> <td>자활기업</td> <td>지자체 인증서 사본</td> </tr> </table>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	자활기업	지자체 인증서 사본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										
자활기업	지자체 인증서 사본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제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지원
 - * 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아이엠·부산·전북·신협·새마을금고·농협·산림조합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사업개요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 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8.5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은행 모바일 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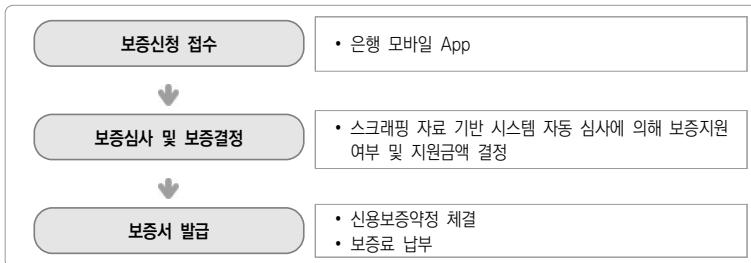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3개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3개년) • 국세납세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현금영수증 매출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정보 • 카드 매출정보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조원
 -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아이엠·경남·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사업개요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
-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폐업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005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개요

기업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 녹색확인기업

- ① 녹색인증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 녹색전문기업확인기업, 녹색기술제품확인기업
- ② 녹색제품인증기업 :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 ③ ESG경영인증기업 :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기업

2) ESG 경영 실천 기업

- ① 고용유지 및 창출기업, ②장애인 고용기업, ③가족친화인증기업, ④지역사회공헌기업, ⑤ESG교육 수료기업, ⑥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 각 지원 대상별 증빙서류 	
	녹색인증기업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서
	녹색제품인증기업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인증서
	ESG경영인증기업	ISO인증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서, 인권경영우수기업 인증서, S마크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00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업개요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수출실적 증명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폐업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20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사업개요

대출금의 원금(분할상환원금 포함)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의 잔액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6조원
 -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SC제일·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신협·지역농협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협약보증

사업개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국민은행 소상공인컨설팅과 연계한 금융지원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국민은행 KB 소상공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폐업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05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사업개요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기업구매카드와 연계한 보증지원을 통해 단기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가동(영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79점 이상 879점 이하
 - * 2025.1.1. 이후 특별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595점 이상시 지원가능
 - ② 연매출 12백만원 이상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2백만원 이상인 기업
 - ※ 지원대상 조건 관련하여 추후 제도개선 예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9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비대면) 보증드림 앱을 통한 온라인 보증신청
 - * 경기도 소재 기업의 경우 “Easy-One”
- (대면)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폐업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6,30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기업은행

문의처

- 중소기업부 경영안정정책과
(전화) 044-204-7857, 044-204-7847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폐업 분할상환 특례보증(폐업 특례 브릿지보증)

사업개요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20.4.~'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②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
 - ③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 ④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체납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 ▶ 자가주택(폐업한 자가사업장 포함) 권리침해 보유기업
- ▶ 브릿지보증을 취급할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 보유기업
 - * 브릿지보증 대상 전차보증 만기경과로 인한 연금연체 발생건은 제외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의 주채무 잔액 범위 내
- 우대사항 : 보증료 전액 지원, 15년 장기분할상환

신청·접수

- (대면)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폐업증명원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3,75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사업개요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사업 안착을 도모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며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
 - ① 일반
 -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소재 기업
 - ② 우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로페이 가맹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4.5천만원 이내

신청·접수

- (대면)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폐업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80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기업은행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사업개요

성장 유망 소기업·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①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업력1년 이상
 - ②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 ③ 경쟁력 강화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이를 입증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최근 매출액이 없거나 휴업 중인 기업, 연체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지역재단의 다른 신규보증을 기이용중인 기업(단기간 중첩보증 1년 제한),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개인기업) 45백만원 이내, (법인기업) 9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대면) 사업장 소재지의 은행*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수협·제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은 추후 취급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폐업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3조원(연간 1조원)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사업개요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도모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유사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소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적합업종이 아닌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폐업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규모 : 30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케이뱅크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사업개요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구 분	햇살론(자영업자)
지원목표	5조원('10.7.26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세종제외)
금융회사 업무위탁	•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구 분		햇살론(자영업자)		
지원 대상	기본요건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경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이행)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폐업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	
보증심사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서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용 보증재단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4 편



제1편

중소기업

- 제1부 > 금융 지원
-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 제3부 > 인력 지원
- 제4부 > 판로 지원
- 제5부 > 수출 지원
-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탄소중립 지원

제2편

창업, 벤처, 재도전기업

-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공통사항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 제1부 ▶ 소상공인
- 제2부 ▶ 전통시장
- 제3부 ▶ 보증지원 제도

제4편

공통사항

- 제1부 ▶ 기타
 - 제2부 ▶ 도움이 되는 제도
- 부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소 및 연락처

제 1 부



기 타



제1장 ▶ 규제애로 개선·해결

제2장 ▶ 외부 전문가 노하우

제3장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1 장

규제애로 개선·해결

1-1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 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권자에 그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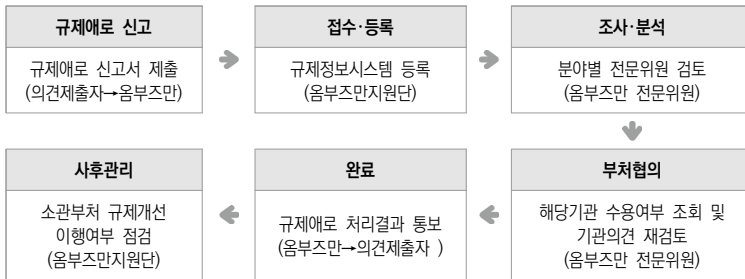
신고·접수

- 중소기업 ombudsman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팩스(044-204-7179),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 현장 간담회(S.o.S Talk,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한 규제애로 건의
- 지자체별 '지방 규제 신고센터',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한 규제애로 신고·접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중소기업 ombudsman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처리절차



기타사항

- 규제 의견 수렴 : ombudsman 홈페이지(www.osmb.go.kr)를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 접수
- 규제개선 현황 제공 : ombudsman 홈페이지(www.osmb.go.kr)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문의처

- 옴부즈만지원단 주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 4층
- 옴부즈만지원단 : 대표전화 044-204-7174

제 2 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2-1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전문가가 기업의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마케팅 등 각종 경영 애로를 접수·해결하는 제도로,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찾아가 문제 해결 지원

사업개요

- 비즈니스지원단

기술 및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 전문가 구성 현황

구 분	상담위원	클리닉위원
변호사	27	33
변리사	18	25
회계사	7	15
관세사	18	17
세무사	23	52
법무사	5	0
노무사	38	331
명장 기능장	2	3
기술사	15	26
기술지도사	29	36
경영지도사	201	499
공공기관 경력자	27	15
산업현장교수	2	5
기타	48	228
계	460	1,285

- 전문가 상담

지방청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전문상담으로 해결 지원

- 현장 클리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단기간(통상 3일, 최대 7일)에 해결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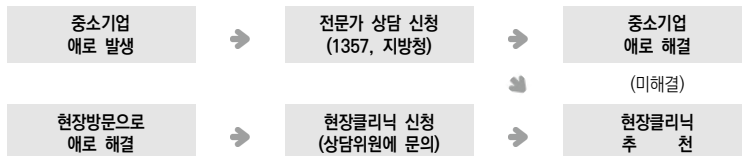
구 분	전문가 상담	현장클리닉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조건	무료상담	자문료 80% : 정부부담 자문료 20%와 부가세 : 기업부담

신청제외 대상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유흥오락업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 지침 [별표] 참고 혹은 관할지방청에 문의 바람

지원절차



신청·접수

- 전 화 : 국번없이 1357, 지방청 상담번호 (문의처 참조)
- 인터넷 : <http://www.smes.go.kr/bizlink>
- 방 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제출서류

- (전문가 상담) 없음, (현장클리닉)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 044-204-7387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표 참조)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 화	주 소
서울청	02-2110-63507,631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6호
부산청	051-601-510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청	053-659-22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1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2층
광주·전남청	062-360-9113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71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청	031-201-695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15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6호
인천청	032-450-1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세종청	042-865-61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청	052-210-006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청	033-260-1618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747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층
충북청	043-230-53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남청	041-415-0673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9층
전북청	063-210-64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청	055-268-259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 3 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 3-1 거래 공정화
- 3-2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 3-3 성과공유제 확산(성과공유 확인제)
- 3-4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 3-5 상생결제제도
- 3-6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공급망 ESG)
- 3-7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
- 3-8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거래 공정화

사업개요

수·위탁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신고접수 및 분쟁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수·위탁거래 기업)
- 지원조건 :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약이 필요한 수탁기업의 경우, 법률자문 지원
 - 공정거래교육 :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내용

- 법률상담·자문 :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 협력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 자문 지원(1백만원 한도 내)
- 수위탁분쟁조정 :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 분쟁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보는 민사상 집행력을 가지고,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
- 소송비용 지원 : 수·위탁분쟁조정 성립이외의 사건 및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사건 중 민사소송으로 연계되어 현재 소송 중인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지원(소송비용 최대 800만원, 부대비용 200만원 이내 별도지원)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가능
- 공정거래교육 :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신청·접수

- 법률상담 : 전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70개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357+내선9) 또는 전국 신고센터*
 -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주요 연락처 참조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유 선 : 대표번호 1357+내선9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 공정거래교육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med@win-win.or.kr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거래지원부

- 유 선 : 1357+내선9

■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18	기계산업동반성장 진흥재단	032-680-3903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표번호 1357+내선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29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8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046-1451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8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3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5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88	한국전기공사협회	1566-1177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50	한국패션산업협회	02-528-0112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3	대한건설기계협회	02-501-5701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4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0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6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6381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34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71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5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3481-9900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벤처기업협회	02-6331-7002	한국골판지포장산업 협동조합	02-3474-712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25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12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대한영상콘텐츠제작 협동조합	02-556-0301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031-957-5850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1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다이캐스트공업 협동조합	02-716-1611	한국감시기공업 협동조합	02-454-5114
대한국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2	(사)서울의류협회	02-865-9213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한국PCB&반도체 패키징산업협회	032-831-7629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25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3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한국소프트웨어개발 협동조합	053-791-6645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018	(사)IT여성기업인협회	070-7549-1859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032-675-9742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부 사업자연합회	02-3431-300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주)전국기아오토규연협회 협동조합	02-6953-0735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연합회	02-2038-2558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L 1705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사업개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내용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확인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에너지 경비 확인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수급사업자

신청제외 대상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경우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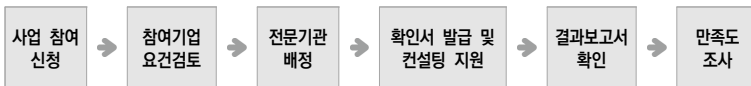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대상
주요 원가 확인서 발급	제조·용역 등 수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에너지 비용을 원가분석하여,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연동약정 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위탁·수탁기업 (원·수급사업자)

* 주요 원가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1,000건
- 지원금액 : 주요 원가 확인서 및 연동약정 컨설팅비용 전액
(정부 지원금 10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예산소진 시
- 신청방법 : pis@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①사업 참여 신청서*, ②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내)
* 신청서는 납품대금연동제.kr(누리집) → 소통·상담 → 공지사항 → 모집공고문 내
확인가능
- 요건검토 : 수·위탁 거래, 하도급 거래 해당 여부
- 추진절차



문의처

- 온라인상담 : 납품대금연동제.kr → 지원사업 → 소통·상담 → 상담하기 (인터넷 주소) <https://www.smes.go.kr/pis/front/online/list.do>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거래지원부 (전화) 02-368-8962, (이메일) pis@win-win.or.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납품대금연동제누리집 > 공지사항 > '2025년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검색
 - (홈페이지) 



Q&A

Q 납품대금 연동제한?

A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공유제 확산(성과공유 확인제)

사업개요

-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수탁기업)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계약모델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지원대상	수·위탁 기업간 거래	유통, 플랫폼,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 (상생협력법 개정, 26)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정한 배분)

지원내용

- 성과공유제 계약을 통해 수·위탁기업간 공동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 (계약체결 시기) 수·위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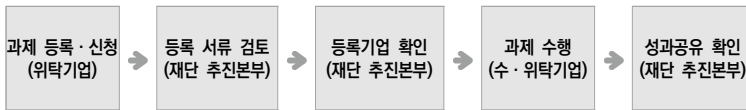
③ 성과공유

-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 (성과공유 방식) 현금, 물량매출 및 IP, 데이터 등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 등록
- 제출서류 : 계약서, 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성과공유과제 등록 : 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증빙자료
- 성과공유 확인 : 성과공유 과제 “등록 → 확인”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03, 7927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추진본부(상생협력지원부) : 02-368-8943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사업개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상생누리 플랫폼 한 곳에 모아 잠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이 빠르게 검색,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 상생협력 종합 플랫폼(www.winwinnuri.or.kr)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
 - 운영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구 분	지 원 내 용
협력사 지원	운영기업이 시스템상 협력사로 승인한 중소기업만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계열사 오픈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부분 오픈	기존 및 계열사 협력사,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전체 오픈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플랫폼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 * 대기업·공공기관 328개사가 29,176개의 프로그램 등록 및 지원(25.11월말 기준, 누적)

〈 상생누리 플랫폼 지원분야 〉



이용절차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 상시 참여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03, 7927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홍보부 : 02-368-8757, 8722



Q&A

Q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업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기업명 혹은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운영기업의 주거래기업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업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은 예비창업자 및 취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업 당 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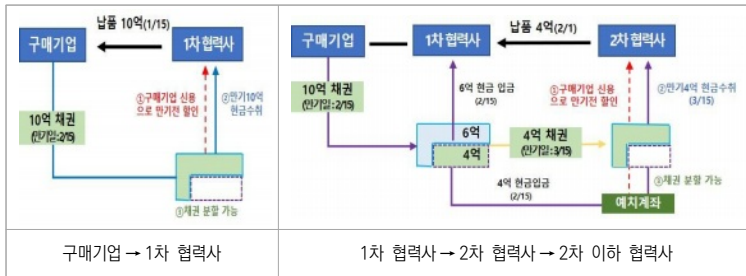
A 아닙니다. 상생누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사업개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



제도장점

-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
- 자금 유동성 개선
 -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고, 지급받은 상생 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미리 대금지급 가능
- 세액공제 혜택 및 금융수익 발생
 -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이자 수익 발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지급 보증의무 면제
 -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이용절차

-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융기관에서 거래기업용 약정체결
 - *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 사전에 확인 필요
 - ** (도입 금융기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제일, 하나, 경남, 아이엠뱅크, 전북, 부산, 경남은행, 현대커머셜 총 13개 금융기관 운영 중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 *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3, 7922
-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고사항

- 정부·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 * 상생협력법 제22조제6항('21.10.19)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공급망 ESG)

사업개요

대·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수행하는 ESG 활동을 자율 과제 형식으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전담기관명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내용	(신설)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신청 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 법인
(지원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따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정부지원금 1:1 매칭
- 우대사항 : 정부 ESG 관련 과제 신청기업, 원원아너스 선정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출연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국내외 ESG 규제 대응, 고객사 ESG 요구 대응, 공급망 ESG 심화지원, 정부 ESG 정책 참여 관련 대·중소기업 ESG 공동 활동 지원
 - ※ 사업 참여 중소기업 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지표 준수를 80% 이상 기업에게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지원규모 : 총 1,800백만원, 15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250백만원 지원
(국고보조금 50%, 상생협력기금 50% 매칭)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2월 예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esg@win-win.or.kr)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특수관계인 및 중복참여 확인서, 수행기관 청렴·보안 서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 선정평가 : 사전요건 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지원 필요성(30점), 추진계획 적정성(40점), 예산계획 적정성(10점), 수행기관 역량(10점), 기대효과(10점), 가점(3점)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현장점검, 최종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전화) 044-204-7921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 (전화) 02-368-8425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공급망 ESG 혁신 프로젝트」 지원계획 통합 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홈페이지)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

사업개요

대·중소기업 등 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등이 자율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5년	'26년
신청대상	출연 대기업이 신청	주관기업(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신청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내국법인
- 지원조건 : 상생협력기금 출연 내국법인(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중소기업이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
- 우대사항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사례인 “원원 아너즈”에 선정된 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본 사업을 통해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출연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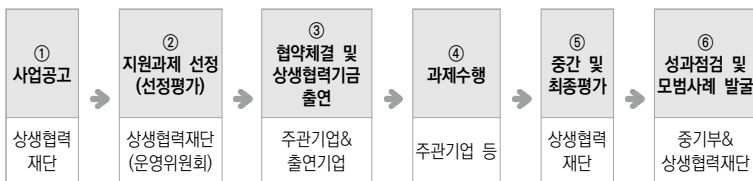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총 700백만원, 15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국고보조금 50%, 상생협력기금 50% 매칭)

* 국고보조금 50백만원 지원 시 상생협력기금 50백만원 출연 필요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026. 3월 예정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자격,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타당성 평가, 사업성 평가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전화) 044-204-7912, 792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
(전화) 02-368-8971, 8746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사업)'
모집 공고
 - (경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개요

영세 중소·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제품·신사업 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력, 판로 등을 활용한 공동협력 사업을 희망하고 적합업종과 상생협약 등을 영위하는 중소·소상공인 등
 - ▶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
 - ▶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
 - ▶ (상생협약)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당사자간 협력을 통해 합의 도출된 업종(민간자율협약 포함)
- 지원조건 : 상생출연기금 출연 대기업과 중소·소상공인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필수
 - 과제 운영을 위한 대기업 참여(상생협력기금 출연 필수)
 - 총괄 수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역할 수행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기술개발 및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제품 제작, 표준인증 취득 등
경영·운영 환경 개선	생산 공정 개선 컨설팅,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업그레이드 비용, IT 시스템 구축, ERP·CRM 시스템 도입 등
홍보 및 판로	대기업 판로 네트워크 및 인프라 매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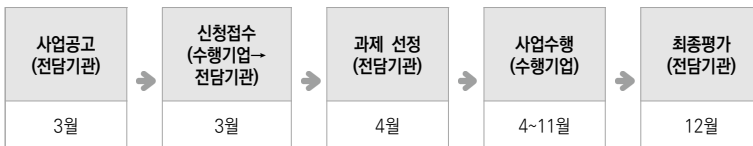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4억원(정부보조금 50% 이내)

- 정부 50% : 대기업 30% : 중소·소상공인 20% 매칭

* 기업(대기업·중소·소상공인) 분담금의 경우 50% 이상으로 하되, 과제에 따라 분담 비율 조정 가능(예 : 대기업 40%, 중소·소상공인 10%)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3월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산출 근거 서류 일체(참여인력 인건비 등) 각 1부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발표평가
- 평가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및 계획, 사업목표 적정성, 상생협력 가능성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 044-204-791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지원부 :
02-368-8462 / 8458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모집 공고
 - (경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
 - (홈페이지) | 
 - (홈페이지) | 
- ② 적합업종 영위 업종·품목은 2026년도 사업공고문 참고

제 2 부

도움이 되는 제도



제4장 ▶ 알아두면 좋은 제도

- 부 록 ▶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소 및 연락처
-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제 4 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 4-1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 4-2 이노비즈 확인제도
- 4-3 메인비즈 확인제도
- 4-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4-5 벤처기업 확인제도
- 4-6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선정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 및 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제외 업종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라 아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지원혜택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자금, 지역특화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선정절차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선정기준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심의 후 선정
- * 세부평가지표는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이메일 및 우편접수)
- * 제출처
- 중소기업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3층)
 - 중견기업 : (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5층)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선정규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 * 선정현황 : '17년부터 '25년까지 총 63개사 선정(중소 44, 중견 19)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23) 6 → ('24) 10 → ('25) 10

문의처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8, 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02-3275-3127)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2, 7455)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 www.time-honored.or.kr



이노비즈 확인제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 기술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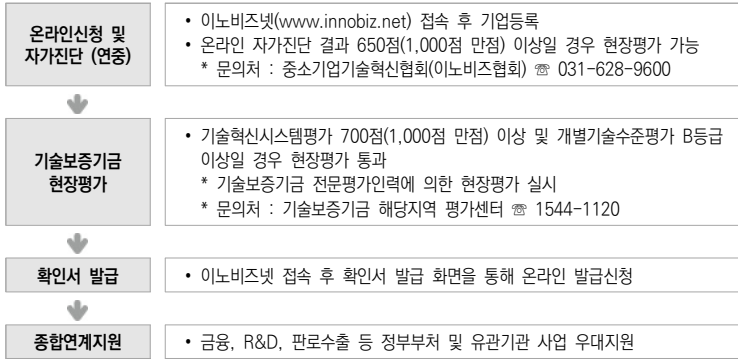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기업 자체 실시) →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평가
 - * R&D 활동, 혁신 기술 개발·생산화 능력, 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등

신청절차



지원혜택

* '26년 세부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분야	지원내역	우 대 사 항
세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 단, 예외지역 존재 등으로 지자체 세무과 상담 필수
	정기조사 유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 관세조사 유예(1년) ※ 단, 탈루협약이 있거나 국세부와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납세 유예 시, 납세담보 1억원 한도 내 면제 ※ 단, 제한적 면제금액 등 지자체 세무과 등과 상담必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 * (일반)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이노비즈)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비즈 기업 합병 및 지분취득 시 법인세 10% 공제 • M&A 절차 간소화 특례 : 벤처기업 합병절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
	세금포인트 적립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포인트 관련 적립 우대 납부세금 (기준) 10만원당 1점 → (우대) 10만원당 2점

분야	지원내역	우 대 사 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용' 최대 100% 및 권리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신한, 국민, 부산, 경남, 대구, 한국씨티, SC, 전북, 농협, 광주은행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 (이노비즈) 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기술보증기금) 보증료를 감면 대상 : 감면율율 -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타 감면사유 중복 불가/최초 신규보증일로부터 최대 2년 적용 (NH농협은행) 이노비즈 채움금융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비즈)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용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변동상품에 대해서만 해당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최고 30억)우대, 이행보증요율우대(10%), 신용관리 컨설팅/교육플랫폼 무상 제공 등 (한국은행) 혁신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지역본부별 상이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평가 및 성장성 기준 요건 완화 자기자본(30억 → 15억), 최근 당기순이익(20억 → 10억), 자기자본이익률(100분의10 → 100분의 5) 등
정책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 출원 우선심사(지원대상)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기술보호 정책보험 법률비용 지원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등 소 제기 시 관련 법률비용 최대 80%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성능인증(EPC),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가점 및 참여조건 우대
	판로 및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수출패키지, 수출컨소시엄, 글로벌강소기업 100+,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신청자격 우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2.0점, 제조업 2.5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1.5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지원(최대 70% 할인)
	인력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능요원(제조/생산분야 가점 4점) 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학문분야 가점 5점)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분야 지원자격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 204-7750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메인비즈 확인제도

전 업종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①항에 해당하는 업종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경영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신청·접수

- 메인비즈넷(www.smes.go.kr/mainbiz)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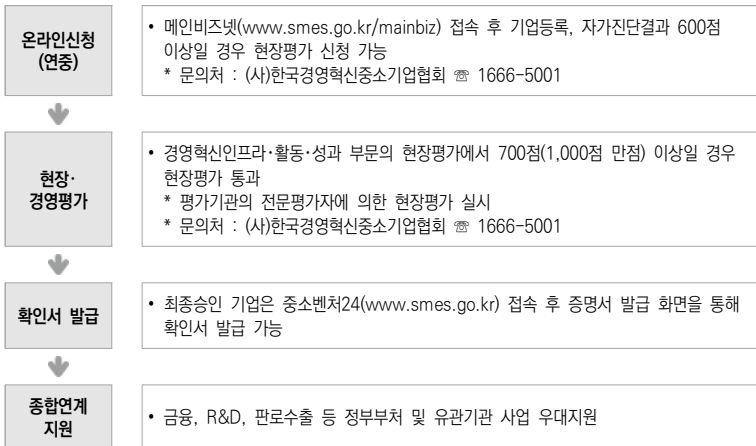
메인비즈 평가지표

- ▶ 기업의 업종*에 따라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 평가
 -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

제출서류

- 메인비즈넷에 접속해 기업정보, 주생산물, 서비스품목, 재무사항 등 입력
- 3년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경영계획서 등 현장평가 시 제출

선정절차



지원혜택

* '16년 세부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분야	지원내역	우	대	사	항
세제	정기세무조사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세무조사 유예 (수도권2년, 지방3년간 유예) * 단, 탈루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관세조사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별도 신청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 * 단, 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기업은 제외 			
	세금포인트적립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포인트 관련 적립 우대 (기존) 납부세금 10만원 당 1점 → (우대) 10만원 당 2점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범위 내),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시 담보 면제에 세금포인트 사용 			
금융	금융지원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차감(0.1%p)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기술보증기금 보증료를 우대(0.1%p)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10%할인 NH농협 : 기업 대출시 금리우대 최대 1.65%p 차감 한국은행 : 혁신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지역분부별 상이 			
정책	판로·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2점, 제조업 2.5점) 조달청 나라장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신인도평가 1.5점) 수출 인큐베이터,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공영홍소핑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지원(TV,라디오 70% 할인) 			
	인력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우대 병역특례지원 가산점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50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고객지원센터 : 1666-500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smes.go.kr/mainbiz)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가능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으로 활용 (상시 적립가능)

신청·접수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을 통해 마일리지 상시 적립 및 사용 가능

적립방법

- 교육마일리지 : 마일리지넷에 등록된 교육과정과 기업에서 개별로 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해 시간/대상별로 마일리지 적립

등록된 교육과정 총점 = 대상(CEO 10점, 임직원 5점) × 교육인원 × 교육시간

개별로 수료한 교육과정 총점 = 대상(CEO 5점, 임직원 3점) × 교육인원 × 교육시간

- 활동마일리지 : 기업에서 제출한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적립

총점 = 혁신활동(심의 결과에 따라 0, 200~500점) + 혁신성과(100~140점)

- 혁신성과 :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①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 140마일리지

* 중복적립 불가, 최초 1회만 적립

② 정부사업 참여기업 : 건당 100마일리지~140마일리지

* 성과보상기금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산업계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훈련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수준진단 확인서 제출 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대중소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③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혁신(경영, 기술)과 관련한 수상경력으로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또는 광역 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

④ 매출 또는 고용증가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30% 이상 증가기업(중복 허용)

처리절차

- 적립 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 교육마일리지 적립



- 활동마일리지 적립



활용처

● 마일리지 활용가능 사업별 지원내용

* '26년 세부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500 마일리지 기준, 연간 대출한도 5억→10억
보증	신용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2%p 우대
	기술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1%p 우대
수출	수출컨소시엄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5점, 최대 5점
판로	정책매장 운영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온라인 시장진출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인력	산업기능요원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치계적 현장훈련	500 마일리지 기준 선정 평가시 우대
	학습조직화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선정 평가시 우대
교육	굿모닝CEO학습	500 마일리지 기준 1인, 무료참가
컨설팅	메인비즈 경영지원 플랫폼	500 마일리지 기준 서비스 이용권(할인권) 제공

문의처

- 중소기업기부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50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5
- 마일리지 공식홈페이지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

벤처기업의정의

- 일반적으로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 요건)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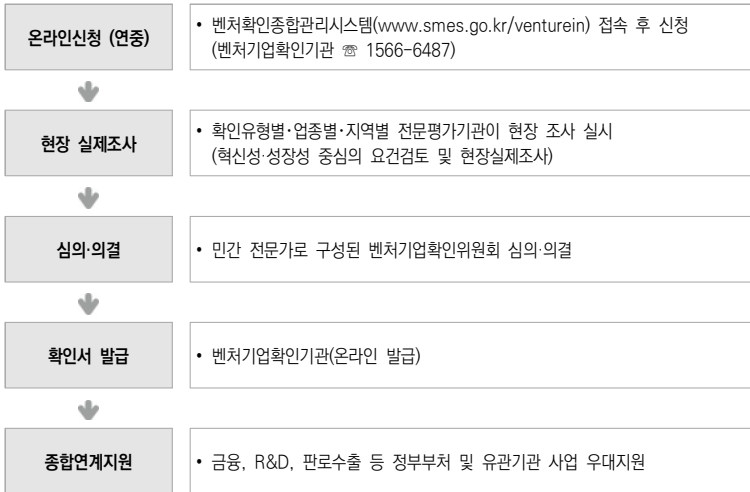
유형	확 인 요 건
벤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대비 투자금 10%(문화콘텐츠 7%) 이상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연구개발비 연간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혁신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예비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예비벤처는 별도 기준

벤처기업 제한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카지노 운영업	91242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확인절차

- 중소기업이면서 유형별 확인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 후 벤처기업 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확인서 발급



지원혜택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6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 §58의3②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①2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지특법 §58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이외지역 60%) 감면 	지특법 §58②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산법 시행령 §26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주식의 30% 이상 인수의 임직원, 기술·경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법 §16의3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105억/3년) 한도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kobaco 규정

문의처

- 중소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706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www.smes.go.kr/venturein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사업개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게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내용

- 창업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 이용 편의 제공 도입에 따른 발급

* 창업기업확인서 심사 및 발급, 이의신청 처리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기업확인 시스템 운영 :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물품, 공사, 용역)으로 구매

2026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만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억원 이하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1,2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0억원 이하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14. 건설업	F		60억원
15. 도매 및 소매업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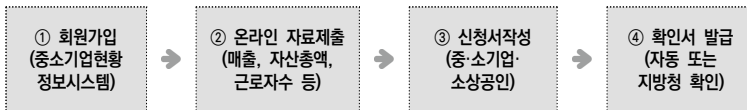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 (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60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	C30393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3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소 및 연락처

지방청	주소	연락처
서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6306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	051-601-510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	053-659-2264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062-360-9111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031-201-6951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032-450-1136
대전·세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22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3층)	052-210-000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	033-260-1611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043-230-5325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041-415-067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강당	063-210-6412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055-268-2530



경제형벌 합리화 1차과제 주요 내용

① 「생계형 적합업종법」 형벌 부과
→ 先 행정조치, 後 형벌부과

현행

☑ 영세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18년~),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금지
이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벌금 부과 가능
* 「생계형적합업종법」 제 8조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제 15조 (벌칙)

개정 방향

☑ 벌칙 기준은 유지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先 행정조치 후,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절차로 정비
* (현행) 시정명령 및 벌칙부과 → (개정) ①시정명령 → ②벌칙 부과



현행

- ☑ 시장의 기반 시설 정비, 대규모 점포 건축 등을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설 등록
이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전통시장법」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제72조(벌칙)

개정 방향

- ☑ 관할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적 이행을 유도
→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단계적 제재로 정비
* (현행) 즉시 벌칙 부과 → (개정) ①시정명령 → ②벌칙 부과

경제형벌 합리화 2차과제 개선안

- 여성기업법**

여성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형벌 완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형벌 완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등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업무 미개시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임원
→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1천만원)
-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그 표지를 사용한 자
→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5천만원)

경제형벌 합리화 2차 주요과제

1

금전적 책임성 강화



■ **(대규모유통업법)** A 대형마트가 자사 납품업자의 B 대형마트 납품계획에 대해 매장 철수 압박 등으로 B 대형마트와의 거래를 방해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 2년, 벌금 최대 1.5억원
* 즉시 형벌 + 시정명령 + 과징금 병과 가능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만 처벌(과징금 5억~60억원 상향)



■ **(대리점법)** 자동차용품 제조사 C가 대리점별 마진을 파악을 위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카센터 거래내역을 본사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강제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 2년, 벌금 최대 1.5억원
* 즉시 형벌 + 시정명령 + 과징금 병과 가능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만 처벌(과징금 5억~60억원 상향)



■ **(하도급법)** 건설사 D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계약을 맺은 중소 시공업체 E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현재)** 벌금 최대 하도급 대금의 2배
* 즉시 형벌 + 시정명령 + 과징금 병과 가능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만 처벌(과징금 20억~60억원 상향)



■ **(위치정보법)** E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기지국 접속 기록(위치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2천만원

→ **(개선안)** 형벌은 폐지하되, 과징금 한도 상향(정액과징금 4억 → 20억원 등)



■ **(관광진흥법)**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법인 F가 상호명을 변경하면서 테마파크업 허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만 처벌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제조사 G사가 판매실적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경우

▶ **(현재)** 벌금 최대3백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최대3백만원)

* 단, 거짓자료 제출시 기존 형벌 유지



■ **(전파법)** 중소기업 H사가 무선방위측정 장치보호구역 내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공장시설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증축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개선안)** '즉시 형벌'은 폐지하고,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만 처벌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기업 I사가 상호명에 '금융투자' 단어를 포함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3천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최대3천만원)



■ **(자동차관리법)** 승합차 소유자 J가 튜닝 승인을 받아 캠핑카 개조작업을 완료한 후 튜닝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

▶ **(현재)** 벌금 최대 1백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최대 1백만원)



■ **(동물보호법)** 애견미용실 업주 K씨가 직원을 새롭게 채용한 후 동물미용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을 등산하던 L씨가 등산 중 뜨거운 라면국물을 나무뿌리에 부어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 **(현재)**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 **(개선안)** 징역형 폐지



■ **(무인도서법)** 개발가능무인도* 소유자 M이 시·도지사에게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무인도에 펜션을 건축한 경우
*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와 달리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현재)**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 **(개선안)**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최대 1천만원)



■ **(식품위생법)** 음료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N이 대표자를 변경한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5천만원

→ **(개선안)** 형량 완화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년월 : 2026년 1월

발 행 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중소기업제도과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전 화 : (044) 204-7455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